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의 지원을 중심으로 -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都市 및 地方行政學科

李 相 樂

2012年 6月 28日

金 善 赫 教授指導
碩 士 學 位 論 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의 지원을 중심으로 -

이 論 文 을 行 政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12年 6月 28日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都市 및 地方行政學科

이 상 락



이 상 락의 行 政 學 碩 士 學 位 論 文
審 査 를 完 了 함

2012年 6月 28日

위 원 장 김 선 혁 인

위 원 최 영 준 인

위 원 최 상 욱 인



국 문 초 록

최근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환경 속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의 공익서비스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1999년도 개시하고 이듬해 2000년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사업 대상 선정과 사업비 집행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지원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주 범위로 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기여와 한계, 등록단체의 실제적인 활동실적, 지원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인식과 반응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동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설문문의 분석내용을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다양한 그래프도 함께 나타나도록 노력하였다.

먼저 제1장은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과 연구범위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NGO지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와 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은 선진국의 지원제도를 알아보고 행안부 주관으로 지원한 사업 선정결과와 평가결과를 지원된 초기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NGO 지원사업에 관한 설문지를 해당 단체들에게 배포한 후 회수된 응답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연구의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제언해 보았다.

1.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및 업무를 통합한 전담부처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국가예산이 시민단체의 중복 지원 등으로 낭비되는 요소를 방지하고, 여러 부처에서 각각 수행하는 사업을 1개 부처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원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이 적정 투입되어 현장 확인을 통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결과를 익년도 지원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등록된 단체가 일정기간(5년정도)이 도과되면 재등록을 하도록 한다. 등록된 이후 관리 단계에서 부적격 단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건강한 단체는 세제혜택 등이 부여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준하는 감세 조치나, 면세사업자에 준하는 면세혜택이 적용되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등록 단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그간의 공익서비스 활동실적 등 기여도가 높은 점과 그 역할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단체의 적정규모 지원 및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6. 지원사업의 컨소시엄 및 계속사업에 대한 인정이다. 규모가 크고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단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7.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일정한 자부담 비율을 단체에서 부담토록 강화한다.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보조금에 대한 책임성과 목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0% 정도는 지원받는 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실제적인 지원사업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공고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운영의 제반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늘려야 한다.

9. 이외에도 단체의 기부를 위한 퍼센트법 마련, 교육의 지원 및 네트워킹화, 지원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화 구축, 단체들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 개최 및 우수사업 발표회, 보조금 지원의 체계적 정보관리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 부적정 집행시 익년도 3년정도 사업선정과정에서 배제시키는 등 다양한 패널티 적용과 우수한 단체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 적용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도약해야 할 전환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건강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공익활동을 위한 NGO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는 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NGO 지원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에 적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차 례 》

〈제목 차례〉 iii
〈표 차례〉 vi
〈그림 차례〉 ix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5

제2장 비영리민간단체의 이론적 논의 6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 6

1. 비영리민간단체(NGO)의 정의 6

2.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 7

3.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 12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찬반론 14

5.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방식 19

제2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제도 21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체계 21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운영 절차 28



제3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운영결과 분석 36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운영 개요 36

- 1. 지원배경 36
- 2. 지원개요 37
- 3. 외국의 NGO 지원 및 운영 38

제2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분석 44

- 1.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실태 분석 44
- 2. 2006년이후 사업선정 지원결과 분석 51

제3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결과 분석 64

- 1. 지원사업 평가개요 64
- 2. 2003년과 2004년 지원사업 평가결과 분석 64
- 3. 2005년도 이후 평가결과 연도별 분석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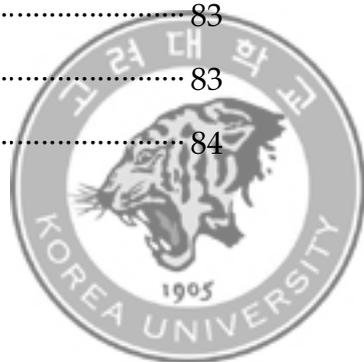
제4절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78

- 1. 개요 78
- 2. 국회의 지적사항 78
- 3.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의 지적사항 80

제4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8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83

- 1. 조사설계 83
- 2. 조사방법 83
- 3. 조사결과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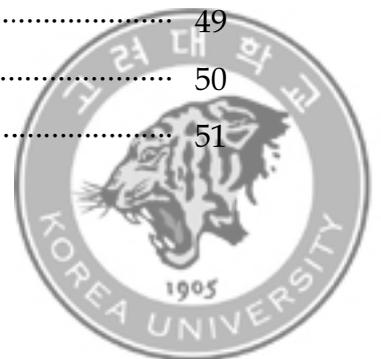


제2절 설문결과 분석	84
1. 응답단체의 특성	84
2.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93
3. 지원결과 만족도 평가	10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2
제1절 요약과 함의	112
제2절 정책제언	115
〈참고문헌〉	123
〈부 록〉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행정안전부)	124
〈설문조사〉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설문서	125
Abstract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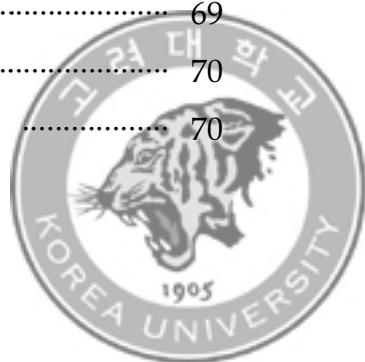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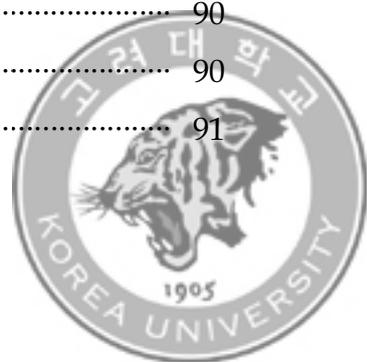
<표 2-1> 활동수준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	7
<표 2-2> 조직구조에 따른 분류	8
<표 2-3> 단체기능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	8
<표 2-4> 단체의 목적과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	9
<표 2-5> 민간단체 분류 (한국민간단체 총람, 2009년)	10
<표 2-6> 2010년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현황	11
<표 2-7> 정부지원의 유형에 대한 장단점	20
<표 2-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25
<표 2-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절차 및 업무내용	29
<표 2-10> 종합평가 기관 및 배점	35
<표 3-1> 각 나라의 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 비교	40
<표 3-2> 각 나라의 직·간접 지원제도 비교	43
<표 3-3> 1999년부터 2005년도 신청 및 선정 현황	44
<표 3-4> 1999년부터 2005년도 사업유형별 지원내역 총괄	45
<표 3-5> 국민통합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46
<표 3-6> 문화시민사회구축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46
<표 3-7> 자원봉사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47
<표 3-8>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47
<표 3-9> 소외계층 인원신장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48
<표 3-10> 자원절약·환경보전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48
<표 3-11> NGO 기반구축·시민참여 확대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49
<표 3-12> 국제교류협력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49
<표 3-13> 1999년부터 2005년 사업유형 및 지원내역	50
<표 3-14> 1999년부터 2005년 신청 및 선정 현황	51



<표 3-15>	2006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52
<표 3-16>	2006년도 사업유형별 신청 및 선정 현황	53
<표 3-17>	2007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54
<표 3-18>	2007년도 사업유형별 신청 및 선정 현황	55
<표 3-19>	2008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56
<표 3-20>	2008년도 사업유형별 신청 및 선정 현황	57
<표 3-21>	2009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58
<표 3-22>	2009년도 사업유형별 신청 및 선정 현황	58
<표 3-23>	2010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59
<표 3-24>	2010년도 사업유형별 신청 및 선정 현황	60
<표 3-25>	2011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61
<표 3-26>	2011년도 사업유형별 심사대상 및 선정결과 현황	61
<표 3-27>	2012년도 사업유형별 접수 현황	62
<표 3-28>	2012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63
<표 3-29>	2012년도 사업유형별 심사대상 및 선정결과 현황	63
<표 3-30>	2000년도부터 2011년 평가결과 평균점수 현황	64
<표 3-31>	2003년도 종합평가 결과 등급 분포도	65
<표 3-32>	2003년도 종합평가 결과 집행액 및 불용액	65
<표 3-33>	2004년도 종합평가 결과 등급 분포도	65
<표 3-34>	2004년도 종합평가 집행액 및 불용액	66
<표 3-35>	2005년도 종합평가 결과 등급 분포도	67
<표 3-36>	2005년도 종합평가 집행액 및 불용액	67
<표 3-37>	2006년도 종합평가 결과 등급 분포도	68
<표 3-38>	2006년도 평가분야별 등급 분포도	69
<표 3-39>	2007년도 종합평가 결과 등급 분포도	70
<표 3-40>	2007년도 계속사업 지원평가 결과 등급 분포	70



<표 3-41> 2008년도 종합평가 결과 등급 분포	71
<표 3-42> 2008년과 2007년 평가 결과 3개 부분 등급 비교	71
<표 3-43> 2008년과 2007년 평가 결과 회계부문 등급 비교	72
<표 3-44> 2008년과 2007년 예산집행 결과 비교	72
<표 3-45> 2009년도 종합평가 중 사업평가 결과 등급 분포도	73
<표 3-46> 2009년도 종합평가 중 사업평가 항목별 등급 분포도	73
<표 3-47> 2009년도 종합평가 중 회계평가 등급 분포도	73
<표 3-48> 2009년도 평가 보조금과 자부담 집행결과 비교	74
<표 3-49> 2010년 종합평가 결과 등급별 분포도	74
<표 3-50> 2010년 종합평가 중 사업평가 등급별 분포도	75
<표 3-51> 2010년 종합평가 중 회계평가 등급별 분포도	75
<표 3-52> 2011년 종합평가 결과 등급별 분포도	76
<표 3-53>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범위(2012년)	80
<표 4-1> 설문조사 항목 및 문항 현황	83
<표 4-2> 등록기관별 단체의 활동분야	84
<표 4-3>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현황(2011.12.31. 기준)	85
<표 4-4> 단체의 설립형태 여부	86
<표 4-5>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	86
<표 4-6> 단체의 연도별 설립시기	87
<표 4-7> 단체의 설립시기(연도별, 구체적)	87
<표 4-8> 단체의 회원규모	88
<표 4-9> 단체의 회원규모(구체적)	88
<표 4-10> 단체의 회원 중 상근직원 수	89
<표 4-11> 단체의 재정 수입 형태	90
<표 4-12> 단체의 1인당 연회비 규모	90
<표 4-13> 단체의 설립동기	91



<표 4-14> 정부 보조금 수령여부	92
<표 4-15> 정부 보조금 수령 횟수(경험이 있는 단체)	92
<표 4-16> 적정한 1개 사업당 정부지원 규모	93
<표 4-17> 바람직한 단체의 자부담 비율	94
<표 4-18> 지원사업 결정 방식 선호도	95
<표 4-19> 단체 재정 자립요소 필요도 평가	97
<표 4-20>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단체 영향력 평가	99
<표 4-21> 정부의 지원방식 선호도(중복 응답 3개정도)	100
<표 4-22> 단체 재정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101
<표 4-23> 지원사업 평가결과 및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인식	102
<표 4-24> 현 지원방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	103
<표 4-25> 정부와 NGO간의 상호 신뢰도 인식	103
<표 4-26> 정부 사업평가 방식에 대한 만족도 여부	104
<표 4-27> 정부지원 과정에서 정부 담당자와 의사소통 평가	105
<표 4-28> 정부지원사업 후 정부와의 관계변화 인식 평가	106
<표 4-29> 정부지원사업의 시민사회 발전 공헌도 평가	108
<표 4-30>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111

그림 차례

<그림 2-1> 정부와 NGO간의 관계모델	13
<그림 2-2>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절차	2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공익서비스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21세기는 '시민사회의 시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시대', '시민운동의 시대'라고 지칭할 정도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분야와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단체들이 재정이 열악하여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¹⁾

NGO 또는 NPO(Non-Profit Organizations,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은 사회의 다원화 현상과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점차 다원화되고 복잡·다양화 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결국 NGO이다. 즉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정부가 제공하는 기존의 서비스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조직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서비스의 민간조직에의 이양이라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김준기, 1988).²⁾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민주화의 과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위상과 역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그동안 표출되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던 정치와 행정과정의 참여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제3섹터의 양적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물론 이로 인하

1) 윤형섭·김영래·이완범 공저,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2006, p.322.

2) 행정자치부, 「1999년~2004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전국적 단위평가 연구용역」, 2005, p.1.



여 현재화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문제점과 부작용도 적지 않았지만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중간영역의 성장은 종전의 전통적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원적 사회체제를 국가-제3섹터-시민사회 등 삼자간의 새로운 협력체제로 변화시키고 있다(김광우, 2000).³⁾

급속하게 성장해 온 비영리민간단체의 중요성은 단순히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규범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NGO의 구체적인 정책과정에서의 필연적인 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Gurbbs⁴⁾(2000)는 'Collaborative Governance(협치)'라는 표현을 통해 국정관리에서 정부와 NGO와의 협조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⁵⁾

이러한 흐름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영역의 활동을 돕기 위해 1999년부터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0년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적용을 토대로 지원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다.⁶⁾

시민단체의 역할은 정부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공익서비스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활동에 시민들의 참여 통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년 선정과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재정적 지원사업은 지원할 대상과 분야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과 절차상의 합리성도 매우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방식이 현실적으로 부응하는 가운데 정착되도록 좀 더 보완하여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및 지방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에 기여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기여 및 한계, 등록단체의 실제적인 활동 실적, 지원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인식과 반응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있어 정

3) 상계서, p.1:2.

4) 로버트 H.그럽스(1942.2.27~). 미국의 화학자임.

5) 상계서, p.2.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지원의 목적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



책임안 자료 및 각계 시민단체 의견수렴 절차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이론과 선진국의 제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2000년도 제정⁸⁾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간의 보다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은 각각 150억 원의 국고예산을 확보하여 행정안전부(舊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중앙사업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지역사업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이후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각각 100억 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감소되어 지원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은 전년도 보다 더욱 감소된 50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다시 증액되어 100억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2012년도)에는 처음 시행되었던 1999년도와 같은 150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지원한 전국사업에 50%와 시·도를 통해 지원한 지역사업에 50%를 매년 각각 배정되었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시도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의 전국사업에

7) 상계서, pp.2~3.

8) 종전 특별법에 따라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특정단체에만 국고지원하는 것은 민간단체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2000.1.12.)된 이후부터는 위 3개 국민운동단체도 일반 시민단체와 동등한(Equal) 상태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도부터 다시 국민운동 3단체는 기존 개별법에 따라 별도 지원을 받고 있다.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여 지원되고 있다.



만 지원되고 있다.⁹⁾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보편적으로 살펴보고, 사업 평가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시행된 2005년도 이후부터 2012년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주 범위로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과 연구범위를 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1절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에서는 단체에 대한 정의와 단체에 대한 분류를 알아보면서 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에 대한 모형을 비교하면서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 정부의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2절은 동 지원제도에 대한 체계와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배경과 지원개요 그리고 미국 등 4개 선진국 지원제도의 지도감독과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1999년도부터 올해(2012년)까지 선정된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기 및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가운데 2005년도 이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외부에서의 지적사항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서를 비영리민간 단체들에게 직접 배포한 후 회수된 응답 자료를 토대로 설문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분석내용을 가급적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연관성 있게 그래프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적 이미지 제공에도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 제5장은 본 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요약하고 제3장에서의 외부 지적사항들과 제4장에서 설문결과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향후 바람직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9) 최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민선 단체장들이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고 효과성도 크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반영, 매년 총 300억원 정도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내외 저명한 인사의 단행본과 학술논문 등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지원제도 조사를 통한 기술적 연구방법과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즉, 논제와 관련된 국내외 저서와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정부와 NGO의 관계형성,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거나 또는 보관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관련 업무지침, 내부 자체계획서와 통계자료, 행정안전부 자료실에 비치된 연구보고서 등 각종 간행물과 설문분석을 통한 실증적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사실들과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단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지원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의미가 미미하여 생략하고 지원에 대한 절차 등 이론 부문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국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찾아서 정리하였다.

특히, 필자가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관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2년 남짓한 기간동안 추진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¹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단체정보 보호차원에서 관련이 있거나 연관이 있는 단체들의 구체적인 설명과 단체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과 지원 시기인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년간의 평가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10) 2009년 7월부터 2012년 3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서 주로 비영리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이번에 그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자료를 모아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2장 비영리민간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

1. 비영리민간단체(NGO)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학자 또는 정치체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즉 비정부조직을 지칭하는 비영리민간단체(NGO)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NPO),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지역사회단체(Community Based Organization: CBO)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념 정의도 매우 다의적이다.¹¹⁾

비영리민간단체간의 구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점은 공익성과 사익성이라는 관점과 정부와 비정부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이들 모두 유사용어로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원봉사를 통한 구제활동은 NGO의 효시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봉사활동영역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Public Sector),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한 사적영역(Private Sector)에 이어 제3섹터(third Sector)로 지칭하고 있는 봉사영역(Voluntary Sector)이 초기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봉사영역 중심의 구제활동으로 출발한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후 각 나라에서 지니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 문화적 환경, 그리고 정치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Farrington and Bebbington, 1993, pp.1~3).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비영리민간단체들은 평화, 인권, 환경, 보건, 사회, 난민, 개발, 아동보호, 긴급구호,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사업 활동을 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6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둘째,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11) 윤형섭·김영래·이완범 공저,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2006, p.324.



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섯째,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

비영리민간단체는 활동수준, 조직구조, 법적요건, 활동영역, 단체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활동수준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단체를 분류하면 국제적 활동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 전국적 활동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방적 활동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분류된다. 그리고 국제적 활동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NGO로 통칭되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단체분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환경, 평화, 난민구제, 저개발국 빈민지원 등 지구적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그린핀스’, ‘국제엠네스티’,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은 단체 등이 주요 사례이다.

전국적 활동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는 때때로 국제적 수준의 활동을 수행하기는 하나 활동의 대부분이 한 국가의 역내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단체를 말한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상당수의 단체들이 전국적 활동수준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적 활동수준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방자치, 지역환경, 지역복지, 지역문화 등의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들 단체들은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에 의해서는 시·도에 등록¹²⁾되어 있는 대부분의 단체들이다.

<표 2-1> 활동수준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

국제적	환경, 평화, 인권, 난민구제, 빈민지원 등과 같이 전지구적 문제,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의 국민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결성된 단체
전국적	한 국가의 전국적인 수준에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운동 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지방적	한 국가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단위 수준에서 결성된 단체

(출처: 정책연구 2010-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 재구성, p.13.)

12) 2012.3.31. 현재 16개 시도에 등록된 단체 수는 9,106개 단체임(행정안전부 자료).



조직구조에 따라서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단독형, 연합형, 협의형으로 분류된다. 단독형 단체는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대부분이 소규모 단체이다. 연합형 단체는 단체안에 여러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단체로서 대규모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연합형의 성격을 가진다. 협의형은 단독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을 말한다.

<표 2-2> 조직구조에 따른 분류

단독형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대부분의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연합형	하나의 단체 안에 여러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단체, 대부분의 대규모 비영리민간단체
협의형	단독 비영리민간단체 자체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즉 여러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출처: 정책연구 2010-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 인용, p.14.)

법적요건에 따라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가진 법인체형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격이 아닌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임의형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된다. 활동영역에 따라서는 환경·인권·여성·복지·소비자권리·교육연구·청소년·의료보조·주택·개발·노동·국제원조·빈곤구제·교통·평화·문화예술체육·권력감시 부정부패방지·모금, 경제정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단체기능에 따라서는 전체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대변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등으로 구분된다.

<표 2-3> 단체기능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

견제 기능 수행	주로 국가권력과 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단체로 조직이 오래되고 재정이 있는 가운데 정치변화에 영향이 적음
복지 기능 수행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 장애인, 청소년, 여성, 아동, 노인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대변 기능 수행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동성애자단체, 에이즈환자단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조정 기능을 수행	각종 사회적 분쟁을 조정하는 단체이나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러나 각종 NGO는 정부와 협력하거나,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교육 기능을 수행	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시민강좌, 개방대학, 청소년학교, 여성아카데미, 토론광장, 환경캠프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운영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출처: 정책연구 2010-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 인용, p.15.)

비영리민간단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준공공 및 민간조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이윤동기에 의하지 않으면서 잉여소득의 배분금지 제약을 받으며 주로 시민의 기부 또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모든 법인 및 비법인을 포함한다. 한편 Kim & Hwang(2000)에 의하면 “모든 문화예술 단체, 재단, 양로원 시설, 연구소, 종교단체, 각종 직업협회 및 이익집단”이 이러한 부문의 범주에 속한다.¹³⁾

<표 2-4> 단체의 목적과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

구분		주요단체
목적	활동영역	
공익단체	의료·보건단체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단체
	교육·연구단체	초·중·고등 사립학교, 직업학교, 연구소 등
	복지서비스단체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직업훈련소, 복지관, 모자보호소, 청소년 수련원 단체
	예술·문화단체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레크리에이션 단체
	시민단체	환경보호단체, 소비자 권리보호단체, 여성권리 옹호단체, 국제원조단체, 모금단체
종교단체	종교단체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
집단이익 추구단체	직능단체	상공회의소, 전경련,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친목단체	컨트리클럽, 동창회, 향우회, 화수회 등

(출처: 김준기, 정부와 NGO, 2006)

최근 3년 간격으로 발간하는 ‘한국민간단체총람’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환경, 인권, 평화·통일, 여성, 권력감시, 정치·경제, 교육·연구, 문화·체육,

13) 김준기, 「정부와 NGO」, 2006,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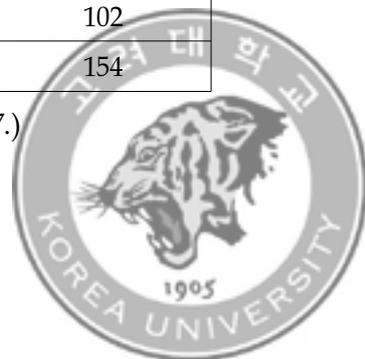


복지, 청년·아동, 소비자 권리, 도시·가정, 노동·빈민, 외국인, 모금, 자원 봉사, 국제연대, 온라인 활동 등으로 표 2-5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민간단체총람의 단체유형 분류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단체유형별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도별 지원 실태에 대해서 제3장에서 상세히 분석하였다. 한편 2010년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26개 부처별 지원현황은 표 2-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5> 민간단체 분류(한국민간단체 총람, 2009년)

대분류	소분류	단체수(개)
환경	감시/정책제안, 환경보호, 교육/연구/계몽	955
인권	인권일반, 추모사업	218
평화/통일	평화, 통일/민족	318
여성	-	500
권력감시	권력 감시일반, 행정부/국회/사법, 기업/언론	104
정치/경제	정치/행정, 경제, 과학기술, 지역자치, 의식계몽	811
교육/연구	교육, 연구	342
문화/체육	예술, 문화, 체육, 기타문화	302
복지	복지일반, 의료/보건, 장애인, 노인, 기타복지	1,511
청년/아동	청년, 청소년, 아동	703
소비자권리	-	69
도시/가정	도시일반, 교통, 주택, 가정	256
노동/빈민	노동, 농어민, 빈민	243
외국인	외국인 복지, 노동자, 다문화	105
모금	-	30
자원봉사	-	609
국제연대	국제원조, 국제협력, 재외동포	119
대안사회	공동체, 생협, 교육/연구/계몽	116
온라인활동	온라인만으로 활동하는 단체	102
기타		154

(출처: 정책연구 2010-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 인용, p.17.)



<표 2-6> 2010년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현황

연번	부 처 명	지원 단체수	지원액 (백만원)	평균액 (백만원)
1	국가보훈처	24	1,697	71
2	방송통신위	48	3,448	72
3	국가인권위원회	15	130	8.7
4	국민권익위원회	4	120	30
5	금융거래위원회	8	844	105
6	금융위원회	2	471	235
7	기획재정부	3	10,789	3,596
8	교육과학기술부	15	102,506	6,834
9	외교통상부	93	9,282	99.8
10	통일부	3	680	227
11	법무부	1	582	582
12	행정안전부 14)	158	4,900	31
13	문화체육관광부	13	1,264	97
14	농림수산식품부	11	955	87
15	지식경제부	1	700	700
16	보건복지부	62	34,323	554
17	환경부	10	11,954	1,195
18	고용노동부	139	20,494	147
19	여성가족부	149	3,046	20
20	국토해양부	13	3,793	292
21	문화재청	28	17,444	623
22	농촌진흥청	3	1,690	563
23	산림청	17	19,940	1,173
24	중소기업청	6	68,202	11,367
25	특허청	1	1,517	1,517
26	식품의약품안전청	3	1,935	645

(출처: '한국 NPO공동회의 백서' 수록된 것을 정리, 2011.11. 발간)

14) 본 논문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지원사업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음.



3.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¹⁵⁾

NGO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면서 또는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캠페인 활동 등을 하면서 정부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NGO는 국가권력과 협력하기도 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주장을 통하여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NGO와 정부의 관계는 70~80년대 민주화 시기에는 정부와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였으나 이후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부터는 상호협력적 관계로 전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발전에 기인하여 국가가 복지국가적 성격을 갖게 되면서 점차 정치적 이슈보다는 삶의 질적 지향과 복지적 수요가 늘어 났기 때문이다. NGO도 이런 분야에서 활발하게 팽창하였고 정부와의 관계도 협력적 관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급증하면서 동시에 정치인 또는 시민 대다수가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NGO가 정부와 상호작용 속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요소는 두 가지로 재정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전자는 NGO에 대한 정부의 유인 수단이 되고, 후자는 NGO가 정부를 견제한 수단이 된다. NGO가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공익을 생산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NGO에서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을 가지는 문제는 NGO의 활동과 관련하여 궁극적인 방향의 설정에 관한 문제로서 NGO로서는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NGO가 정부로부터 재정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활동의 자율성이 없이 정부에 대하여 예측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NGO의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의 요소를 기준으로 NGO와 정부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2-1>에서는 정부와 NGO간의 관계 설정을 위하여 활동의 자율성과 재정의 자율성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15)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2006, pp.196~200.



〈그림 2-1〉 정부와 NGO간의 관계모델

(강) 활동의 자율성	협력형	자율형
	종속형	권위주의적 억압 또는 민주적 포섭
	(약) 재정의 자율성	(강)

(자료출처 :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2006.)

먼저, 협력형은 재정의 자율성은 낮은 반면 활동의 자율성은 높은 경우로서 일정부문에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NGO에 활동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가고 NGO와 정부간의 협력이 활성화된 이후에 발전한 모델이다.

둘째, 자율형은 재정의 자율성과 활동의 자율성이 모두 높은 경우로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해결하기 때문에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의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롭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들이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 흔하지 않는 모델이다.

셋째, 종속형은 재정의 자율성과 활동의 자율성이 모두 매우 낮은 경우로서 NGO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면서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의 간섭과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모델은 최근에는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NGO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관변단체가 이 모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적 억압 또는 민주적 포섭의 경우에는 NGO의 재정의 자율성은 높지만 활동의 자율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된 과거 민주화가 정착되기 이전에 자율성이 제한된 가운데 정부에 의하여 NGO의 활동이 억압되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점차 정착되면서 정부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경우이다.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찬반론¹⁶⁾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원부문의 실패 Salamon(1987), 정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 및 비효율성 등의 원인을 들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학계의 연구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서 하나는 정부 지원의 현황과 효과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직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마지막 하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와 지원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김준기·김정부, 2001: 213).

가.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찬성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당성은 이들 단체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복지의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행정적·인지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숙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는 국가와 시장을 보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우리사회 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유롭게 결성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고,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주체적인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진경, 2002).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보조금의 교부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정부가 직접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인 직접지원방식이 있고, 세금 감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재단설립의 간소화와 같은 법적 장치, 비영리민간단체센터의 설립, 우편료·통신료 지원, 상근자의 재교육 지원, 정보인프라 구축, 공익광고 지원과 같은 간접적 지원방식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2010, pp.11~17.



으로서 행정적 장치가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¹⁷⁾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은 양자 간에 대화를 촉진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한다는 주장도 있다(Forman, 2001).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 독자성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출발 목적을 감안할 때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단체의 운영과 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정을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와 기부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시민 교육 기능을 담당한다. 공익의 범위가 확대하고 국가의 행동반경이 국제화되는 환경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은 공동체사회에서 자발적인 행동과 유대를 통해 공공업무에 참여하고 제 삼자를 고려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에서 제고된다. 이러한 행동은 지역사회나 주권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으로 확대되며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익을 대표하는 정부가 자신의 일을 대신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 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정부조직, 준정부조직,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영역의 다른 단체도 수행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고도의 자율성과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율성·정체성·창조성·연대성 등 탈물질적 가치와 관련된 공익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조직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17) 강상욱(2001)이 2000년 서울시 소재 61개 NGO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7%가 정부의 재정지원이 NGO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지역 연고주의, 이기주의, 인간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등과 같은 사회병리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활동은 다른 결사체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재정의 열악성이다.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록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문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주로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한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제력이 없고, 기업이 행하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충원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기부금에는 개인기부금, 재단기부금, 기업기부금 등이 있고, 정부지원금, 서비스 요금, 수익사업 이익금 등 재정의 출처가 다양하다. 자원봉사활동, 면세제도, 행정적 지원 등도 비영리민간단체에게는 적지 않은 재정적 원천이다.

나.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반대론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은 크게 정부 개입시 제기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실패론, 애드버커시(Advocacy)에 관한 문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의 저하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실패론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반대 이유로 제기된다.

첫째, 박애적 불충분성이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을 위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둘째, 박애적 배타주의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적 사안에 대하여 특정의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며 단체이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대상은 일반대중이기 보다는 특정집단이나 계층 혹은 이슈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박애적 온정주의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가장 많은 자원을 공급하는 사람과 집단의 결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박애적 아마추어리즘이다.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근주, 2000).

‘에드버커시’ 문제의 측면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 혹은 정부정책의 변화와 주의·주장 활동에 주력하는 ‘에드버커시’ NGO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논란이 중심이다. ‘에드버커시’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권력감시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고, 또 “국민 세금의 일부로 시민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를 색안경을 끼고 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에드버커시’ NGO에 관한 문제는 미국에서 최근까지 심각한 정치쟁점이 되어 왔다(Van Til, 2000). 클린턴 행정부가 국가봉사조직인 ‘Ameri Corps’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의회 다수파였던 공화당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해 간섭이나 개입해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 스스로가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하도록 장려해 주는 정도의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원칙을 내세운 경험이 있다. 이런 심각한 정치이념상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특히 ‘어메리코어’가 서비스 활동 이외에 권익옹호와 정책변화 주장을 하는 ‘에드버커시’ 활동을 하지 않는 선에서 양당이 타협을 함으로써 ‘어메리코어’가 출범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에드버커시’ 문제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내내 의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뜨거운 감자’로 작용하였다.¹⁸⁾ 에드버커시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면세혜택과 정부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의 20% 이상을 ‘에드버커시’ 활동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제한시키고 있는 캐나다의 입법 사례도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문제해결 능력에서 건전한 비판능력 상실이라는 점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비판능력상실 측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개입이 있을 경우는 단체의 자율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단체의 문제해결 능력들 중 이슈의 제기와 건전한 비판능력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근주, 2000; 박상필, 1999c).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결과 자원봉사성, 독립성, 비공식성, 비관료성 등 비영리민간단체에 비교우위를 가져다준 바람직한 특성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18) 공화당 의원들은 소수민족문제, 빈곤층 문제, 에이즈 감염자, 동성연애자 등 소외층과 문제집단의 권리신장과 권익옹호, 정부정책의 변화와 로비활동에 활동하는 NGO들에 대해 정부지원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안을 상정하였음.



다면 그러한 대정부 관계는 NGO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의 측면에서 본 정부 개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정부의 지원이 단체의 조직목표나 활동목표를 왜곡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정부의 기준에 맞는 활동을 지원한다. 따라서 NGO가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준에 적합한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GO의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상실하게 된다. 둘째, 조직관리와 관련된 문제로서, 정부의 지원이 있게 되면 운영과 관련된 절차와 방식이 정부에 의한 감시 및 평가에 적합한 형태로 표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자금, 회계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관리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NGO의 활동과 관리의 유연성, 비공식성 및 자원봉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은 NGO의 자율성·자발성·창의성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NGO의 책임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으며, 사업자 선정과 사업비 배분상의 문제도 갖고 있다고 한다(박상필, 2000b).

현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는 그들의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하여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회비와 후원금은 전체 재정의 41%를 차지했고, 정부지원 및 공공기금이 22%를 차지하였다.¹⁹⁾ 그리고 회비 및 자체수입(수입사업 포함)이 46%로서 절반을 넘지 못하다는 결과도 있었다.²⁰⁾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은 NGO 재정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이것은 매년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그들의 단체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자연보호단체인 TNC(The Nature Conservancy)도 2000년도 예산에서 회비와 개인기부금이 36%를 차지하고, 정부지원금이 10%를 차지한다. 서구 선진국에서 국제원조에 참여하는 NGO는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김수현, 2001; 조효제, 2000).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반드시 부정적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19) 양용희(1998)가 1998년 23개 NGO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한 것임.

20) 임승빈(2000)이 2000년 국정홍보처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에 참가한 33개 NGO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것임.



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국가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5.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방식

가. 직접적 지원 방식

직접적 지원방식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전체 예산 혹은 일부 예산을 정부의 예산지출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재정 일반에 대한 지원과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사전적인 지원과 사후적인 지원으로 나누어 진다. 즉 사전적인 지원은 사업수행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각종 정부기관이 공개모집과 경쟁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둘째, 정부의 각 부처가 개별 규정에 의거하여 일부 공공업무에 대해 단독 혹은 몇 개의 비영리민간단체 중의 한 개의 단체와 협상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표 2-6, 2010년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현황 참조). 셋째,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일정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해 정부가 단체의 설립부터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과거 '에너지시민연대'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운동협의회'가 해당된다. 넷째,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한국자유총연맹과 같이 특별 개별법률에 의거 특별한 단체에 배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이 유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 이후 실제적인 지원이 거의 중단되었다가 관련법²¹⁾이 존재하고 있어 2010년부터 다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

위의 네 가지 유형과는 다른 형태로 정부가 직접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금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 기금이 비영리

21)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1980. 12. 13. 제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1991. 12. 31. 제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989. 3. 31. 제정).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기금형태는 정부 산하에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설립 당시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한 환경발전기금이 있었다. 현재는 제도화되어 있거나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는 네 가지 지원 유형에서 특별지원은 폐지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협상계약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에 단체설립 지원 형식은 현재로서는 흔하지 않고 시민사회 메커니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개경쟁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지원유형은 지원의 목적달성 기준인 자율성 확보, 재정충족의 정도, 신뢰구축 효과 등의 기준에서 볼 때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7> 과 같다.

<표 2-7> 정부지원의 유형에 대한 장단점

유형	자율성 확보	재정충족 정도	신뢰구축 효과
공개 경쟁	선정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서류작성 형식을 따라야 한다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지속성이 약하며 사업비 외의 지출이 불가능하다	자금사용의 실질적 심사에 한계가 있고 정책참여의 증대로 이어지는 않는다
협상 계약	대체로 정부가 사업유형과 방식을 정하지만 재정자립 정신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다	지속성이 없지만 지원액이 많고 사업비외 경상비의 지출이 가능하다	정부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단체의 역량증진에 도움이 된다
단체 설립 지원	정부간섭이 약하고 단체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재정자립 정신을 약화시킨다	단체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지속적이며 사업비 외의 사용이 가능하다	자금의 투명도가 높고 정부와 협력방식이 발달하지만 시민사회의 비판이 강하다
특별 지원	정부 간섭이 심하고 재정자립정신을 약화시킨다	단체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지속성이 있지만 사업비외 지출이 불가능하다	정부에 종속되고 시민사회로부터 커다란 불신을 받는다

(자료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 p.19.에서 재인용.)

따라서 위에서와 같이 모든 지원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원목적으로 설정된 세 가지 기준은 상호 충돌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종류가 다양하고 각 단체마다 단체의 설립 취지와 목표, 사업의 성격, 재정의 출처, 재정충족도, 정부와의 관계 등도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유형이 중첩적으로 존재하고 각 비영리민간단체가 단체의 목적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에 맞는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간접적 지원방식

간접지원방식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금면제 및 기부금 세제혜택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와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일정 한도 내 할인해 주거나, 무료 공익광고, 상근자 교육 지원, 사무실 무료대여 등이 있다. 이러한 지원형태는 시민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간접지원방식 중 조세감면과 우편요금의 지원은 이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편요금은 일반우편에 대해서만 낮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조세감면 적용은 현재 혜택을 받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단계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단체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2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제도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체계

가. 지원배경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NGO의 범위와 등록요건을 명시하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0년도 제정된 법



를이다. 이는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상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 기반을 확산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건강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 및 3조).

2000년 1월 12일 공포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된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입법 추진한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안」에서 절충되어 발전된 것이다. 양 법안 내용 중 지원재단설립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하여 시민단체, 정부, 국회의원 등 각계에서 많은 의견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1999년 10월 양 법안을 근간으로 학계 및 시민운동계 등과의 공청회와 자문회의는 물론 주요 시민단체 실무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갖는 등 많은 협의과정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기존 법인이거나 임의단체가 공익활동을 해오는데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한 6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에 대해서 등록을 해주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국고보조금을 공익사업비에 지원하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조세감면과 우편요금 감액, 그리고 행정지원(후원명칭 승인 등)을 들 수 있다.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및 요건으로는 6 가지를 들 수 있다. ①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법인이 아닌 단체(임의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이 다. 이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혜자의 불특정성(공익성)으로서 이 때 수요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로서 또한 사업수혜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은 불특정의 다수의 명확한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은 공익활동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비지정 다수로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여 비정치성, 비종교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여 비종교성 및 비전도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요건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어 여기서는 종교단체라도 공익활동이 포함되면 가능하다.

나머지 요건들은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구성원수가 항상 100명이상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공익활동실적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어야하는 등 등록주의인 가운데 재량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일명 NPO법의 경우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기준과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대부분의 요건이 유사하나 대상과 단체의 요건에서 종교활동과 정치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10인 이상의 사원을 가질 것 등과 불특정 다수의 이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과 함께 17개22)에 이르는 구체적인 활동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22) ①보건, 의료,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 ②사회교육을 추진하는 활동, ③마을 만들기 등을 추진하는 활동, ④학술, 문화, 예술, 스포츠를 진흥하는 활동, ⑤환경을 보전하는 활동, ⑥재해구원 활동, ⑦지역안전 활동, ⑧인권옹호 또는 평화를 추진하는 활동, ⑨국제협력 활동, ⑩남녀공동 참여사회의 형성을 촉진하는 활동, ⑪자녀의 건강을 육성하는 활동, ⑫정보화 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동, ⑬과학기술을 진흥하는 활동, ⑭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활동, ⑮직업능력의 발전과 고용기회의 확충을 지원하는 활동, ⑯소비자를 보호하는 활동, ⑰전 각호에 기재된 활동을 하



다.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시·도지사)은 등록을 수리하도록 하는 준칙주의에 가까운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주무부장관(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단체 공익활동 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지원대상 민간단체의 급조를 방지하며 법인에 준하는 공적요건을 구비하여 조세감면 기타 간접지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하는 주무부처에서 법인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을 전제로 주무부처에 등록토록 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자유설립주의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의 경우 법인설립의 교부자격을 달리하는 사례가 있어 함께 고려해 볼 사항이다.

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²³⁾는 전국적으로 2만 7천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공익활동에 부합한 해당 행정기관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게 되면 20일 이내 수리하여 주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최근 매년 10%정도씩 증가하고 있

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해 연락, 조언 또는 지원하는 활동.

23) 여기서 시민사회단체는 매우 애매한 개념이지만 각종 직능단체 종교단체, 사단, 재단,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말한다. 즉 임의단체, 법인,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이때 시민사회단체는 민간단체와 비슷한 범주로 정한다.



다. 동 법을 제정한 2000년도 265개 단체에서 2004년도 518개 단체로 늘어났고, 2008년도 845개 단체, 2009년도 981개 단체, 2010년도 1,092개 단체, 2011년도 1,18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2012년 3월 31일 기준으로 1,256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 2-8> 과 같다.

<표 2-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계	기 획 재정부	교 육 과학부	외 교 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 정 안전부	문 화 체육 관광부	농 립 수산 식품부	지 식 경제부
1,256	7	46	140	114	6	25	204	123	37	9
	보 건 복지부	환 경부	고 용 노동부	여 성 가족부	국 도 해양부	경 찰청	소 방 방재청	문 화 재청	농 촌 진흥청	산 립청
	139	144	41	80	29	7	11	6	6	11
	중 소 기업청	특 허청	통 계청	식 품의약 품안전청	해 양 경찰청	방 송 통신위	국 가 보훈처	공 정 거래위	금 융 위	국 가인 권위
2	23	1	2	10	11	8	7	4	1	2

(출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내부자료, 2012년 3월 31일)

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방법과 형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단체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 제1항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이란 가급적 독자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동 법 제6조에서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중 재정지원의 하나로서 보조금의 지원과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보조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단체 임직원 인건비나 운영비를 제외한 공익사업비에 대한 지원이며 그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6조 제1항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주무부처에서 보조금예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



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이 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정의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과 절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이하는 지원사업의 선정과 선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²⁴⁾(이하 위원회로 한다), 선정기준, 선정된 단체의 의무 등의 실제적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부가 매년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으로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3가지 범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²⁵⁾

제2항은 선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선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하고 있고, 위원회는 사업유형별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의 선정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정단체에 대하여 배정이 아닌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법 시행령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서는 사업선정기준

24)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고 임기는 2년이다. 위원의 자격은 ①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②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③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④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대상이 된다.

25) 대체적으로 시대적 수요를 잘 반영하여 6 가지 유형에서 9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추진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법으로 유형화 하자는 의견도 있다.



을 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선정은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7 가지 항목에 대한 심사 채점결과를 취합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사업유형별로 사업이 선정된다.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범위내에서 심사성적,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할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제8조는 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는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의무로서 사업을 완료한 단체는 회계년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간접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되면 제10조(조세감면 등) 및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에 따라 조세감면과 우편요금의 두 가지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및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한 일반우편물에 대한 감액규정으로 일반우편요금의 25/100를 감액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여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법인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 조직도 조세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편요금 감액 특혜는 정기·다량우편 등 일반 감면외에는 부재자 신고우편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재정이 열악한 이들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직접적인 교부이외에도 우편요금의 지원에 관한 간접지원을 추가하고 있다. 한편 제12조는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는 사업 선정된 단체들에 대한 사업선정과 집행에 관련한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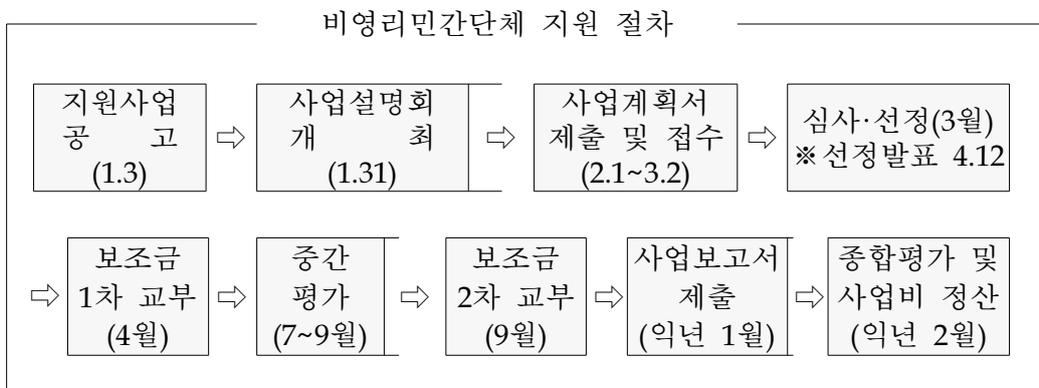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운영 절차

가. 운영절차 개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일련의 흐름도는 일반적으로 <그림 2-2>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림 2-2>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201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행정안전부가 매년 1월초에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고 2월과 3월의 2개월동안 사업계획서의 접수 신청기간을 두고 있다.

사업설명회는 먼저 사업공고를 마친 후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전 또는 접수기간 중에 편리한 시기를 정해서 이루어진다. 심사는 접수를 마감한 후 1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지원사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심의·검토 후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1차 보조금이 1일주내 즉시 교부된다.

보조금은 2회에 걸쳐 나누어 교부되고 있고 먼저 1차 보조금은 지원액의 70%를 교부하고 나머지 30%는 7~9월 중 중간평가가 이루어져서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판정결과가 나타나면 2차 보조금이 교부된다.

최종 사업보고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12월 31일 이후가 된다. 즉 다음해 1월에 이루어지며 이후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성과평가와 함께 보조금 지출에



관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구성되어 있다. 당해연도 사업평가 결과는 다음해 사업신청 시 우수한 곳은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한 곳은 감점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흐름도를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표 2-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절차 및 업무내용

절 차	업 무 내 용
지원 사업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유형별 지원사업 시행 공고 (매년 1월) • 지원사업신청서 작성·제출 (민간단체, 공고이후) ※ 사업공고 후 즉시 사업설명회 실시(1월말경)
↓	
지원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사업 심사·선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15인) ※ 심사기준 및 방법 등 사전 논의
↓	
실행계획서 작성·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제출 (해당단체) • 지원규모에 적합여부 사업 검토·심의 (행정안전부)
↓	
사 업 승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지원 사업승인 (행정안전부) • 보조금 교부신청 (해당단체)
↓	
사 업 집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결정 및 교부 (행정안전부) * 2회분할 교부 • 보조금 집행기준 설명·안내 회계 교육 (행정안전부)
↓	
중 간 평 가 (7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해당단체 → 행정안전부) •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행정안전부, 외부 평가기관) • 평가결과 조치 (행정안전부, 2차 보조금 지급 결정)
↓	
사 업 정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해당단체→행정안전부) • 사업정산 검토·확인 (행정안전부)
↓	
종합평가 결과 (평 가 환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평가 실시 (외부용역기관), 사업평가 + 회계평가 ※ 다음연도 사업선정시에 엄격히 반영

(자료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내부자료 활용)



나. 지원사업의 운영절차 및 단계별 현황

(1) 사업의 선정단계

(가) 지원사업의 선정

행정안전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로서 사업 범위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대규모 사업 즉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²⁶⁾ 사업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한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촉·구성하여 운영된다. 위원회의 역할은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금액의 결정,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설정,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 및 선정·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체적으로 주요 역할은 지원사업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지원액을 결정한다. 지금은 2011년 7월 5일 제6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2013년 7월 4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나)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및 심사

2012년도의 경우 사업 공모과정을 거쳐 사업설명회를 1월말에 실시하고 사업신청계획서는 3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²⁷⁾ 사업계획서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효과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당해 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과 단체의 자부담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하고 있다.

사업비 집행의 각목에서 단체소속 상근 직원의 인건비, 단체운영비 등 경

26)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7) 사업공고기간은 법상 2개월을 명시해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사업기간을 늘리기 위해 접수 마감기간을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적 운영경비는 인정하지 않고 실제적인 공익사업에 관련된 지출 항목만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적격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의 기준을 토대로 사업유형별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진다.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가 집행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업시행을 승인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하고 보완 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연도 신청 시 불이익이 가도록 한다. 보완기간은 대체적으로 3~4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단체가 사업실행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사업승인 및보조금 교부 요청서 제출

행정안전부의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고 승인을 받은 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원결정액 상당액 이상으로 이행보증보험²⁸⁾에 가입하고 보조금 관리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통장 명의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에 기재된 단체명과 대표를 표기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이 선정된 단체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한 교부요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교부요청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조건을 명시한 보조금 교부요청서를 제출하며 교부요청서 제출 시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과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최종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알릴 수 있는 안내문과 책자 등 홍보물을 이용하여 행정안전부의 후원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²⁹⁾

28)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원 결정액의 상당액 이상을 보험에 가입하여 2년간 보증기간을 두고 있다.

29)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단체에서 행정기관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2) 지원사업의 집행단계

(가) 사업집행

보조금 신청과정이 끝나면 보조금을 2회 나누어 교부한다. 우선 1차적으로 지원결정액의 70~80%³⁰⁾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계교육과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나머지 30~20%를 2차 교부한다.

행정안전부는 회계집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단체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별도 컨설팅한다. 한편 사업수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가 승인되었더라도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 점검시에 공익사업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만약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2차보조금 교부를 중단하거나 그에 상응한 만큼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단체는 사업에 선정된 후 내부사정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납이 가능하고 익년도 사업신청 시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1조를 적용한다.³¹⁾

(나) 국고보조금의 집행

선정된 단체는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조금 뿐만 아니라 자부담예산 또한 사

별도 활동과 관련 해당기관(등록기관)의 승인과정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

- 30) 최근 2011년부터는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교부비율을 1차 시 70% 교부하고 2차에 나머지 30%를 교부하고 있다.
- 3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간접보조자 포함)는 법령의 규정, 교부금의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동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조사업을 중단·폐지 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동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업비의 일부로써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1년도부터는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회계 평가 시 감점 처리가 하고,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한 단체에서는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해당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다) 중간평가

사업선정이 되어 1차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당해연도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보고서 제출시기는 평가일정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공문서를 단체에 통보한다. 이때 외부평가기관에서는 현장점검 또는 중간평가 계획을 사전에 해당단체에 알려 일정대로 추진한다. 수행단체는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평가용역 기관에서는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여 중간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한다. 평가결과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컨설팅 및 촉구하며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행안부에 알려 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중간평가 등 평가기관의 통보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라) 사업 정산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기는 통상 매년 1월 10일경이 된다. 사업수행 단체에서 제출할 서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실적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사업비 집행영수증,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각종 증빙서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반드시 포함)와 함께 집행한 근거가 되는 관련 실적을 제출한다.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 집액을 확정·통지하게 되면 당해연도 지원사업이 종료된다.



(3) 종합평가 및 환류단계

(가) 평가시기

종합평가는 사업관련 평가 및 정산관리를 등록단체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중간점검, 그리고 완료한 때 실시한다. 종합평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익년도에 2월 중순까지 실시된다.

(나) 평가대상

종합평가의 대상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대상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따라 이루어 진다.

중간평가와 같이 외부평가기관이 하고, 회계분야 평가의 경우 전문 회계법인을 통하여 심사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사업추진실적, 자체 평가내용, 사업비 지출 회계보고,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다.

주요 평가 내용은 지원사업의 효과, 단체의 노력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 예산운영의 적정성, 합리성,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우수사례 등이며 평가의 근거는 지원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고 있다.

(다) 평가결과 환류

최종평가는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선정시 반영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는 계속사업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종합평가결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개별점수를 산정하여 우수, 보통, 부진(미흡) 등 대체적으로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한다. 이때 회계부문과 사업부문의 일정비율을 정해 합산한다.

다음의 <표 2-10>은 사업 연도별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종합평가 기관 및 평가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0> 종합평가 기관 및 배점(2002~2012)

연도별	평가주체	평가기준 및 배점
2002	공익사업평가위원회 (12인)	형식평가(15) 내용평가(85)
2003	공익사업평가위원회 (12인)	형식평가(10) 내용평가(90) ※ 예산절감시 가점(10점)
2004	공익사업선정위원회 (15인)	형식평가(10) 내용평가(90) ※ 예산절감시 가점(10점)
2005	외대사회과학연구소, 한영회계법인	단체역량(19.8), 운용과정(20.7), 사업성과(29.5), 예산집행(30)
2006	고려대 거버넌스연구소, CKC회계법인	단체역량(27), 운용과정(28.3), 사업성과(24.7), 예산집행(20)
2007	한국행정학회, 삼덕회계법인	단체역량(56.4), 운용과정(14.6), 사업성과(29). ※ 회계평가 분리
2008	인하대학교 경영연구소, 정진회계법인	사업평가(70) 회계평가(30)
2009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진회계법인	사업평가(70) 회계평가(30)
2010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정진회계법인	사업평가(50) 회계평가(50)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 한성회계법인	사업평가(50) 회계평가(50)
2012	사회문화정책연구원 (구, 한국사회문화연구원)	미정(진행 중)

※ 평가체계는 일반적으로 서면 → 인터뷰 → 현장방문 순으로 이루어짐.

(자료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내부자료 활용)



제3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운영결과 분석

제1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운영 개요

1. 지원배경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시민단체의 활성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며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은 정부에 대한 직·간접의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하였고 시민단체간에도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활동보장과 공정·투명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지원법 제정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1994년 11월 당시 민자당과 민주당이 각각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독자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제14대 국회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동 법률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후 1997년 10월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회의에서 발의하였으나, 법안소위 구성 후 심의보류 되었으며,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의 수정법안으로 1998년 12월 「비영리공익활동 지원법안」을 작성하여 국민회의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법 제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19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입법 청원을 추진하였고, 1999년 5월에 법 조기제정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종전의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의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안」을 조화시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을 마련하였다. 수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와의 회의 등을 가졌으며 당·정 협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8호로 공포되었다.

따라서 이법에 의하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 법이 공포되기 이전인 1999년에는 국회에서 모든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경쟁)에 의한 형태로 공익활동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2. 지원개요

행정안전부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1999년도 국가예산의 결 시 150억 원을 민간단체지원사업비로 의결함으로써 법적근거 및 예산지원의 정당성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NGO에 대한 정부지원을 더욱 뒷받침 해주고자 시민단체가 청원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참고하여 의원입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 공포(법률 제6118호, 2000.1.12.)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위촉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간 특별법에 의거 지원하고 있던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등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99년부터 모든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경쟁방식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사업 유형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9년 공모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처음 실시할 때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선정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자유공모 유형을 반영하였으나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보조금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유형을 구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평가과정에서 제시되어 2000년부터는 사업유형을 8개 정도로 구체화하였다.

민간단체 사업유형은 관련부처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왔고 현재는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민간단체가 공익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분야를 찾아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모든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는 공개경쟁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과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12명 등 사회저명인사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15명)에서 시행령 제8조의 사업의 공익성, 독창성 등 12개 항목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투명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3. 외국의 NGO 지원 및 운영

가. 단체의 설립 및 등록 개요

단체 설립등록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비영리 조직은 주 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관할하는 법에 의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비영리조직의 법인화는 주 정부법에 의하고 세제혜택에 대한 사항은 연방법에 의해 판정되고 있다. 연방법은 없고 대부분의 주에서 「비영리법인법(Nonprofit Corporation Law)」에 따라 국무성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미국의 법에서는 비영리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정부가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주어진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영국은 민간비영리활동 부문을 총칭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영역(Voluntary sector)”과 자선단체(Charity)³²⁾라는 용어이다. 국가 독립기관인 “자선위원회”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은 단체 전반을 지칭하여 “자선(charity)”이라는 단어가 비영리활동의 주요 용어로 정착되고 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법은 없고, 자선단체 형태로서는 회사법(Company Act 1985)에 의한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법인격이 없는 신탁, 왕실에 의한 칙허장설립단체,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로 분류된다. 「자선단체법(Charities Act)」에 의거 ‘자선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 인가주의 택하고 있고 영속적 기탁재산을 가졌거나 토지를 사용·점유하고 있는 공익단체와 총수입이 연간 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공익단체는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다.

프랑스는 「결사의계약에 관한법」에 따라 소재지 도·군 행정관청(파리시는 경찰도청)에 신고함으로써 법인격이 있는 단체설립으로 신고주의이다. 독일은 「민법 및 단체법(주법)」에 의거 단체의 주거지인 지방법원에 등록함으로써 법인격 취득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NGO를 “비정부조직”으로 번역되며, 국제연맹이 정부 이외의 민간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정한 국제연맹헌장 제71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등록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 NPO법)」이 1998년 12월 시행되었고. 법의 목적

32) 미국의 경우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비영리부문(Non-Profit Scto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영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자발성에 바탕을 둔 봉사의 정신이 중시되어 왔기 때문에 “Voluntary Sector”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은 일정의 요건을 갖추고 시민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간편하고 신속하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소관청(도도부현, 내각총리부)에서 요건을 갖추면 비영리활동 법인으로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인이거나 임의단체가 100인이상 회원을 갖추고, 1년 이상 활동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행정기관(사무소가 1개인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2개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하면 20일 이내 처리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나. 단체의 지도 감독

민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는 미국의 경우 주별로 상이하나 기부금품 모금단체는 매년 사업실적과 모금액,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해 보고토록 하고 공인회계사가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검찰청에 수사의뢰한다. 프로젝트별 계약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평가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채리티 기관에서 등록이 인정되면 세제상 우대를 받는 대신에 회계보고 책임 등의 감독을 받고 해당 단체가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사용할 때 등록을 말소하고, 은행구좌 동결, 자금운용 금지, 단체 재산에 대한 업무수행 금지 등을 조치하고 있다.

프랑스는 세금 관련 의무조항을 미준수할 경우 형사책임을 지며 국가의 통합성 및 공화국 이념에 위배되는 단체는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취소하게 된다. 재정지원단체의 경우 자유의사 표시 제한 및 재정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개인과 사적인 조직에 적용되는 민법과 공적기관에 적용되는 공법체제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해당단체는 관할 세무서에 3년마다 회계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업무보고서, 자산내역 등)를 제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한다.

일본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률상 개인의 모임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표자 등의 개인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과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 등기가 불가능 하는 등 각종 제약을 가지게 된다.

법인화되면 기부 등에 한해서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가능한 “認定NPO法人” 이 되는 길이 열리고, 재정적으로는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



기도 하고 法人縣民稅 균등할액의 감면과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등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있다. 이 외에 관할청의 감독을 적게 받게 된다. 법인격의 취득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NPO 자신이 비교해서 자유의사로 결정하는 것이며, 초창기에는 임의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가 기반이 갖추어진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하는 선택하기도 한다.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관할청에 매년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토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보고징수, 입회검사, 개선명령, 설립인증 취소 등을 한다.

우리나라는 단체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은 없고,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고,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각 나라에 대한 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을 비교해 보면 <표 3-1> 과 같다.

<표 3-1> 각 나라의 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 비교

구분	미 국	영 국	프랑스	일 본	한 국
근거	비영리법인법 (Nonprofit Corporation Law)	자 선 단 체 법 (Charities Act)	결사의계약에 관한법	특정비영리 활동촉진법 (NPO법)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
방식	허가주의	인가주의	신고주의	인가주의	등록주의
감독 벌칙	공인회계사 검사, 검찰청 사의뢰	자 선 위 원 회 에 서 감독, 회계 검사, 설립 취소	세금관련 의 무 미이행시 형사책임, 설 립인증 취소	보고·검사, 개선명령, 설립인증 취소 50만엔 이하 벌금	허위사실 기 재시 3년이 하 징역 또 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다.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

미국의 연방정부는 「촛불재단」,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 등에 기금을 출연하고 재단에서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즉 정부와 민간에서 재정지원,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센터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원한다. 연방정부 국무성(내무성)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프로젝트별로 계약하게 된다.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시장의 원리와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간접적 지원방법이 중심이다. 환경·노동·보건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특정서비스에 대하여 자원봉사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로 고용창출, 소외계층 지원, 주민복지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연합체인 「자원단체전국협회」에 공공기금을 지원한다. 자원단체전국협회의 재원은 국가지원 75%이고 회비와 기업찬조가 20%이며 나머지는 자체재원 5%로 운영된다.

독일은 「연방정치교육원」과 친정당적 재단을 통해 단체 운영비, 사업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개별법에 의해 각 부처에서 관련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총무성은 공생사회 실현분야 지원하고 외무성은 경제·사회개발협력 사업 및 인도지원 사업분야에 지원한다. 문부성은 봉사·체험활동 사업 등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의 공개경쟁방식에 의거 비영리미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과는 별도로 각 부처에서도 개별법에 의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라. 정부의 간접지원 방식

(1) 세제혜택

미국은 단체의 소득세 감면은 연방법에 의해 연방정부로부터 획득하고 있다. 연방세법에서 세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30여종)하고 있으나 국세청이 시행하는 조직시험(Organization Test) 통과시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소득세의 면세지위는 주소소득세의 면세지위와 연결되고, 기부자들에게도 세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영국은 자선위원회에 등록되고 국세청으로부터 면세 자격을 승인 받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수익사업은 과세된다.

프랑스는 단체의 행사(축제, 무도회, 콘서트 등)를 위해 동원된 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상근 봉급자 포함)과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즉 공익성이 인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3~5%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독일은 조세법에 의거 공익성이 인정되는 법인에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되



지만 연 7,500 마르크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과세된다.

일본은 NPO법에 따라 지원금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NPO법인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행한 경우에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인격 없는 사단」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는 등 법인세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국세청의 세제혜택 인증요건이 엄격해 총 2,500여개의 신청법인 중 6개 법인만 혜택을 주고 있다. 기부금 공제에 관한 규정은 법률 제정 때에는 없었지만, 2001년 법률개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정NPO법인」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감면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공익성기부금단체(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 5% 범위내에서 손비를 인정하고 있다.

(2) 기부금품 모집

미국은 주별로 모금법(Solicitation Act) 및 자선신탁법(Charitable Trust Act) 등에 따라 국무성에 등록·허가를 받아 연중모금이 가능하고, 기부금에 대한 횡령,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모금 및 예산사용에 대해 주 검찰과 국세청에 보고(연 1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자선위원회에 등록 및 법인자격 취득 후 자선단체법에 따라 연중모금 활동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신고된 단체로서 공익성(3년경과, 회원 200명이상, 자생력여부)을 인정받아야 모금이 가능하다.

일본은 별도의 모금법이 없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공동모금회」에서 개별단체와 공동으로 모금 후 모금액을 배분한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조치로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한 개인이 소득세 계산을 할 경우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며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조례에서 지정한 '인정 NPO 법인'에 개인이 기부한 경우 개인주민세(지방세) 계산 시 기부금공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법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한 법인이 법인세를 계산할 경우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더하여 별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상속 또는 유증의 의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한 사람이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 단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건별로 행정안전부나 시·도의 사전허가를 받아 모금(모금비용 2%인정) 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모금 후 관련단체에 배분(모금비용 10%까지 인정)한다.

(3) 기 타

우편요금 지원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일반 25% 감면)와 같이 우편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치활동의 제한에 대해서는 미국은 면세단체의 경우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 독일은 적극적 정치참여, 비정치적, 간접적 정치참여 시민단체로 구성되어진 것이 특징이며 이는 헌법에 참여의 제도적 보장에서 기인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등록단체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각 나라의 직접 또는 간접지원 제도를 비교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각 나라의 직·간접 지원제도 비교

구분	미 국	영 국	프랑스	일 본	한 국
직접 지원	프로젝트별로 계약, 촛불재단 등을 통해 간접지원	특정 서 비 스에 대한 계약체결	자원단체전국협회에 기금 지원	개별부처에서 관련 단체 지원	공익사업비 일부지원
세제 혜택	연방세법에 규정, 국세청의 조직시 험통과단체에 혜택부여	국 세 청 에 서 면세자 격 부여	단체 활동자 취득세 감면, 공익성 인정 단체 기부금 감면	국세청 인정단체에 비과세 혜택	법인세법에 공익성기부금 인정 (소득 5%)
기부금품모집	주별로 모금법 및 자선신탁법에 거 국무성에서 허가	자 선 단 체 법에 따라 모금	공익성 인정단체는 모금 가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공동모금회에 의거 모금	기부금품모집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모금

(출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서 정리된 자료 참고)



제2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분석

1.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실태 분석

가. 사업 신청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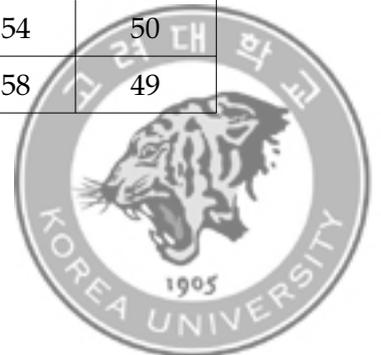
비영리민간단체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1999년도에는 316개 단체 433개 사업이 신청하여 123개 단체 140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하였다. 2000년도에는 340개 단체 432개 사업이 신청하여 151개 단체 19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2001년도에는 268개 단체 412개 사업이 신청하여 166개 단체 216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2002년도에는 266개 단체 393개 사업이 신청하여 175개 단체 237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2003년도에는 305개 단체 474개 사업이 신청하여 178개 단체 237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하였다.

2004년도에는 321개 단체 478개 사업이 신청하여 128개 단체 154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하였다. 2005년도에는 305개 단체 492개 사업이 신청하여 130개 단체 158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1999년부터 2005년도 신청 및 선정 현황

연도별	신청 현황 (억원)			선정 현황 (억원)		
	단체 수	사업 수	금액	단체 수	사업 수	금액
1999년	316	433	916	123	140	75
2000년	340	432	609	151	195	75
2001년	268	412	390	166	216	75
2002년	266	393	312	175	237	75
2003년	305	474	344	178	237	75
2004년	321	478	299	128	154	50
2005년	305	492	290	130	158	49



나. 사업 선정결과 유형별 분석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의 사업유형별 지원 순위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지원유형 중 어떤 유형은 세분화되었고 어떤 유형은 다른 유형에 통합되었으며 또 일부 유형은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업유형이 신설되는 등 수요조사에 의하여 지원유형이 조정되었으나 2005년도 사업 유형을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5년 사업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①국민통합유형이 10,415.4백만원(22%)로 가장 많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으로 ⑦NGO기반구축·시민참여확대 유형이 8,131백만원(18%), ②문화시민사회구축 유형이 7,371백만 원(15.5%), ⑤소외계층 인권신장 유형은 6,056.1백만 원(12.8%), ⑥자원절약·환경보전 유형이 5,605백만 원(11.8%), ③자원봉사 유형은 4,064.5백만 원(8.6%), ⑧국제교류협력 유형이 3,303백만 원(7%), ④안전문화·재해재난극복 유형은 2,454백만 원(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1999년부터 2005년도 사업유형별 지원내역 총괄

유 형 별	사업수		지원액(백만원)	
	건 수	비 율(%)	금 액	비 율(%)
계	1,337	100	44,122	100
①국 민 통 합	250	18.7	9,135	20.7
②문화시민사회구축	197	14.7	5,039	11.4
③자 원 봉 사	119	9	5,101	11.6
④안전문화·재해재난극복	82	6.1	2,066	4.7
⑤소외계층 인권신장	197	14.7	5,115	11.6
⑥자원절약·환경보전	147	11	5,299	12
⑦NGO기반구축·시민참여확대	243	18.2	9,016	20.4
⑧국제교류협력	102	7.6	3,351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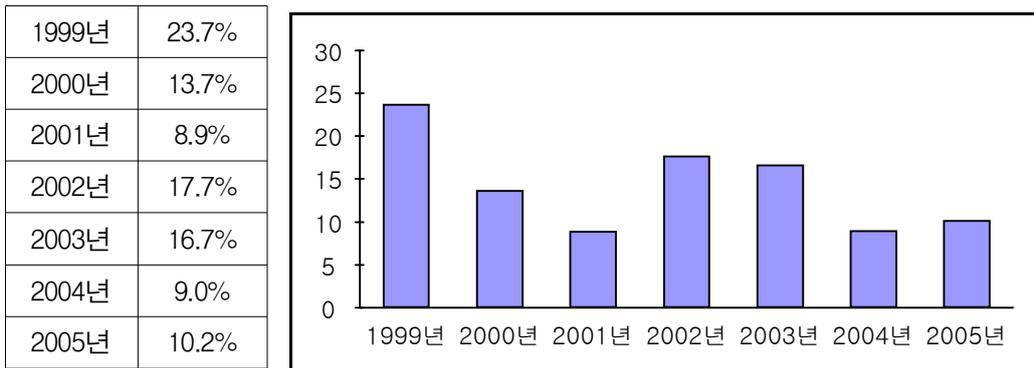
사업유형별 지원 변동추이는 지원연도에 따라 증감이 변동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① 국민통합 유형에서 1999년에는 2,170백



만 원(23.7%), 2000년 1,250백만 원(13.7%), 2001년 814백만 원(8.9%), 2002년 1,615백만 원(17.7%), 2003년 1,530백만 원(16.7%), 2004년 827.4백만 원(9.0%), 2005년 929백만 원(10.2%)으로 1999년을 기준 2001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02년에는 약간 증가하였고 2003년도부터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그래프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 3-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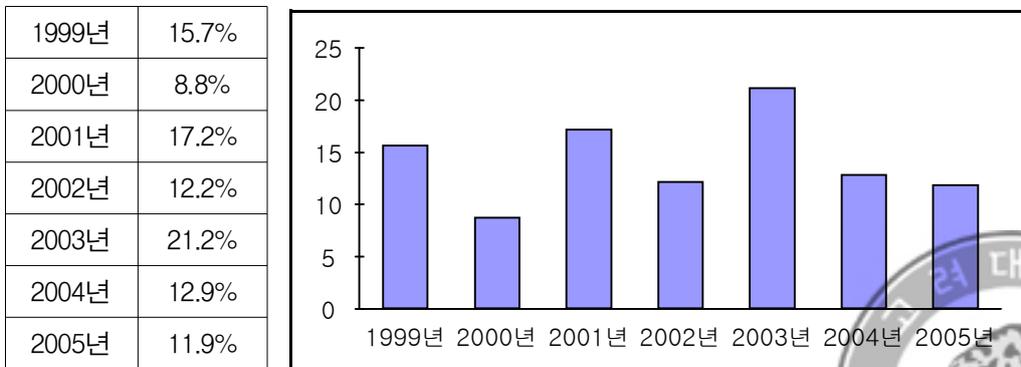
〈표 3-5〉 국민통합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② 문화시민사회구축 유형은 1999년에는 790백만 원(15.7%), 2000년 447백만 원(8.8%), 2001년 867백만 원(17.2%), 2002년에는 613백만 원(12.2%), 2003년 1,071백만 원(21.2%), 2004년 650백만 원(12.9%), 2005년에는 601백만 원(11.9%)으로 2001년 증가하였다가 2002년 감소하고 2003년도에는 증가 2004년 다시 감소하는 등 증감 상태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그래프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 3-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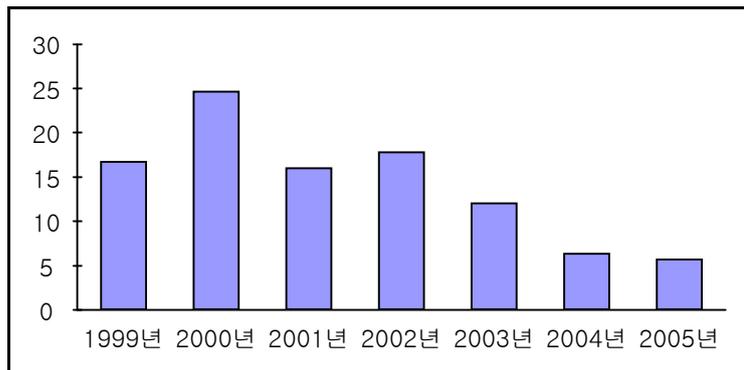
〈표 3-6〉 문화시민사회구축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③ 자원봉사 유형은 1999년에는 860백만 원(16.8%), 2000년 1,260백만 원(24.7%), 2001년 821백만 원(16.1%), 2002년 918백만 원(17.9%), 2003년 616.5백만 원(12.1%), 2004년에는 328백만 원(6.4%), 2005년에는 298백만 원(5.8%)으로 2000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01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그래프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 3-7과 같다.

〈표 3-7〉 자원봉사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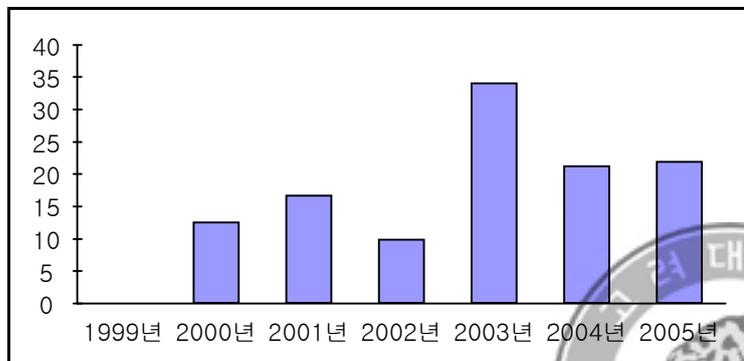
1999년	16.8%
2000년	24.7%
2001년	16.1%
2002년	17.9%
2003년	12.1%
2004년	6.4%
2005년	5.8%



④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유형은 1999년에는 없었고, 2000년에는 260백만 원(12.6%), 2001년 348백만 원(16.8%), 2002년 207백만 원(10.0%), 2003년 704백만 원(34.1%), 2004년에는 440백만 원(21.3%), 2005년에는 455백만 원(22.0%)으로 2002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03년 증가하고 2004년부터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그래프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 3-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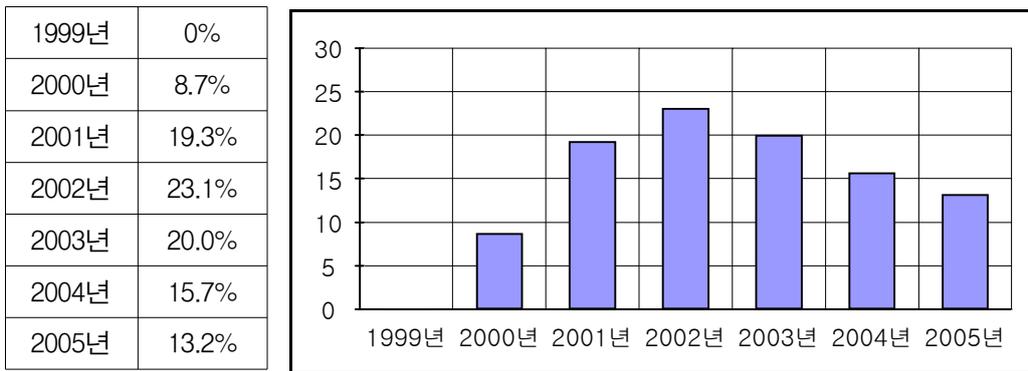
〈표 3-8〉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1999년	0%
2000년	12.6%
2001년	16.8%
2002년	10.0%
2003년	34.1%
2004년	21.3%
2005년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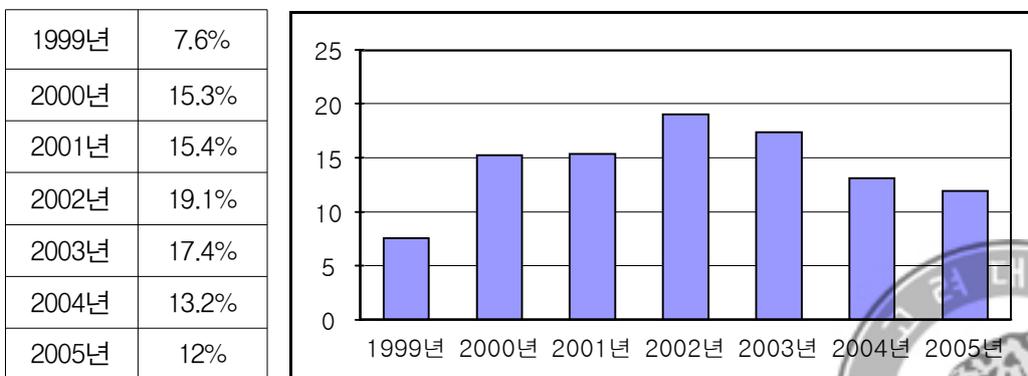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유형은 1999년에는 해당없고, 2000년에는 445백만 원(8.7%), 2001년 987백만 원(19.3%), 2002년 1,183백만 원(23.1%), 2003년 1,021.5백만 원(20%), 2004년에는 804.6백만 원(15.7%), 2005년에는 675백만 원(13.2%)으로 2002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03년에 감소하면서 평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그래프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 3-9와 같다.

〈표 3-9〉 소외계층 인권신장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유형은 1999년에는 404백만 원(7.6%), 2000년 810백만 원(15.3%), 2001년 818백만 원(15.4%), 2002년 1,012백만 원(19.1%), 2003년에는 920백만 원(17.4%), 2004년 700백만 원(13.2%), 2005년에는 635백만 원(12%)으로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3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그래프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 3-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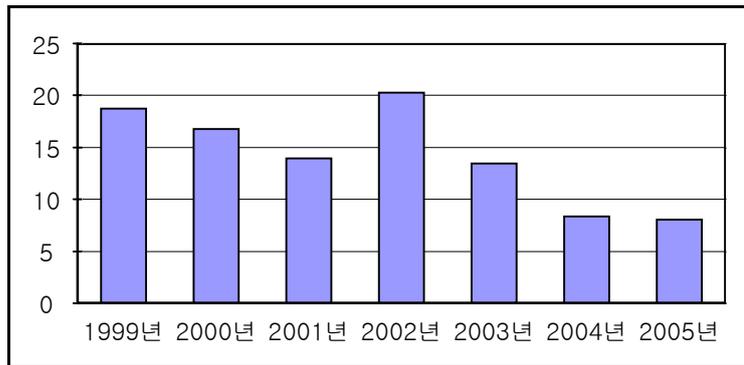
〈표 3-10〉 자원절약·환경보전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⑦ NGO기반구축·시민참여확대 유형은 1999년에는 1,700백만 원(18.8%), 2000년 1,513백만 원(16.8%), 2001년 1,266백만 원(14%), 2002년 1,834백만 원(20.3%), 2003년 1,220백만 원(13.5%), 2004년에는 755백만 원(8.4%), 2005년에는 728백만 원(8.1%)으로 2001년까지 감소하고 2002년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그래프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 3-11과 같다.

〈표 3-11〉 NGO 기반구축·시민참여 확대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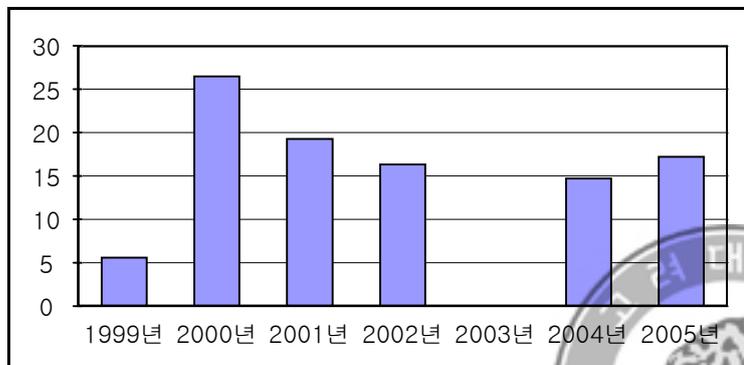
1999년	18.8%
2000년	16.8%
2001년	14%
2002년	20.3%
2003년	13.5%
2004년	8.4%
2005년	8.1%



⑧ 국제교류협력 유형은 1999년에는 190백만 원(5.7%), 2000년 890백만 원(26.5%), 2001년 647백만 원(19.3%), 2002년 550백만 원(16.4%), 2003년에는 해당 없고, 2004년에는 495백만 원(14.8%), 2005년에는 579백만 원(17.3%)으로 2000년에는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1년부터 감소하면서 2003년도에는 지원을 중지하였고 2004년부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그래프로 비교하면 아래 표 3-12와 같다.

〈표 3-12〉 국제교류협력 유형 연도별 지원 현황

1999년	5.7%
2000년	26.5%
2001년	19.3%
2002년	16.4%
2003년	0%
2004년	14.8%
2005년	17.3%



다. 연도별 실제 사업 유형별 지원

위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사업유형에 대해 연도별 증가 또는 감소 추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연도별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한 금액을 정리하면 표 3-13과 같고 연도별 사업유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1999년부터 2005년 사업유형 및 지원내역

연도	사업유형별 지원액(단위:백만원)
1999	① 국민통합(2,170) ②민간단체 및 자원봉사활성화(860) ③신지식인운동(290) ④ 시민참여확대(1,700) ⑤ 부정부패추방(440) ⑥ 경제살리기(510) ⑦ 문화시민운동(790) ⑧ 자유공모사업(740)
2000	① 국민통합(1,250) ②시민참여확대(1,513) ③월드컵문화시민운동(447) ④ 자원봉사·청소년보호(1,260) ⑤ 정부패추방·신지식인(540) ⑥ 자원절약·환경보전(810) ⑦ 안전관리·재난구조(260) ⑧북한국민·재외동포돕기(530) ⑨ 인권신장·국제교류 (890)
2001	① 국민통합(814) ② 월드컵·문화시민운동(867) ③ 투명사회만들기(320) ④ 자원봉사(821) ⑤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987) ⑥ 자원절약·환경보전(818) ⑦ 안전관리·재난구조(348) ⑧ 민족화해협력(700) ⑨ NGO 기반구축·국제교류(647) ⑩ 시민참여 확대 등(1,178)
2002	① 국민통합(1,615) ② 문화시민운동(613) ③ 투명사회만들기(325) ④ 자원봉사·안전문화(918) ⑤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1,183) ⑥자원절약·환경보전(1,012) ⑦ NGO기반구축·국제교류(923) ⑧시민참여확대(911)
2003	① 국민통합(1,530) ② 문화시민운동(1,071) ③ 투명사회만들기(417) ④ 자원봉사(616.5) ⑤안전문화·재해재난(704) ⑥인권보호·권익신장(1,021.5) ⑦자원절약·환경보전(920) ⑧NGO 기반구축·시민참여확대(1,220)
2004	①국민통합(827.4) ②문화시민사회 구축(650) ③ 자원봉사(328) ④ 안전문화·재해재난(440) ⑤인권신장·소외계층보호(804.6) ⑥ 자원절약·환경보전(700) ⑦ NGO 기반구축 시민참여 확대(755) ⑧ 국제교류협력(495)
2005	① 국민통합(929) ② 문화시민사회구축(601) ③ 자원봉사(298) ④ 안전문화·재해재난극복(455) ⑤소외계층 인권신장(675) ⑥ 자원절약·환경보전(635) ⑦ NGO기반구축 ·시민참여 확대(728) ⑧ 국제교류협력(579)

※ 연도별 사업유형이 일부 차이가 있어 그래프 비교는 의미가 낮아 생략하였음.



2. 2006년 이후 사업선정 지원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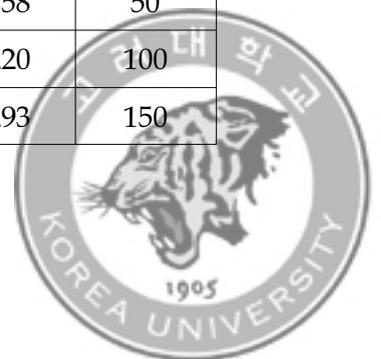
앞에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결과를 분석하였고 나머지 2006년 이후 부터는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으나 부득이 논한다면 2006년부터 불법폭력시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에서 국고보조금을 불법폭력시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과 14년간 지원한 기준을 볼 때 2006년부터 8년째를 맞는 중간시점을 고려하였다.

2006년도 이후 지원에 대해서는 먼저 2006년도 321개 단체 461개 사업이 신청하여 129개 단체 148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하였다. 2007년도에는 269개 단체 371개 사업이 신청하여 129개 단체 15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2008년도에는 383개 단체 399개 사업이 신청하여 117개 단체 13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2009년도에는 272개 단체 362개 사업이 신청하여 139개 단체 16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2010년도에는 293개 단체 346개 사업이 신청하여 153개 단체 158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하였다.

2011년도에는 357개 단체 388개 사업이 신청하여 220개 단체 220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하였다. 2012년은 419개 단체 450개 사업이 신청하여 293개 단체 293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3-14와 같다.

〈표 3-14〉 1999년부터 2005년도 신청 및 선정 현황

연도별	신청 현황 (억원)			선정 현황 (억원)		
	단체 수	사업 수	금액	단체 수	사업 수	금액
2006년	321	461	248	129	148	50
2007년	269	371	218	129	155	50
2008년	383	399	267	117	133	50
2009년	272	362	201	139	162	50
2010년	293	346	218	153	158	50
2011년	357	388	213	220	220	100
2012년	419	450	348	293	293	150



가. 2006년도

2006년도에는 전년도 사업유형 수요조사결과를 통해 7개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달간의 공모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321개 단체 461개 사업이 참여하여 제4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5개 분과위를 구성하여 심사채점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6월 1일 최종 129개 단체 148개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사전에 단체에 공개함으로써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단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년도 선정사업부터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한 사업은 선정을 배제하여 시민단체의 자립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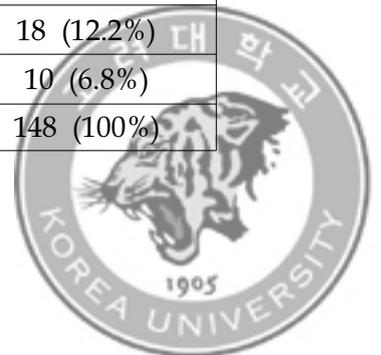
2005년 평가결과를 심사에 반영(100점 만점의 20점)하여 단체 사업 성과의 피드백을 강화하였고 신규단체는 기본점수 10점을 부여하여 진입 기회를 보장하였다. 지원 평균금액은 지난해 31백만 원이었으나 이번은 평균 33백만 원으로 조금 증가되었다. 최저 지원금은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의 '한의사 자원봉사 통합 네트워크 구성과 소외계층 장기 진료사업'으로 4백만 원이며, 단체당 최고 지원금은 자유총연맹의 '왜곡된 성문화 바로잡기 시민기사단프로젝트' 사업으로 6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도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새로 선정된 단체가 67개로서 전체 단체의 45.3%를 차지하였고 신규단체의 공익활동 추진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크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원 금액별로는 3~4천만 원 미만이 34건(22.9%)으로 가장 많고, 6~7천만 원 미만은 10건(6.8%), 1천만 원 미만은 1건(0.7%)이다.

〈표 3-15〉 2006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10백만 원 미만	1 (0.7%)	40~50백만 미만	32 (21.6%)
10~20백만 미만	24 (16.2%)	50~60백만 미만	18 (12.2%)
20~30백만 미만	29 (19.6%)	60~70백만 미만	10 (6.8%)
30~40백만 미만	34 (22.9%)	총 계	148 (100%)



사업 유형별 지원금액을 보면 「사회통합과 평화」 유형이 9.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외계층 인권신장」 유형이 8.13억원, 「문화시민사회구축」 유형이 7.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3-16과 같다.

〈표3-16〉 2006년도 사업유형별 신청 및 선정 현황

사업 유형별(7개)	신청현황			선정결과(백만원) 현황			
	단체수	사업수	금액	단체수	사업수	비율	금액
계	434 (321)	461	24,814	148 (129)	148	32.1%	4,900
금년도 선정사업 ('06)	423 (316)	450	24,235	137 (123)	137	30.4%	4,497
사회통합과 평화	74	80	4,824	28	28	37.8	920
문화시민사회구축	67	70	4,042	20	20	30.8	748
자원봉사·NGO기반구축	59	62	3,127	19	19	33.3	608
안전문화·재해재난극복	31	33	1,685	13	13	39.4	320
소외계층 인권신장	85	94	4,601	23	23	27.4	813
자원절약·환경보전	49	52	2,829	16	16	30.6	559
국제교류협력	58	59	3,127	18	18	32.7	529
'04~'05선정 계속사업	11	11	579	11	11	100.0	403

나. 2007년도

2007년도는 사업유형 수요조사결과³³⁾를 통해 8개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2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달간의 공모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269개 단체 371개 사업이 참여하여 제4기 공

33) 사회적 수요조사 방법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선정단체 및 기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신청유형 및 사업내용 분석, 지원 수요가 적거나 유사한 사업은 통합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설문조사 실시('06. 12.15~12.25) 수요조사 결과, “자원봉사·NGO활동기반확대”를 “자원봉사”와 “NGO활동기반 확대”로 분리 하였다.



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5개 분과위를 구성하여 심사채점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결과 5월 1일 최종 155개 단체 140개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및 선정시기를 지난해 보다 1개월 단축하여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적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년도 평가결과를 심사에 반영하여 우수단체는 가점을 미흡단체는 감점을 부여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강화 하였다. 계속사업(3년)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내년도 지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규모 등을 결정 하였다. 계속사업은 8개 사업유형에 유형별 각각 2개 사업으로 제한하고, 지원액은 연도별 1억원 이내하고 총사업비는 3억원 이내로 제한하였다.³⁴⁾

전체의 지원 평균 금액은 지난해 33백만 원이었으나 이번은 평균 32백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였다.

최고금액 지원사업은 한민족복지재단 단체의 '북한어린이 영양개선사업'과 나눔인터내셔널의 '남북한 한의학 교류사업'으로 65백만 원이다. 그리고 최저금액 지원은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단체가 국제협력 특강 사업과 바른사회 밝은정치시민연합의 '주민자치참여사업'으로 8백만 원이다. 특히, 2006년도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새로 선정된 단체가 69개로서 전체 단체의 47.9%로 새로운 유형의 독창성 있는 사업이 많이 선정되었다.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단체의 사업은 전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금액별로는 3~4천만 원 미만이 38건(27.1%)으로 가장 많고, 2~3천만 원 미만은 43건(22.2%), 1천만 원 미만은 2건(0.3%)이다.

〈표 3-17〉 2007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10백만원 미만	2 (0.3%)	40~50미만	23 (21.2%)
10~20미만	18 (5.7%)	50~60미만	15 (16.8%)
20~30미만	43 (22.2%)	60~70미만	5 (6.7%)
30~40미만	38 (27.1%)	총 계	144 (100%)

34) 계속사업은 총 17개사업('05년 4건, '06년 7건, '07년 6건)으로 전체의 1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 지원금액을 보면 「소외계층 인권신장」 유형이 1,018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사회통합과 평화」 유형이 910백만 원, 「문화시민사회구축」 유형이 609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3-18과 같다.

〈표 3-18〉 2007년도 사업유형별 신청 및 선정 현황

사업 유형별(9개)	신청현황			선정결과(백만원) 현황			
	단체수	사업수	금액	단체수	사업수	비율	금액
계	366 (269)	382	22,138	154 (129)	155	40.6%	4,900
금년도 선정사업 ('07)	355	371	21,852	143	144	38.8%	4,614
사회통합과 평화	65	68	4,601	22	23	33.8	910
문화시민사회구축	47	51	3,143	19	19	37.2	609
자원봉사	26	26	1,470	12	12	46.2	276
안전문화·재해재난극복	28	29	1,778	11	11	37.9	378
소외계층 인권신장	78	84	4,708	33	33	39.3	1,018
자원절약·환경보전	34	36	2,279	14	14	38.9	493
국제교류협력	44	44	2,335	19	19	43.2	523
NGO활동기반 확대	33	33	1,538	13	13	39.4	407
'05~'06 기선정 계속사업	11	11	286	11	11	100.0	286

다.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전년도 사업유형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7개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의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383개 단체 399개 사업이 참여하여 제4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채점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결과 5월 1일 최종 117개 단체 133개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사업선정 건수가 지난해 155개에서 133개로 축소하고, 1개 사업당 평균금액은 32백만 원에서 37백만 원으로 5백만 원이 상향되었다.

최고금액 지원사업은 장애인자립센터 단체(컨소시엄) '중증장애인사업'으로 75백만 원이다. 그리고 최저금액 지원은 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 단체가 주민자치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6백만 원이다.

또한 신규단체 새로운 사업이 전체 사업은 총 113개 단체 중 61개 단체로 54%(07년 47%)를 차지하여 예년보다 많이 선정됨에 따라 공익사업 지원 수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평가결과를 해당 단체 사업심사에 반영(우수단체 가점/+3점, 미흡단체 감점/-3점)하여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강화하였다. 기 선정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 13건 중 9건이 탈락하기도 하였다.

지원 금액별로는 3~4천만 원 미만이 42건(32.6%)으로 가장 많고, 4~5천만 원 미만은 22건(17.1%), 1천만 원 미만은 3건(2.3%)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원 규모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3-19와 같다.

〈표 3-19〉 2008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10백만 원 미만	3 (2.3%)	40~50백만원 미만	22 (17.1%)
10~20백만원 미만	10 (7.7%)	50~60백만원 미만	19 (14.7%)
20~30백만원 미만	21 (16.3%)	60~76백만원 미만	12 (9.3%)
30~40백만원 미만	42 (32.6%)	총 계	129 (100%)

사업 유형별 지원금액을 보면 「소외계층 인권신장」 유형이 1,133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시민사회 구축」 유형이 811백만 원, 「국제교류 협력」 유형이 768백만 원, 사회통합과 평화사업 유형은 71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기 선정된 계속사업 4건은 91백만 원으로 함께 포함되었다. 이를 사업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0과 같다.



〈표 3-20〉 2008년도 사업유형별 신청 및 선정 현황

사업 유형별(7개)	신청현황			선정결과(백만원) 현황				
	단체 수	사업 수	금액	단체수	사업수	선정비율(%)		금액
						신청대비	구성비	
'08년 선정사업	275 (383)	399	26,733	113 (129)	129	32.3	98.2	4,809
사회통합과 평화	62	63	4,222	18	18	28.6	14.6	713
문화시민사회구축	53	54	4,462	21	21	38.9	16.5	811
자원봉사·NGO 활동 기반 확대	47	49	2,470	13	13	26.5	9.2	450
안전문화·재해재난극복	39	43	3,066	12	12	27.9	11.4	559
소외계층 인권신장	81	86	6,235	29	29	33.7	23.1	1,133
자원절약·환경보전	40	41	2,049	13	13	31.8	7.7	375
국제교류협력	61	63	4,229	23	23	36.5	15.7	768
'06~'07 기선정 계속사업	4	4	91	4	4	-	1.8	91
계	279 (387)	403	26,824	117 (133)	133	33%	100	4,900

라. 2009년도

2008년 11월 사업유형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5개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만을 지원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1개월간의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272개 단체 362개 사업이 참여하여 새로 구성된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채점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결과 5월 1일 최종 159개 단체 162개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공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급적 많은 단체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했다. 지난해 평균 금액 37백만 원이었으나 이번은 평균 30백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였다.

최고금액 지원사업은 '태평양아시아협회'단체의 'PAS 청년해외봉사단 파견사업'으로 71백만 원이다. 그리고 최저금액 지원은 '지구촌사랑나눔' 단체가 다문화 가정의 한국적응을 위한 사업으로 4백만 원이다.

특히, 2008년도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2009년에 새로 선정된 단체가 120



개로서 전체 단체의 74.8%(’08년 54%)로 새로운 유형의 독창성 있는 사업이 많이 선정되었다.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회계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에 따른 부대의견(’08.12.13일, 국회의결)을 적용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 선정결과 지원 금액별로는 2~3천만 원 미만이 47건(29.0%)으로 가장 많고, 1~2천만 원 미만은 43건(26.5%), 1천만 원 미만은 1건(0.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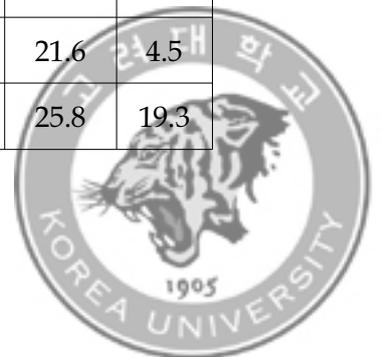
〈표 3-21〉 2009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10백만 원 미만	1 (0.6%)	40~50백만원 미만	21 (13.0%)
10~20백만 원 미만	43 (26.5%)	50~60백만원 미만	20 (12.4%)
20~30백만 원 미만	47 (29.0%)	60~76백만원 미만	8 (4.9%)
30~40백만 원 미만	22 (13.6%)	총 계	162 (100%)

사업 유형별 지원금액을 보면 「국정과제」 유형이 1,848백만 원(37.7%)으로 가장 많고,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유형이 1,350백만 원, 「관계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하는 사업」 유형이 948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업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3-22와 같다.

〈표 3-22〉 2009년도 사업유형별 신청 및 선정 현황

사업 유형별(5개)	신청현황		선정결과(건 / 백만원)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선정 금액	신청현황 대비 선정비율		
					신청건수 대비	신청금액 대비	지원액 구성비
합 계	362	20,084	162	4,900	44.8	24.4	100
100대 국정과제 ³⁵⁾	128	7,965	59	1,848	46.1	23.2	37.7
저탄소 녹색성장	41	2,105	17	534	41.5	25.4	10.9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103	5,321	48	1,350	46.6	25.4	27.6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16	1,018	6	220	37.5	21.6	4.5
관계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하는 사업 ³⁶⁾	74	3,675	32	948	43.2	25.8	19.3



마. 2010년도

2010년도는 전년도 사업유형 수요조사결과를 통해 7개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293개 단체 346개 사업이 참여하여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채점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결과 4월 30일 최종 153개 단체 158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체들의 경제적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공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난해 수준으로 최대한 많은 단체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했다. 지난해 평균 금액 30백만 원이었으나 이번은 평균 31백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였다. 최고 금액 지원사업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단체의 '친환경 녹색마인드 학부모 양성 운동 사업'으로 5천만 원이다. 그리고 최저 금액 지원은 통일교육문화원 등 6개 단체가 각각 1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낙동강환경보호운동본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이다.

특히 2009년도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2010년 신규로 선정된 단체가 76개로서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독창성 있는 사업이 많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선정결과 지원 금액별로는 3~4천만 원 미만이 75건(47.4%)으로 가장 많고, 2~3천만 원 미만은 47건(29.7%), 1천만 원 미만은 6건(3.8%)이다.

〈표 3-23〉 2010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15백만원	6 (3.8%)	30~40백만원 미만	75 (47.4%)
16~20백만원 미만	5 (3.2%)	40~50백만원 미만	23 (14.5%)
20~30백만원 미만	47 (29.7%)	50~60백만원 미만	2 (1.3%)

35)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임기 5년내 실현할 국정목표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5대 지표 20개 유형 100개 세부사업을 말한다.

36) 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기부금품 모집 가능 사업(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정 국민운동단체의 주요사업을 말한다.



사업 유형별 지원금액을 보면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유형이 1,135백만 원 (23.1%)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증진」 유형이 920백만 원, 「녹색성장과 자원절약·환경보전」 유형이 776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3-24와 같다.

〈표 3-24〉 2010년도 사업유형별 신청 및 선정 현황

사업유형별(7개)	신청현황		선정결과(건 / 백만원)				
	사업수 (단체)	금액	사업수 (단체)	선정 금액	선정비율(%)		
					신청 대비 신청건수 대비	신청 대비 신청금액 대비	지원액 구성비
합 계	346 (293)	21,848	158 (153)	4,900	45.7	22.4	100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77	5,134	36	1,135	46.7	22.1	23.1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 증진	67	4,002	31	920	46.3	23.0	18.8
녹색성장과 자원 절약·환경보전	55	3,475	23	776	41.8	22.3	15.8
글로벌시민의식 형성 및 성 숙한 시민사회 구축	52	3,354	23	741	44.2	22.1	15.1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16	965	7	221	43.7	22.9	4.5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25	1,793	13	377	52.0	21.0	7.7
국제교류협력	54	3,125	25	730	46.3	23.4	14.9

바. 2011년도

2010년 11월 사업유형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6개 사업유형으로 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455개 사업이 참여하여 부적격 67건을 제외한 357개 단체 388개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정해서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채점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결과 4월 15일 최종 220개 단체(사업)가 선정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부담 비율을 자율화 하였고, 전체 지원액도 2010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100% 증액하여 많은 단체에게 수혜가 가도록 하였다. 평균 지원금액도 2010년 31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은 45백만 원으로 매우 많이 높아졌다. 최저 지원액



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최고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려 좀 더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2011년 신규로 선정된 단체가 132개로서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저변확대와 공익사업의 다양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11년도 6개 사업유형에 선정된 사업 내용을 보면 다문화 가정·탈북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지원, 국가 안보의식과 재난·안전의식 고취, 녹색생활 실천, 글로벌 시민의식 제고, 해외자원 봉사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선정결과 지원 금액별로는 4~5천만 원 미만이 74건(33.6%)으로 가장 많고, 5~6천만 원 미만은 54건(24.5%), 최저 25백만 원은 5건(2.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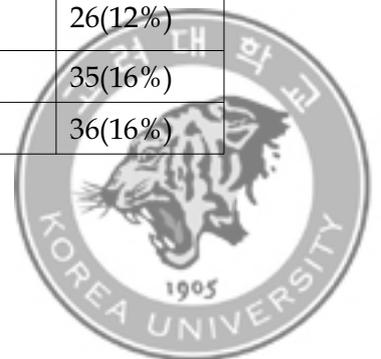
〈표 3-25〉 2011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25백만 원	5 (2.3%)	40~50백만 원 미만	74 (33.6%)
26~30백만 원 미만	13 (5.9%)	50~60백만 원 미만	54 (24.5%)
30~40백만 원 미만	47 (21.4%)	60백만 원 이상	27 (12.3%)

사업 유형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유형이 2,646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국가안보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 유형이 2,291백만 원, 「국제교류 협력」 유형이 1,500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6〉 2011년도 사업유형별 심사대상 및 선정결과 현황

사업 유형별(6개)	심사대상	배정액	선정결과
계	388 건	9,870백만 원	220 건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103 (27%)	2,646	57(26%)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	24 (6%)	828	17(8%)
국가안보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	83 (21%)	2,291	49(22%)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46 (12%)	1,157	26(12%)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보전	59 (15%)	1,448	35(16%)
국제교류 협력	73 (19%)	1,500	36(16%)



사. 2012년도

2011년 11월 사업유형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7개 사업 유형을 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1월 3일 시행사업을 공고한 후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기간을 둔 결과 524건이 접수되었다.

〈표 3-27〉 2012년도 사업유형별 접수 현황

계	사회·취약계층 복지 증진	봉사·기부 문화 확산	국가안보 및 사회통합	재해재난 극복 및 안전 문화 정착	건강사회·성숙한 시민 사회 조성	저탄소 녹색 성장·자원 절약	국제교류협력
524건	107 (20.4%)	32 (6.1%)	112 (21.4%)	30 (5.6%)	67 (12.8%)	84 (16.0%)	92 (17.5%)

이중 부적격 74건을 제외한 450개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제6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채점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결과 4월 12일 최종 293개 단체(사업)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년과 달리 5개 분과위를 구성하여 1차적으로 심사를 마친 후 분과위간 상호 교차를 통한 2차 심사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전체 위원회 심사 등 3차 검증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심사·결정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지난번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회계처리가 되어 지적된 5백만 원 이상 환급한 단체와 단체설립의 목적에 벗어난 사업, 그리고 타 부처 중복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선정된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재난극복과 안전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응급환자 민간구급대원 양성(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등 18개 사업(916백만 원)이 선정되었고, 북한이탈 주민과 다문화사회 정착지원을 위하여 「탈북여성 희망날개 달기사업(탈북여성연대)」, 「다문화 가정 가족단위 교육(한국안전시민연합)」 등 18개 사업(855백만 원)을 선정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Stop(어머니포순이봉사단)」 등 9개 사업(423백만 원)이 선정되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보호, 자원봉사와 기부 활성화, 녹색생활 실천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의 특징은 사업별 평균지원액은 전년도 보다 5백만 원이 증가한 5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지원액은 70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여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록 노력하였다.

또한 비영리단체의 저변 확대와 공익사업의 다양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 년도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심사하여 2012년도에는 144개(49%) 단체가 처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금액별로는 4~5천만 원 미만이 73건(25%)으로 가장 많고, 4천만 원 미만은 69건(23%), 5~6천만 원 미만은 66건(23%), 6~7천만 원 미만이 43건 (15%)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1억 원을 지원 받은 단체는 '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스마일', '안전사랑실천연합', '메디피스' 등 4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이를 지원 금액별로 지원규모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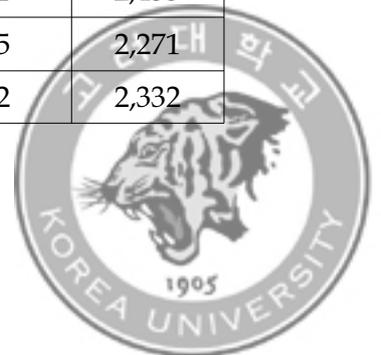
〈표 3-28〉 2012년도 선정사업 지원규모 분포도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40백만 원 미만	69 (23%)	70~80백만 원 미만	22 (7%)
40~50백만 원 미만	73 (25%)	80~90백만 원 미만	12 (4%)
50~60백만 원 미만	66 (23%)	90백만 원 이상	8 (3%)
60~70백만 원 미만	43 (15%)	공 란	

사업유형별로 선정현황은 아래의 표 3-29와 같다.

〈표 3-29〉 2012년도 사업유형별 심사대상 및 선정결과 현황

사업 유형(7개)	심사대상	선정단체	배정금액 (백만 원)
계	450	293	14,780
①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복지 증진	91(20.2%)	61	2,877
②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문화 확산	28(6.2%)	18	900
③ 국가안보 및 사회통합	94(20.9%)	58	3,031
④ 재해재난 극복 및 안전문화 정착	27(6.0%)	18	916
⑤ 건강사회 및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63(14.0%)	41	2,453
⑥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원(에너지) 절약	72(16.0%)	45	2,271
⑦ 국제교류 협력	75(16.7%)	52	2,332



제3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결과 분석

1. 지원사업 평가개요

행정안전부에서는 1999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공익사업평가위원회(12인)에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4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외부의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2005년도부터는 외부 평가기관을 공개경쟁 입찰과정을 통해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생략하고 2003년과 2004년 그리고 외부 평가 시점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도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다음의 표 3-30과 같다.

〈표 3-30〉 2000년도 부터 2011년 평가결과 평균점수 현황

연도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점수	78.9	78.0	82.1	79.0	84.7	81.4	81.5	81.6	63.6	75.4	75.5	80.5

※ 2004년까지는 행안부 자체 내부 평가를 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선정된 외부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결과임

2. 2003년과 2004년 지원사업 평가결과 분석

가. 2003년도

먼저 2003년도에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237개 사업 중 단체사정에 의해 중도 포기한 2개 사업을 제외한 235개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예년³⁷⁾과 큰 차이 없이 100점 만점에 79.01점으로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이중 탁월하다는 사업은 6.8%이고 우수한 사업은 51.5%로 나타났다. 미흡하거나 부진하다는 사업은 33개(14%)이고 미흡이 20개이며 부진은 13개로 나타났다.

37) 행정안전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2년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2000년도 78.91점, 2001년도 78.03점, 2002년도 82.15점으로 나타났음(100점을 기준).



한편 국고보조금 전체 집행률은 97.6%인 가운데 36개 사업(15.1%)이 부정적하게 집행되어 이를 모두 환수(15,180천원) 조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31과 표 3-32와 같다.

〈표 3-31〉 2003년도 종합평가 결과 등급 분포도

구 분	계	탁 월 (90~100)	우 수 (80~89)	보 통 (70~79)	미 흡 (60~69)	부 진 (59이하)
사 업 수	235(100%)	16(6.8%)	121(51.5%)	65(27.7%)	20(8.5%)	13(5.5%)
평균점수	79.01 점	91.9	84.3	75.8	65.9	48.0

〈표 3-32〉 2003년도 종합평가 결과 집행액 및 불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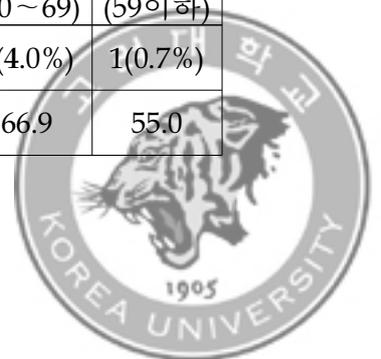
예산액 (천원)	집행액	불용액 (회수금액)				비 고 (이자발생액)
		계	사업포기	집행잔액	용도외사용액	
7,500,000	7,321,727 (97.6%)	173,142	2개사업 14,400	142,023	15,180	1,537

나. 2004년도

2004년도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154개 사업 중 단체사정에 의해 중도포기한 3개사업과 평가 불용한 1개사업을 제외한 150개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도 보다 매우 높은 84.7점으로 나타났다. 이중 탁월이 23.3%이고 우수는 57.3%로 나타났다.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4.7%를 나타낸 가운데 국고보조금 전체 집행률은 97.2%이며 14개 사업이 부정적하게 집행(14,986천원)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모두 환수 조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3과 표 3-34와 같다.

〈표 3-33〉 2004년도 종합평가 결과 등급 분포도

구 분	계	탁 월 (90~100)	우 수 (80~89)	보 통 (70~79)	미 흡 (60~69)	부 진 (59이하)
사 업 수	150(100%)	35(23.3%)	86(57.3%)	22(14.7%)	6(4.0%)	1(0.7%)
평균점수	84.7 점	92.5	85.2	76.8	66.9	55.0



〈표 3-34〉 2004년도 종합평가 집행액 및 불용액

예산액 (천원)	집행액	불용액 (회수금액)				비 고 (이자발생액)
		계	사업포기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5,000,000	4,858,951 (97.2%)	141,049	80,000	46,063	14,986	1,109

3. 2005년도 이후 평가결과 연도별 분석

가. 2005년도

2005년도 선정된 157개 사업 중 단체의 내부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1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56개 사업을 외부 평가기관인 한국의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14개 항목 총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 모형에 따라 3개 부문 10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70점을 배정 하고 예산분야(책임성)는 평가항목 4개에 대해 30점을 배정하였다. 특히 예산분야(30점)는 회계 정산기관인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것을 반영하였다.

한편 가중치 산출은 평가지표에 대해 민간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였다. 평가 요소들을 상대 비교하는 계층분석절차(AHP)³⁸⁾ 기법을 적용하였고, 종합평가 시에는 중도 포기한 1개 사업과 중간점검 이전에 포기한 2개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은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감점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을 정하였다.

평가결과는 각 단체가 충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결과, 전체 평균이 81.4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전년도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평가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탁월·우수 사업(80점 이상)은 113개(72%)를 차지한 반면, 미흡·부진 사업(70점 미만)은 11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

38) AHP는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상대비교(또는 이원비교, 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론을 말한다.



타났고 우수이상 등급을 판정 받은 사업은 124건(79%)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가결과 양호한 편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35와 같다.

〈표 3-35〉 2005년도 종합평가 결과 등급 분포도

구 분	계	탁 월 (90~100)	우 수 (80~89)	보 통 (70~79)	미 흡 (60~69)	부 진 (59이하)
사 업 수	157(100%)	10(6.4%)	103(65.6%)	33(21%)	8(5.1%)	3(1.9%)
평균점수	81.4 점	93.6	84.2	75.6	66.6	44.8

예산 집행결과는 총 지원예산 49억 원 중 약 48억 원(98%)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약 9천8백만 원으로 2%정도에 해당된다. 집행잔액은 사업포기 1건(22백만 원), 중간점검시 2차 보조금 교부중단 2건(12백만 원), 사업별 집행잔액은 6천4백만 원(1.3%)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6과 같다.

〈표 3-36〉 2005년도 종합평가 집행액 및 불용액

총예산액 (천원)	지출액	지출 잔액				비 고 (이자 발생액)
		계	사업 포기	집행 잔액	(중간점검시 2차 교부중단)	
4,900,000 (100%)	4,801,619 (98%)	98,381 (2%)	22,000 (0.5%)	64,381 (1.3%)	12,000 (0.2%)	1,097 (0.02%)

나. 2006년도

2006년도는 선정된 148개 사업들에 대해 외부 평가기관인 고려대 거버넌스 센터(회계평가 CKC회계법인)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다.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은 단체역량, 운용과정, 사업성과, 예산집행 등 4개 분야에 대한 16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였다. 평가모형에 따라 3개 부문을 12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80점을 배정하고 나머지 20점은 예산분야(책임성)의 4개 평가항목으로 배정 하였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90점 이상으로 나타난 우수 등급에는 전체의 20.3%인 30개의 사업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사업의 평균점수는 92.2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등급으로 평가된 사업들의 회계 평균점수는 20점 만점에 19.0점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70~89) 사업은 102개 사업으로 전체의 68.9%에 해당하였는데 이들 사업의 평균 점수는 83.9 점이고, 보통등급으로 평가된 사업들의 회계평균 점수는 14.6 점으로 나타났다.

미흡등급(69점 이하)으로 평가된 사업은 모두 16개이고 전체의 10.8%에 해당되며 평균점수는 32.8 점이다. 미흡등급의 회계 평균점수는 6.4 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37과 같다.

〈표 3-37〉 2006년도 종합평가 결과 등급 분포도

구 분		계		우 수 (90~100점)		보 통 (70~89점)		미 흡 (69점 이하)	
사 업 수		148		30		102		16	
비 율 (%)		100.0%		20.3 %		68.9 %		10.8 %	
평 균	사 업	81.5 점	65.4	92.2	73.2	83.9	69.3	32.8	26.4
	회 계		16.1		19.0		14.6		6.4

단체역량 항목의 경우 전체 148개 사업 중 51.4%인 76개 사업이 우수등급이고, 42.5%인 63개 사업이 보통 등급으로 평가되어 전체 사업의 93.9%가 보통이상의 단체역량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운영과정 항목은 전체 148개 사업중 31.1%인 46개 사업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고, 62.8%인 93개 사업이 보통 등급으로 평가되어 전체의 93.9%가 보통 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성과 항목은 전체 148개 사업중 16.2%인 24개 사업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보통등급 사업은 77.0%인 114개로 나타남에 따라 다른 항목들에 비해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는 148개 단체 중 90개인 60.8%가 우수등급을 받은 반면, 34개 단체가 23.0%로 미흡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예산관리의 투명성 및 예산관리의 효율성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의 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 민간단체들이 예산처리에 있어서 회계 관련 규정들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38과 같다.

〈표3-38〉 2006년도 평가분야별 등급 분포도

구 분	계	우 수 (90~100점)	보 통 (70~89점)	미 흡 (69 점 이하)
단체역량	148(100%)	76(51.4%)	63(42.5%)	9(6.1%)
사업운영	148(100%)	46(31.1%)	93(62.8%)	9(6.1%)
사업평가	148(100%)	24(16.2%)	114(77%)	10(6.8%)
회계평가	148(100%)	90(60.8%)	24(16.2%)	34(23%)

이번 회계평가의 경우에는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중점을 두고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회계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집행잔액의 반납 대상은 69개 단체 240백만 원('05년 8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계처리가 부적절한 환수대상은 41개 단체 150백만 원('05년 1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2007년도 사업선정 시 우수한 단체는 가점을 미흡한 단체는 감점을 적용하였다.

다. 2007년도

2007년도에는 선정된 155개 사업에 대해 외부 평가기관인 한국행정학회(회계평가 삼덕회계법인)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다.

평가는 현장방문 위주의 심층평가를 위해 서면과 인터뷰 평가 그리고 현장방문을 병행하였다. 평가항목은 평가모형에 따라 단체역량, 운용과정,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를 7개 항목 16개 지표로 세분하여 평가하였다. 회계평가는 예산사용과 제반 규정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 155개 사업의 전체 평균점수는 81.62점을 얻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수이상(90점 이상)은 37개 사업(24%)이고 보통(70~89점)은 98개 사업(63%), 미흡(70점 미만)은 20개 사업(13%)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9와 같다.



〈표 3-39〉 2007년도 종합평가 결과 등급 분포도

구 분	계	우 수 (90~100점)	보 통 (70~89점)	미 흡 (69 점 이하)
사 업 수	155 개	37	98	20
비 율 (%)	100.0%	23.87 %	63.23 %	12.90 %
평 균 (점)	81.62 점	93.33	80.85	63.73

회계평가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적정하였으나 일부 증빙자료 미비 등 사례가 발생하여 반납대상이 63개 단체 205백만 원('06년 240백만 원)이고 회계처리가 부적절한 환수대상은 11개 단체 6백만 원('06년 15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도 계속사업 13개 중 5개 사업이 미흡하여 지원을 중단하였고 나머지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2007년도부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집행 시 Check 카드 사용을 도입하였으며 우수단체는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단체에 대해서는 2008년도 사업 선정 시 3점 범위내에서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40과 같다.

〈표 3-40〉 2007년도 계속사업 지원평가 결과 등급 분포

구 분	합 계	평균 점수	세부평가 내역		
			우 수	보 통	미 흡
계	18개	75.7	1개	12개	5개
1차년도(2007년 선정)	6개	78.9	1개	4개	1개
2차년도(2006년 선정)	7개	69.8	0개	3개	4개
3차년도(2005년 선정)	5개	80.1	0개	5개	0개

라. 2008년도

2008년도는 선정된 133개 사업에 대해 외부 평가기관인 인하대학교 경영연



구소(회계평가 정진회계법인)에서 주관하여 평가하였다.

외부 평가기관에서는 서면과 인터뷰 평가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평가 3개 부문인 단체역량, 운용과정, 사업성과에 대한 70%와 회계평가 부문을 30를 적용한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였다.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63.6점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최고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41과 같다.

〈표 3-41〉 2008년도 종합평가 결과 등급 분포

구분	계	우수	보통	미흡
		80점 이상	60점이상~80점미만	60점 미만
사업수(개)	133	17	65	51
비율(%)	100	12.8%	48.9%	38.3%
평균(점)	63.6	86.5	68.7	50.0

2007년도와 3개 부분을 비교해 보면 보통 점수에서 단체역량만이 높게 나타났을뿐이고 운용과정과 사업성과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42와 같다.

〈표 3-42〉 2008년과 2007년 평가 결과 3개 부문 등급 비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단체역량	17.3%	38.5	63.9%	46.5	18.8%	15.0
운용과정	32.3%	45.2	51.9%	41.9	15.8%	12.9
사업성과	12.8%	30.9	30.8%	60.0	56.4%	9.0

2007년도와 회계 평가부분을 비교해 보면 우수는 매우 낮고, 보통 점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흡한 점수는 많음에 따라 2007년도 보다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43과 같다.



〈표 3-43〉 2008년과 2007년 평가 결과 회계부문 등급 비교

구 분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이상~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133(100%)	21.8%	75.5%	42.1%	23.2%	36.1%	1.3%

2007년도와 집행금액별로 비교 시 집행률은 비슷하고 환수대상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환수대상에 대해 해당단체의 이의신청으로 제출한 서류와 평가기관의 검토 결과를 정밀하게 검사한 결과 이의신청 24개 사업 중 13개 단체(사업) 45,963천 원을 수용함에 따라 최종 환수대상은 47개 단체 49개 사업에 대한 143,460천 원을 확정된 바 최종 환수금액은 2007년도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44와 같다.

〈표 3-44〉 2008년과 2007년 예산집행 결과 비교

구 분	2008년도	2007년도
총 보조금 지출금액	4,649,718,475 원 (지출비율 : 95.2%)	4,656,074,220 원 (지출비율 : 95.1%)
보조금 미집행 잔액	232,681,525 원 (잔액비율 : 4.8%)	240,125,780 원 (잔액비율 : 4.9%)
총 발생이자 금액	1,397,998 원	923,521 원
총 환수대상 금액	192,806,832 원	149,738,240 원
총 반납대상 금액	232,681,525 원	240,125,780 원
총 액	425,488,357 원	390,787,541 원

마. 2009년도

2009년도에는 선정된 162개 사업 중 중도 포기 등 5개 사업을 제외한 157개 사업에 대해 외부 평가기관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평가 정진회계



법인)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다. 평가 결과 보통 이상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전체 평균점수는 74.8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비의 집행률은 84.7%(보조금 95%, 자부담 75.9%)를 보인 가운데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사업 프로그램이 다소 연기 또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다수 단체가 당초 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평가는 사업성 평가와 회계평가로 구분되었는데 이중 사업평가 결과는 평균 75.4점이고 항목별 평가결과는 사업성결과 높았고 단체역량과 운용과정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45와 표 3-46과 같다.

〈표 3-45〉 2009년도 종합평가 중 사업평가 결과 등급 분포도

구분	계	우수 (80점 이상)	보통 (60점이상~80점미만)	미흡 (60점 미만)
사업수(개)	157	71	61	25
비율(%)	100	45.2%	38.9%	15.9%
평균(점)	75.4	87.7	70.9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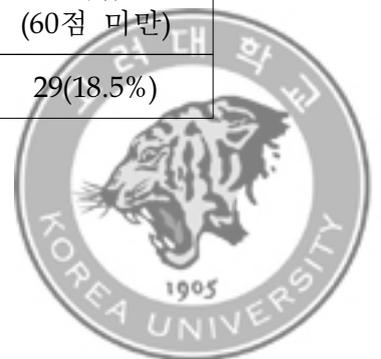
〈표 3-46〉 2009년도 종합평가 중 사업평가 항목별 등급 분포도

구분	사업수 (개)	우수 (80점 이상)	보통 (60점이상~80점미만)	미흡 (60점 미만)
단체역량	157	38	70	49
운용과정		29	81	47
사업성과		101	37	19

한편, 회계 평가는 평균 74.2점으로 우수 47.7%, 보통 33.8%, 미흡 18.5%을 얻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3-47과 같다.

〈표 3-47〉 2009년도 종합평가 중 회계평가 등급 분포도

구분	우수 (80점 이상)	보통 (60점이상~80점미만)	미흡 (60점 미만)
사업수(비율)			
157(100%)	75(47.7%)	53(33.8%)	29(18.5%)



특히, 회계평가의 경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였으나, 일부 단체의 지출 증빙자료 미비 등으로 적법 회계처리 인정 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잔액 반납 대상은 총 97개 사업 236백만 원('08년 80건 242백만 원) 가운데 회계처리가 부적절함에 따라 환수대상은 총 46개 사업 142백만 원(2008년 49건 120백만 원)으로 이를 모두 환수 조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48과 같다.

〈표 3-48〉 2009년도 평가 보조금과 자부담 집행결과 비교

총사업비	총사업비 (10,295백만원)			
	보조금 (4,765백만원-46%)		자부담 (5,530백만원-54%)	
10,295백만원	집행(95%)	미집행(5%)	집행(76%)	미집행(24%)
	4,528	236	4,195	1,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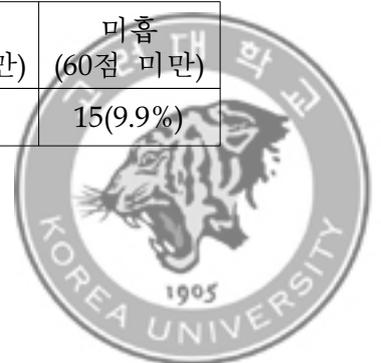
바. 2010년도

2010년도에는 선정된 158개 사업 중 151개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연구원(회계평가 정진회계법인)에서 주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은 사업부문 3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해 50%와 회계부문 8개 지표에 대한 50%를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전체 평균은 75.5 점으로 나타났다.

151개 사업 중 우수이상(80점 이상)을 받은 사업이 61개 사업(40.4%)이고, 보통등급(60~79점)으로 평가된 사업은 75개 사업(49.7%)이며, 미흡(60점 미만)으로 평가된 사업은 15개 사업(9.9%)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49와 같다.

〈표 3-49〉 2010년 종합평가 결과 등급별 분포도

구분	평균점수	우수 (80점 이상)	보통 (60점이상~80점미만)	미흡 (60점 미만)
사업수(비율)				
151(100%)	75,5점	61(40.4%)	75(49.7%)	15(9.9%)



사업평가의 경우 단체역량, 추진과정, 사업성으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우수 52.3%, 보통 38.4%, 미흡은 9.3%로 나타남에 따라 각 단체의 역량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50과 같다.

〈표 3-50〉 2010년 종합평가 중 사업평가 등급별 분포도

구분	평균점수	우수	보통	미흡
사업수(비율)		(80점 이상)	(60점이상~80점미만)	(60점 미만)
151(100%)	79.1점	79(52.3%)	58(38.4%)	14(9.3%)

회계평가의 경우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결과 우수 42.4%, 보통 34.4%, 미흡 23.2%가 나타나 사업평가 보다는 적정성이 낮았다.

집행잔액 반납대상은 96개 사업 165백만 원 ('09년 97건 236백만 원)이며 회계처리가 부적절함에 따라 환수대상은 44개 사업 109백만 원('09년 34건 4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51과 같다.

〈표 3-51〉 2010년 종합평가 중 회계평가 등급별 분포도

구분	전체평균점수	우수	보통	미흡
사업수(비율)		(80점 이상)	(60점이상~80점미만)	(60점 미만)
151(100%)	72.0점	64(42.4%)	52(34.4%)	35(23.2%)

사. 2011년도

2011년도에는 선정된 220개 사업 중 중도 포기한 2개를 제외한 218개 사업에 대해 외부 평가기관인 한국정책과학학회(회계평가 한성회계법인)에서 복수의 평가자들로 구성된 3단계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업비 집행은 회계전문기관(한성회계법인)에서 정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평가대상 218개 사업 중 우수(80점이상)이상 등급은 143건(66%)이고 미흡(60점미만)이 16건(7%)인 가운데 평균은 80.5점으로 지난해 평균 75.5점 보다 높은 성적이다. 우수 사업들은 대부분 충실하게 사업을 집행한 결과 단체역



량, 운용과정, 사업성과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52와 같다.

〈표 3-52〉 2011년 종합평가 결과 등급별 분포도

구분	전체 평균	매우 우수 (100~90점)	우 수 (89~80점)	보 통 (79~70점)	미 흡 (69~60점)	매우미흡 (60점미만)
사업수 218개 (100%)	80.5 점	18개 (8.3%)	125개 (57.3%)	52개 (23.9%)	7개 (3.2%)	16개 (7.3%)

다만, 사업평가 결과 단체역량이나 사업성과 분야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운용과정 분야는 보통이하의 평가를 받은 단체들이 70%에 달하여 향후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회계평가 결과 평균 83.4 점으로 중간평가단계의 회계평가 및 회계교육 등을 통해 단체의 회계보고서 작성능력과 보조금 집행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됨에 따라 전반적인 재무관리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다.

보조금 집행률은 97%이고 집행잔액과 이자액 및 환수금액을 포함한 총 반납액은 43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환수금액은 정산결과 총 172백만 원이다. 이는 보조금 집행지침 위반 등 부적정하게 집행되었거나 지출 근거자료 미비 등으로 나타났고 이 중 7개 사업에 대한 환수금액이 5백만원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2년도 사업선정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2012년 사업선정에 있어 우수한 상위 15개 단체는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미흡한 16개 단체는 감점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2011년 종합평가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다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가운데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기준(배점)을 확정하였다는 점이 의의가 크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평가진행을 위해 평가기간을 늘리고 접근방법과 도출된 문제점들이 다음해 반영되도록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요구를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 선정분야에서 선정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도구와 평가방법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단체의 사업수행의지,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장점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분야에서는 사업수행 성과가 짧은 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영역을 별



도 관리하여 평가결과를 후속 사업선정에 반영하는 다년도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겠다.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비영리단체가 전담조직이나 상근직원이 없는 영세한 단체이므로 보조금 내에서 사무국 등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목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인 사업변경이 가능하도록 자율성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업수행과정에 있어 전 기간에 걸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모니터링 체계 구축(자문단 운영 등 지원)도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확대·재편하여 일원화된 종합적인 지원 기본법을 검토하여야겠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³⁹⁾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이다. 외국의 경우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 기금을 모집하고 모집된 기금을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 지원조직을 육성하여 민관간 네트워킹 및 교류촉진과 정보수집 및 제공, 상담 및 컨설팅, 기반조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2012년도는 지원사업이 4월 12일 293개가 선정되어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가 2013년 3월말경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었다.

39) 정부 또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민관을 아우르는 중립적인 형태의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4절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1. 개 요

정부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업선정 시 정권과 관련된 단체에 편중 지원하고 있다는 점,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통한 공정하게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 사업평가(중간, 종합)결과 미흡하게 평가받은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용목적의 사용시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국회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의 지적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회의 지적사항

국회에서는 매년 회계결산 및 새해 예산편성과 국정감사 시 시민단체의 보조금지원에 대해 연례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적해 오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지적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매년 사업선정이 특정단체에 편향되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즉 공정하게 사업선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사업선정을 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제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⁴⁰⁾을 보면 알 수 있다. 한편 매년 단체등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

40) ① 신지호 의원안('08.7.24, 53인 발의, '09.2.20 소위원회) : 최근 3년간 단체의 구성원이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확정시 민간단체 등록 제한, 등록말소, 교부받은 보조금 환수, 공익사업선정위원 구성 추천 변경 ② 강기정 의원안('09.5.14, 20인 발의, 10.4.14 소위원회) :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법 제7조에 7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시행령 제5조는 폐기 ③ 김유정 의원안('09.5.21, 15인 발의, '10.4.14 소위원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자가 2/3(10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려는 것임 ④ 정갑윤 의원안('09.6.3, 11인 발의, '10.4.14 소위원회) :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용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거나 국가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활동함으로써 시민에게 공익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차원으로 볼 때 보조금 예산을 점차 확대 편성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측면도 적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내실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위해 평균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실제적인 사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공고기간 등을 단축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⁴¹⁾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준에 적합한 단체가 등록이 되도록 각 행정기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엄격 적용하고 현실에 적합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관련된 주장들을 살펴보면,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신청 마감일이 지난 2일동안 8개 보수단체가 뒤늦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사업신청 마감 뒤에도 신청 서류 보완기간을 주었고 선정사업 결정 발표도 연기하였기 때문에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이 일부 보수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되었다(2009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⁴²⁾

이는 “부적정한 회계처리와 사업평가 결과 등이 차기에도 지원 단체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으로 환수조치를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하는 등 심사기준을 재정비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년 10월 행안부 국정감사).

한편, 국회 민주당은 예결위의 ‘부대의견’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불법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지원을 철회하기로 한 행안부의 방침은 법적 근거 등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지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행안부 법 집행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

와 사업보고서를,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⑤ 문학진 의원 대표 발의안(‘11.7.12, 17인 발의, ‘12.2월 행안위 상정) : 지원사업 선정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서 작성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41) 정부 입법안(‘11.8.22, 국회 제출, ‘12. 2월 행안위 상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기간 단축(1개월)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당겨 조정(3월 말까지를 2월 말일까지)하려는 것임

42) “무자격 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은 부당한 일로 명백히 등록 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보조금을 환수한 후 등록 말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 강기정 의원 2009.10. 국정감사). 그러나 확인결과 행안부에서는 사업공고문에 부득이한 경우 신청서류를 보완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 사업선정일 연기는 당초 조기집행행을 위해 앞당기려 했으나 내부 절차를 거쳐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며, '불법단체'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 검토과정에서 논의하면 문제되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법안 대체토론에서 “지원단체에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 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법에 근거도 없이 예결위의 부대의견에 따라 단체에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2009.2.20 국회).

3.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의 지적사항

언론에서도 일부 단체에게 편중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점들은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어느정도 지원범위를 정해놓고 심사표에 의거 결정된 결과 점수가 낮은 단체는 탈락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시민단체에서의 지적은 최종적으로 선정단체가 발표되면 탈락한 단체들이 다른 유사한 단체와 비교하여 사업내용이 우수하였는데도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정하게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선정된 일부 단체들로부터는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보조금이 책정되어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거나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이 복잡하고 제한요소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한 가운데 사업추진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며 단순인건비 및 식대비 등을 현실화 시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지원사업비 대한 활동비 범위를 10%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올해는(2012)는 지난해 3~6%보다 높은 10%까지 조정하였다. 이에 대해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53과 같다.

〈표 3-53〉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범위 (2012년)

총 사업비	활동비 인정 범위
1억 원 이상	사업비의 8%(900만 원 ~ 1,00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사업비의 9%(600만 원 ~ 900만 원)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사업비의 10%(300만 원 ~ 600만 원)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출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또 다른 주장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적절한가는 각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김준기, 2004).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동안 예산을 지원해온 정부 입장에서 이 제도의 성과제고를 위해 현황을 정확히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고경훈·최창수, 2007).

“2010년도에 비판을 받았던 단체와 새로운 관변단체를 육성하려는 정책의 수단이라고 본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체계 활성화 및 확대라는 ‘가치철학’의 부재가 여전하게 남아있고, 최소한의 비합리성, 초불법성, 새로운 관변단체의 육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2010.2.3, 홈페이지 네이버, 진보적 가치와 상상력).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이 본래의 목적보다도 정부가 펼치는 정책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에게 편중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각 단체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평가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1.7.).

“201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판정받은 단체를 2011년 또다시 보조금을 교부를 했으며 대부분이 전년도인 2010년도 보다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헤럴드경제, 2011.7.14.).

“정부 시책에 발 맞추는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사실이 안타깝다”(서울환경운동연합). “본래 시민사회가 고유하게 수행해 왔던 역할을 줄이고 정부가 하는 일을 보조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정부가 시민단체에 일감을 나눠주고 싶은 것 같다”(참여연대). “행안부 방침은 비영리재단 등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정부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정부기구가 하는 것보다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을 대신 수행했던 측면이 있다며 정부에 반대되는 활동이라든지 의미가 없는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에이블 뉴스, 정부 시민단체 본격 길들이기, 2009.2.4. CBS사회부).

“정부가 불법과 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법치(法治) 부정이고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반(反)공익·반민주를 주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은 불법과 폭력단체의 자금원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문화일보 오피니언, 2009.2.4, 행안부 ‘불법시위단체 지원중단’ 제대로 시행하라).

“일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지원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가 아닌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써야 하는데 2009년 6월 덕수궁 앞에 설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철거했던 모 단체는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 캠페인 및 홍보’를 명목으로 특정 신문에 계도(啓導) 광고를 싣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일보, 2011.1.9).

“일부 시민단체는 사업비 집행한 지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정부도 회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의 재정비가 절실하다”(문화일보 오피니언, 2008.9.18).

“지원사업 관리라는 면을 너무 부각시켜 내용보다 행정상 편의 중심으로 사업이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처음 사업선정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공모사업 원칙이 적합한 지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선정 단계부터 사업결과를 예측하고 컨설팅할 필요가 있다”(2012.2.7, 환경일보, 민간단체의 진화).

따라서 위의 지적사항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래의 지원취지에 적합하고 국민에 대한 질적 공익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내실있는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제4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설계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이를 반영하여 좀 더 내실있는 지원사업의 선정과 운영, 그리고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해 그 동안 논의되거나 궁금하였던 내용을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 항목을 구성한 것이다. 총 문항은 22개이고 세부항목도 25개 추가하였다. 설문의 척도는 5점범위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고 추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설문조사 항목 및 문항 현황

계	응답단체 특성	단체의 인식조사	지원결과 평가분야	기타 건의 등 의견
24(27)	7(9)	7(7)	7(8)	3(3)

* 괄호()는 설문의 세부항목이 포함된 수치임.

2. 조사방법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모색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설명회 장소에서 직접 설문서를 배포한 후 현장에서 회수하거나 나중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도착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동년 1월 31일 오후 3시에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개최하면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료 수집기간을 2월 15일까지 도착한 것으로 하였다.



3. 조사결과

조사 결과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348개 단체에게 배포한 설문서 가운데 159개 단체가 자유롭게 응답함으로써 회수율은 45.7%로 나타났다. 연구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응답한 결과에 대하여 한국 갤럽 전문가에 의뢰하여 설문응답에 대한 친공작업 통계를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5점 척도에 대한 평균치값도 정확히 산출하여 설문지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켰다.

제2절 설문결과 분석

1. 응답단체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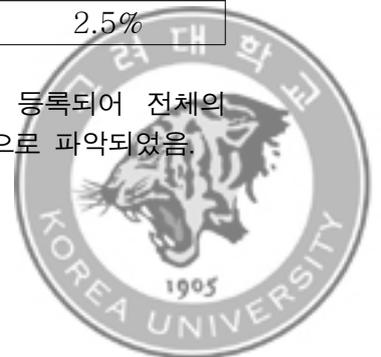
가. 단체의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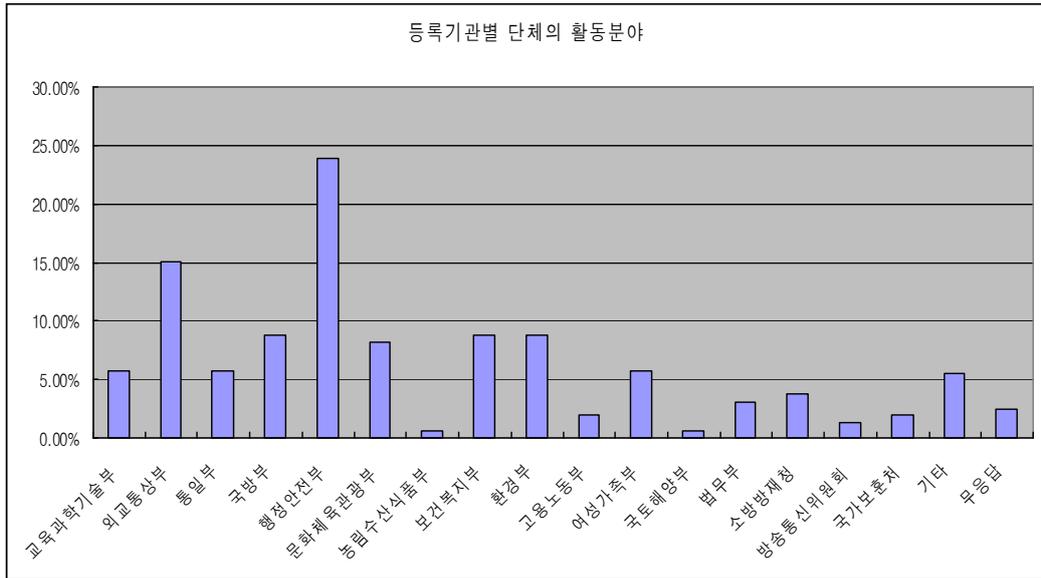
먼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기관별 단체의 활동분야에 대해서 159개 단체 중 행정안전부 업무분야가 가장 많은 23.9%⁴³⁾의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외교통상부가 15.1%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8.8% 응답한 순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189개이고 부처별 현황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2〉 등록기관별 단체의 활동분야 (설문지 1번)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5.7%	15.1%	5.7%	8.8%	23.9%	8.2%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0.6%	8.8%	8.8%	1.9%	5.7%	0.6%
법무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기타	모름(무응답)
3.1%	3.8%	1.3%	1.9%	5.5%	2.5%

43) 2011년도 총 1,189개 단체 중 행정안전부에 199개 단체가 등록되어 전체의 16.7%로 가장 많고 환경부는 14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4-3〉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현황(2011.12.31. 기준)

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1,189개 단체	7	40	111	113	6	24	199	120	36	8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132	142	41	73	29	7	9	5	6	11	
	중소기업청	특허청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방송통신위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	금융위	국가인권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
	2	23	1	2	10	11	7	7	4	1	2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나. 설립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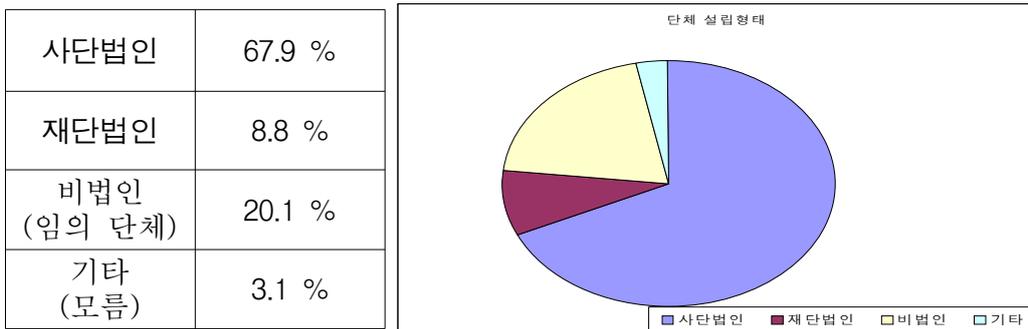
단체의 설립형태는 사단법인이 67.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임의단체는 20.1%이고 재단법인은 8.8%로 나타났다.⁴⁴⁾

4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분석을 보면 법인 61.3%(재단법인은 5%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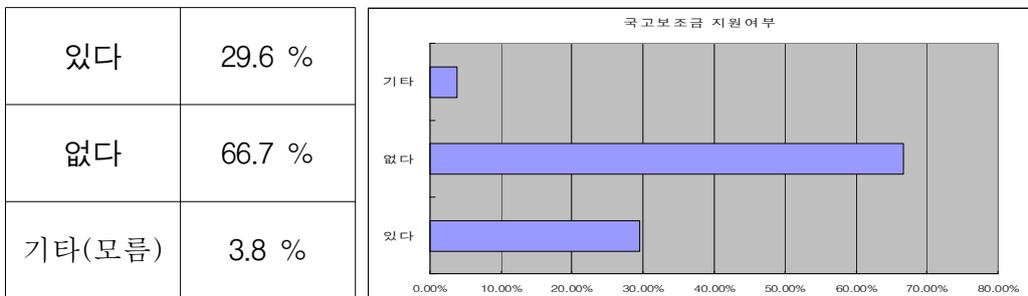


한편 설립형태를 모른다고 응답한 단체도 3.1%였다. 전체 단체 중 정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29.6%로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대다수 시민단체들이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지원예산이 충분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시민단체 수 증가 및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었다.⁴⁵⁾ 이에 대한 정리 및 그래프는 다음의 표 4-4, 4-5와 같다.

〈표 4-4〉 단체의 설립형태 여부 (설문지 2번)



〈표 4-5〉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



다. 설립시기

단체 설립 시기는 대체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

일뿐 나머지는 사단법인), 임의단체는 38.7%로 나타남(행안부,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발간 책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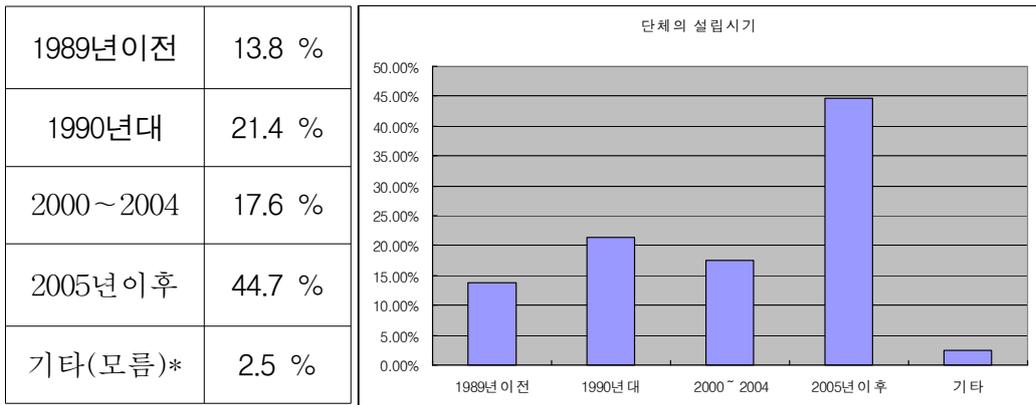
45) 2004년에서 2010년까지 매년 5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은 100% 증액한 100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15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후에는 설립된 숫자가 44.7%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는 1990년대에서 21.4%의 비중을 보여 등록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도의 경우에는 9.4%의 단체가 설립되었고 2005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매년 8~12%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연도별 및 시대별 정리는 다음의 표 4-6, 4-7과 같다.

〈표 4-6〉 단체의 연도별 설립시기 (설문지 3번)



* 모른다고 응답한 것은 정확한 시기를 모르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

〈표 4-7〉 단체의 설립시기(연도별, 좀 더 구체적)

1980년 대이전	1990년대	2000년	2001~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3.8 %	21.4 %	6.3 %	11.3 %	3.1 %	1.9 %	7.5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무응답	
8.2 %	9.4 %	5.0 %	8.2 %	1.3 %	2.5 %	

라. 회원규모

회원규모는 3,000명 이상인 단체가 2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300명 이하의 단체가 27.0%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단체들 간 회원규모의 차이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회원수가 100명 이상 시 법상 단체 등록요건으로 볼 때 전체 회원 수는 대체적으로 매우 많음을 나타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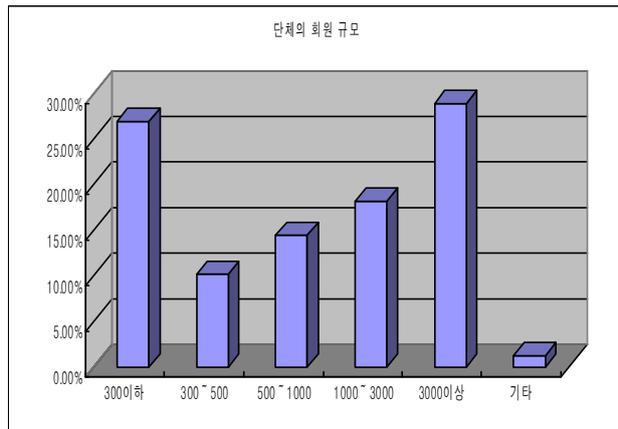


어 단체역량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다만 100명이하인 단체가 6.9%로 나타나 단체 등록이후 기존회원이 증가하는 것보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단체의 등록이 오래된 단체에 대해서는 재확인 조사를 통하여 요건에 부적합한 곳이 있으면 등록말소 등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⁴⁶⁾ 이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표 4-8, 4-9와 같다.

〈표 4-8〉 단체의 회원규모 (설문지 4번)

300명 이하	27.0 %
300~500명	10.1 %
500~1,000명	14.5 %
1,000~3,000명	18.2 %
3,000명 이상	28.9 %
기타(모름)	1.3 %



〈표 4-9〉 단체의 회원규모 (구체적 세분화)

100명 이하	200명 이하	300명 이하	400명 이하	500명 이하
6.9 %	9.4 %	10.7 %	3.1 %	6.9 %
500~1000명	1000~2000명	2000~3000명	3000명 이상	무응답
14.5 %	11.3 %	6.9 %	28.9 %	1.3 %

마. 상근직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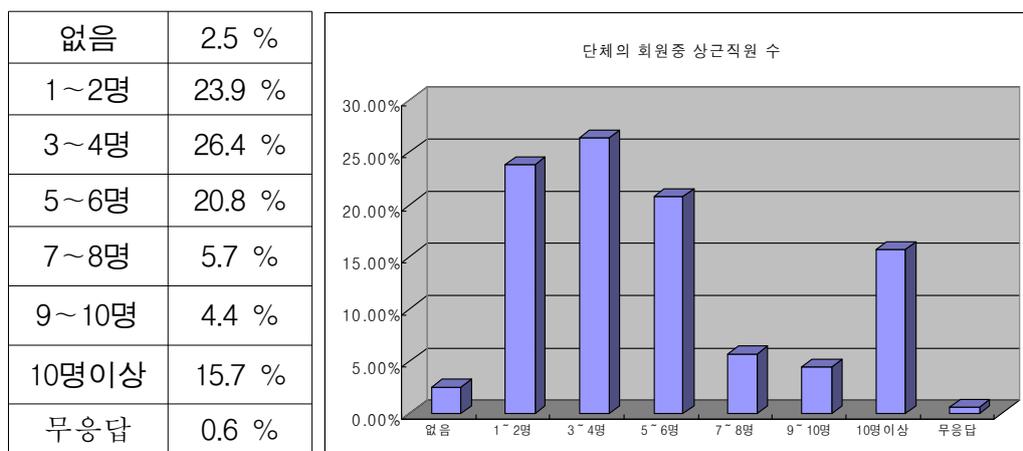
사무실 상근하는 직원 수의 경우에는 3~4명을 두는 단체가 2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명을 두고 있는 단체는 23.9%, 5~6명을 두고 있는 단체가 20.8%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근직원 수가 없이 운영되는 단

4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회원 수가 100명 미만 일 경우에는 등록말소 요건에 해당된다.



체도 2.5%로 나타난 것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회원 전체 규모에 비해 상근하는 직원의 수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대다수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실 임대료 및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근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상근직원수별 현황은 다음의 표 4-10과 같다.

〈표 4-10〉 단체의 회원 중 상근직원 수 (설문지 4-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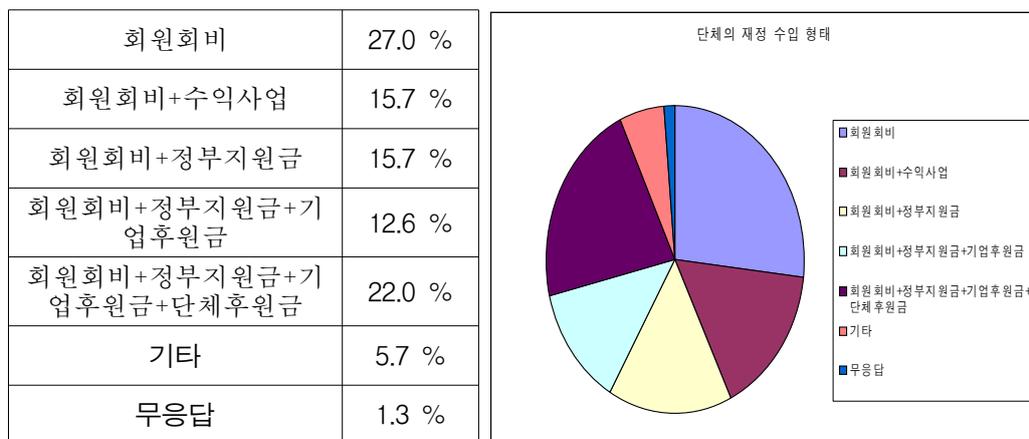
바. 재정 수입 형태

재정수입의 형태를 통해 재정의 자율성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의 42.7%의 단체만이 회원회비와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고, 50.3%의 절반정도 단체들은 정부나 단체, 기업의 후원금을 받아 재정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 〈표 4-5〉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29.6%로 절반도 되지 않은 점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에 대해 알아보면 대체적으로 단체가 설립되는 초기에는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회원 수 모두가 적극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데 동참하는 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또는 활동하는 문제점도 있고 내부적으로 임원간 또는 회원간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탈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수입은 당연히 낮은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표 4-11〉 단체의 재정 수입 형태 (설문지 5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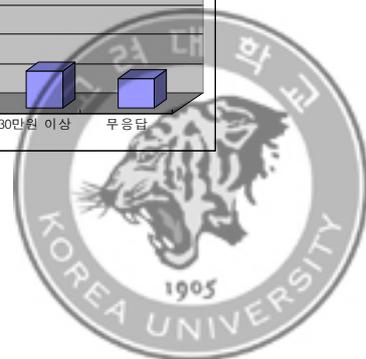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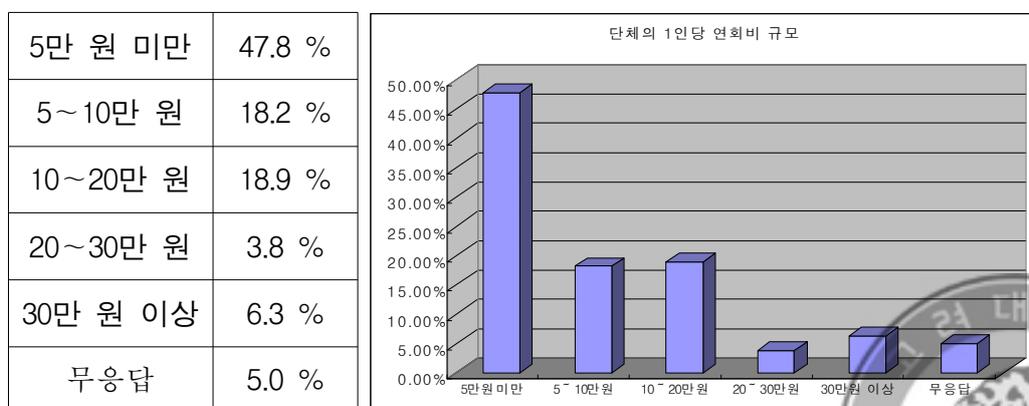


사. 회원의 회비 규모

회원 1인당 연회비 규모는 47.8%의 단체가 5만 원 미만으로 매월 5천 원 정도로 매우 낮다. 10만 원 정도는 18.2%, 20만 원 정도는 19%, 그리고 그 이상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단체들이 회원의 회비만으로 단체를 운영하기엔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단체의 자구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현상은 〈표 4-8〉에서 나타난 것처럼 회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1인당 연회비 규모는 표 4-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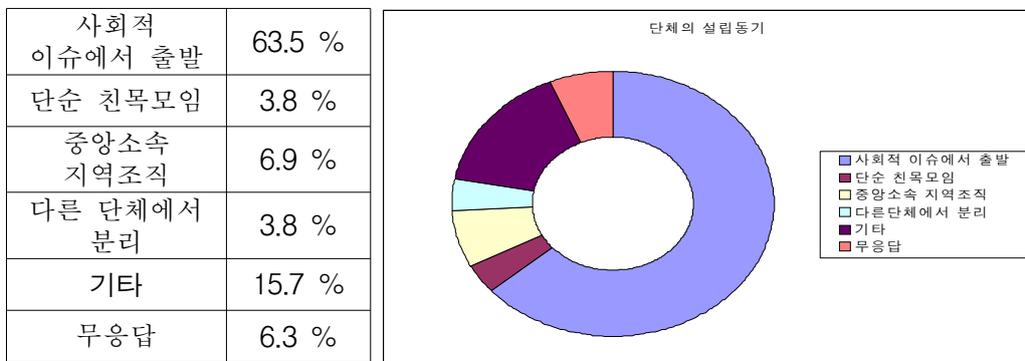
〈표 4-12〉 단체의 1인당 연회비 규모 (설문지 5-1번)



아. 설립동기

단체의 설립 동기는 사회적 이슈에서 출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5%를 차지함으로써 전체의 절반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T기술과 SNS의 발달로 점점 사회적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설립한 동기별 비율에 대한 현황과 비교는 다음의 표 4-13과 원형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4-13〉 단체의 설립동기 (설문지 6번)



자. 보조금 신청 및 수령 경험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단체가 24.5%로 6회 이상을 받은 단체와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보조금 수령단체 중 6회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가 3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단체는 5.0%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선정이 되지 않은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볼 때 상당수의 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1,131개 단체에서 신청한 결과 666개가 선정됨에 따라 평균 경쟁률은 1.7:1 정도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정부보조금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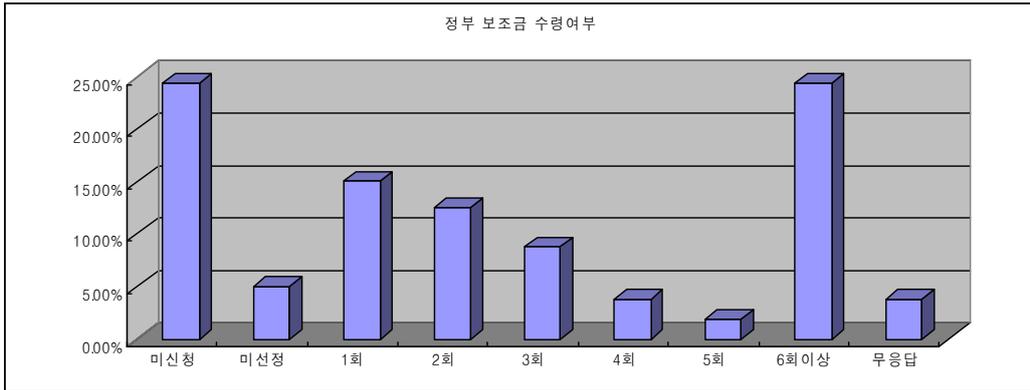
47) 3년간 신청 및 선정 결과는 2010년 293→153, 2011년 338→220, 2012년 450→293



여부에 대한 현황은 다음의 표 4-14와 같다.

〈표 4-14〉 정부 보조금 수령여부 (설문지 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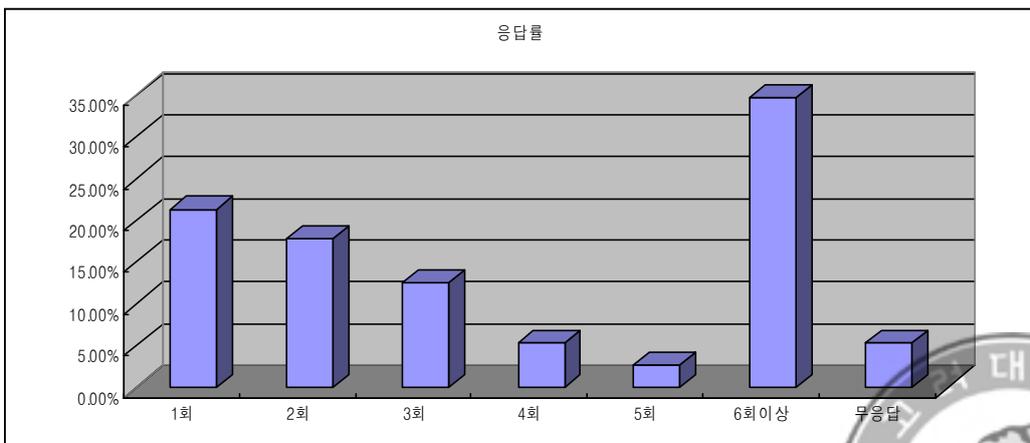
미신청	미선정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이상	무응답
24.5 %	5.0 %	15.1 %	12.6 %	8.8 %	3.8 %	1.9 %	24.5%	3.8 %



아울러 수령 경험이 있는 단체 위주로 볼 때는 표 4-15와 같다.

〈표 4-15〉 정부 보조금 수령 횟수(경험이 있는 단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이상	무응답
21.4 %	17.9 %	12.5 %	5.4 %	2.7 %	34.8 %	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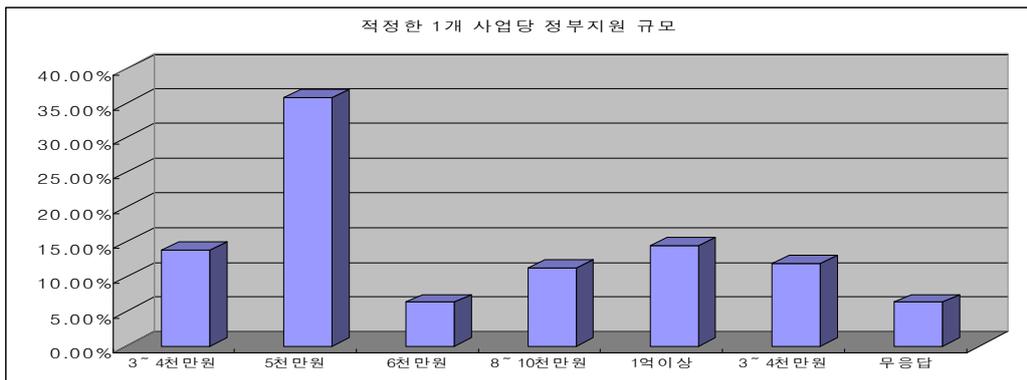
2.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가. 사업 당 정부지원 규모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1개 사업 당 적정한 지원규모는 5천만 원 이라고 대답이 35.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은 1억 원 이상 13.8%, 3~4천만원 11.9%, 8~10천만 원이 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6과 같다.

〈표 4-16〉 적정한 1개 사업당 정부지원 규모 (설문지 8번)

3~4천만 원	5천만원	6천만원	8~10천만원	1억이상	3~4천만원	무응답
13.8 %	35.8%	6.3%	11.3 %	14.5 %	11.9%	6.3 %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단체의 대부분이 5천만 원 이상의 지원규모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결과로 볼 때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규모에 맞는 지원규모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매년 평균 지원규모는 정부 보조금 예산액과 신청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나. 자부담 정도

지원 받는 단체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 정도는 응답한 전체 단체 중

48) 그 동안 정부(행안부)의 평균지원액은 3~4천만 원 이었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평균 5천만 원을 지원(총 예산은 150억 원, 293개 사업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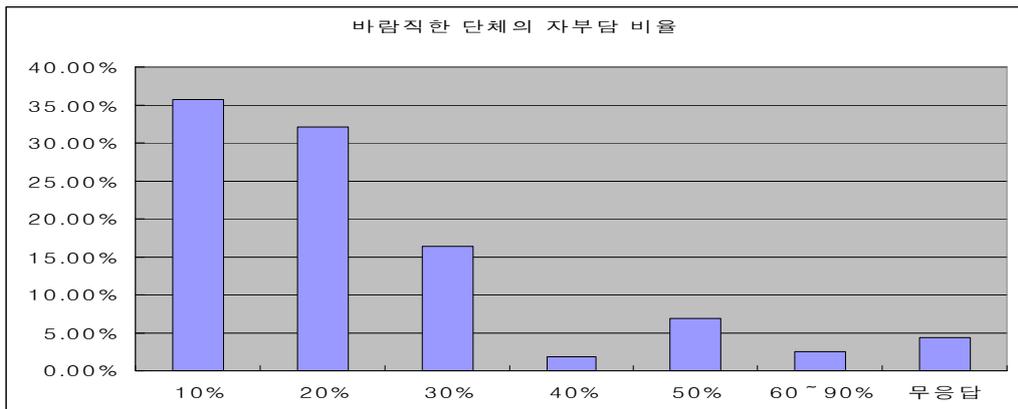


67.9%가 자부담 비율이 20% 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재정수입 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단체가 많은 상황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다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단체들의 우려가 설문결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단체의 자부담을 완화해 주는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⁴⁹⁾

다만 정부는 가급적 부담률을 높거나 적정비율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에서는 낮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 자부담률 제로화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17〉 바람직한 단체의 자부담 비율 (설문지 9번)

자부담률	10%	20%	30%	40%	50%	60~90%	무응답
응답(비율)	35.8 %	32.1%	16.4%	1.9 %	6.9 %	2.5%	4.4 %



49) 1999년부터 지금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자부담률이 높을수록 사업선정에 유리하도록 추진되어 온 가운데 최근 3년간(2008~2010)의 자부담률은 계획상 평균 50%정도였으나 실제 집행결과에서는 30% 정도로 실질적 효과가 다소 미흡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일부단체에서 자부담을 완화하거나 제로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2010년도 감사원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명문화를 강조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지원단체의 자부담율을 늘려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와 외부평가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자부담이 필요하므로 자부담을 배제하는 것은 곤란하고 어떤 형태이든 부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사업에 관한 참여의식과 목적의식 고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2011년).



다. 지원사업 결정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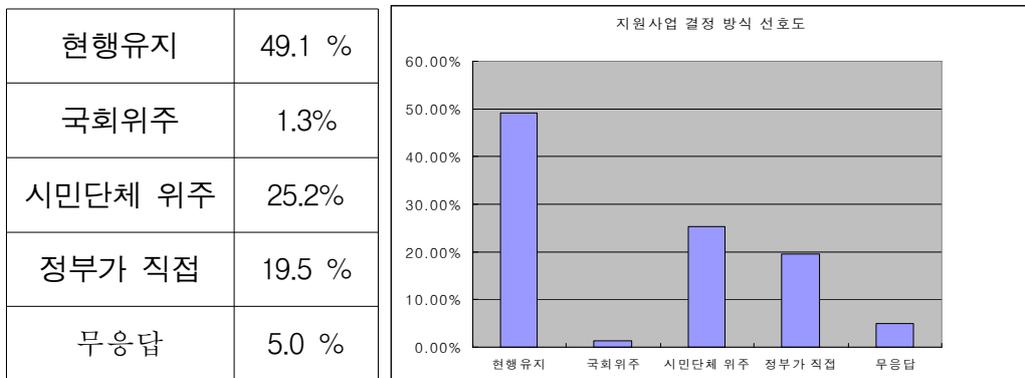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 결정은 행정안전부가 직접하지 않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국회추천 3인, 시민단체 추천 12인)에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9.1%가 현행유지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시민단체 위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5.2%, 정부가 직접해야 한다 19.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사업 결정을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위주로 구성 운영 해야 한다는 1.3%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무응답은 5.0%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현행을 유지하되 시민단체의 참여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중립적이지 아니한 위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 추천비율을 조정하거나 추천방식을 달리 할 수도 있지만 공정한 심사과정의 중요하다.⁵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8과 같다.

〈표 4-18〉 지원사업 결정 방식 선호도 (설문지 10번)



라. 재정 자립 필요도

50) 행정안전부에서는 제6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립적인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정부 권장의 여성비율 40%와 전문분야 경력 등을 반영하여 2011.7.5. 새로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선정에 있어 공정성에 중점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



지원단체의 재정 자립 필요에 대한 설문 7개 분야에서 긍정적인 순으로 보면 정부의 국고보조금 4.34점, 사무실 설비임대 4.16점, 자원봉사 확충 4.05점, 민간기업체지원금 4.03점, 세금감면 3.95점, 개인의 기부금 3.90점, 우편요금 감면 3.60점, 직원파견 2.92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서 필요이상 74.8%이고 보통과 필요하다고 보지 않음이 10.7%로 나타남에 따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체 지원금은 필요이상 79.2%이고 보통은 10.1%, 필요성 부정 6.9%가 나타남에 따라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필요이상 89.3%이고 보통은 3.8%, 필요성 부정 3.1%를 보인 가운데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4.34점으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요금 감면은 필요이상 56.6%이고, 현실성이 적다가 14.5%이며 보통은 21.4%인 가운데 무응답 7.5%로 나타남에 따라 필요하지만 그다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감면은 필요이상 76.1%이며 보통은 10.7%이고 필요성 부정은 7.5%가 나타남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파견(공공기관 및 기업으로부터)은 필요이상 34.6%이고 보통은 21.4%, 필요성 부정이 39.0%를 보인 가운데 평균이 2.92점으로 그 다지 필요하지 않고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설비 임대는 필요이상 79.9%이고 보통은 10.7%, 필요성 부정 5.7%를 보인 가운데 평균 4.16점으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확충은 필요이상 78.0%이고 보통 15.1%, 필요성 부정 1.9%를 보인 가운데 평균 4.05점으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무응답 비율은 3.8%에서 7.5%를 보였고 가장 높은 7.5%가 우편요금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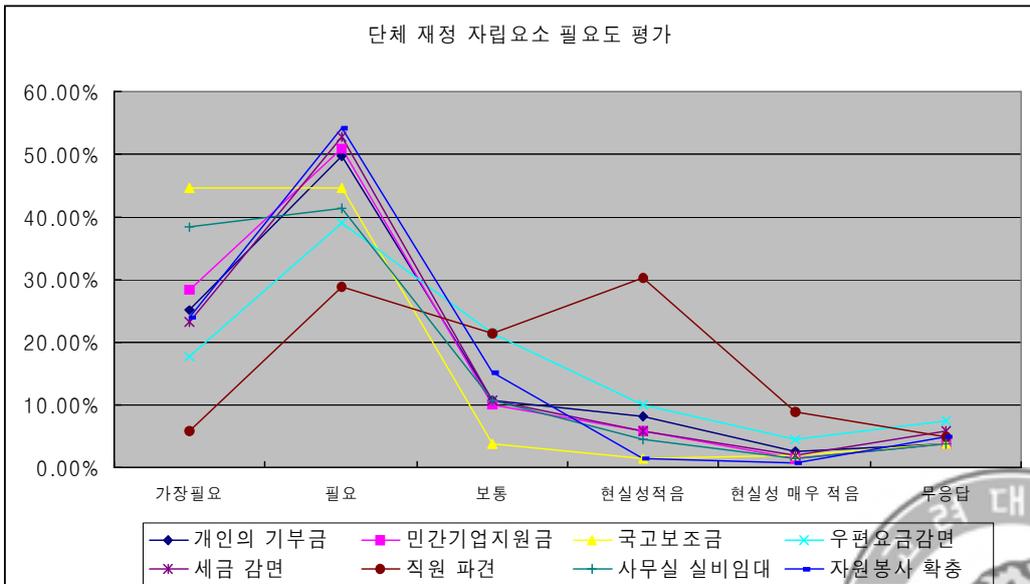
따라서 단체의 재정자립 요소에 대한 필요도는 전반적으로 직원 파견을 제외하고는 단체에서 자구력도 필요하고 정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재정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표 4-19와 그래프로 비교하였다.



〈표 4-19〉 단체 재정 자립요소 필요도 평가 (설문지 13번)

문항	① 가장 필요 (5점)	② 필요 (4점)	①+②	③ 보통 (3점)	④ 현실성 적음 (2점)	⑤ 현실성 매우 적음 (1점)	④+⑤	무응답	평균
개인의 기부금	25.2 %	49.7%	74.8 %	10.7%	8.2 %	2.5 %	10.7 %	3.8%	3.90
민간기업체지원금	28.3 %	50.9%	79.2 %	10.1%	5.7 %	1.3 %	6.9%	3.8%	4.03
정부의 국고보조금	44.7 %	44.7%	89.3 %	3.8%	1.3 %	1.9 %	3.1%	3.8%	4.34
우편요금감면	17.6 %	39.0%	56.6 %	21.4%	10.1 %	4.4 %	14.5 %	7.5%	3.60
세금 감면	23.3 %	52.8%	76.1 %	10.7%	5.7 %	1.9 %	7.5%	5.7%	3.95
직원 파견	5.7 %	28.9%	34.6 %	21.4%	30.2 %	8.8 %	39.0 %	5.0%	2.92
사무실 실비입대	38.4 %	41.5%	79.9 %	10.7%	4.4 %	1.3 %	5.7%	3.8%	4.16
자원봉사 확충	23.9 %	54.1%	78.0 %	15.1%	1.3 %	0.6 %	1.9%	5.0%	4.05

* 필요하다고 보는 정도는 평균 3.5점이상이 되어야 함(척도는 5점 범위)



마. 재정지원에 대한 단체 역량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6개 분야별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단체의 공신력이 가장 높은 4.21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 4.06점, 사업수행에 공공적 책임성 향상 4.01점, 자원봉사자 확대 기여 3.80순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 재원에의 의존도 증가와 자체적으로 자립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높다고 보지 않게 나타났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 재원에의 의존도 증가에 대해서 영향력 있음 42.8%이고 보통 32.7%, 영향력 없다 13.8%, 무응답 10.7%인 가운데 평균 3.35점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자립하게 되는 계기는 영향력 이상이 37.7%이고 보통 35.2%, 영향력 없다 15.1%, 무응답 11.9%를 보인 가운데 평균 3.31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체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행에 공공적 책임성 향상은 영향력 이상이 69.8%이고 보통 17%, 영향력 없다 1.9%로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는 영향력 이상이 73.6%이고 보통 11.3%, 영향력 없다 1.9%, 무응답 13.2%로 나타난 가운데 평균 4.06점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확대 기여는 영향력 이상이 58.5%이고 보통 23.3%, 영향력 없다 5.0%, 무응답 13.2%로 나타난 가운데 평균 3.80점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공신력 증대는 영향력 이상이 74.8%이고 보통 11.3%, 영향력 없다 1.3%, 무응답 12.6%로 나타난 가운데 평균 4.21점으로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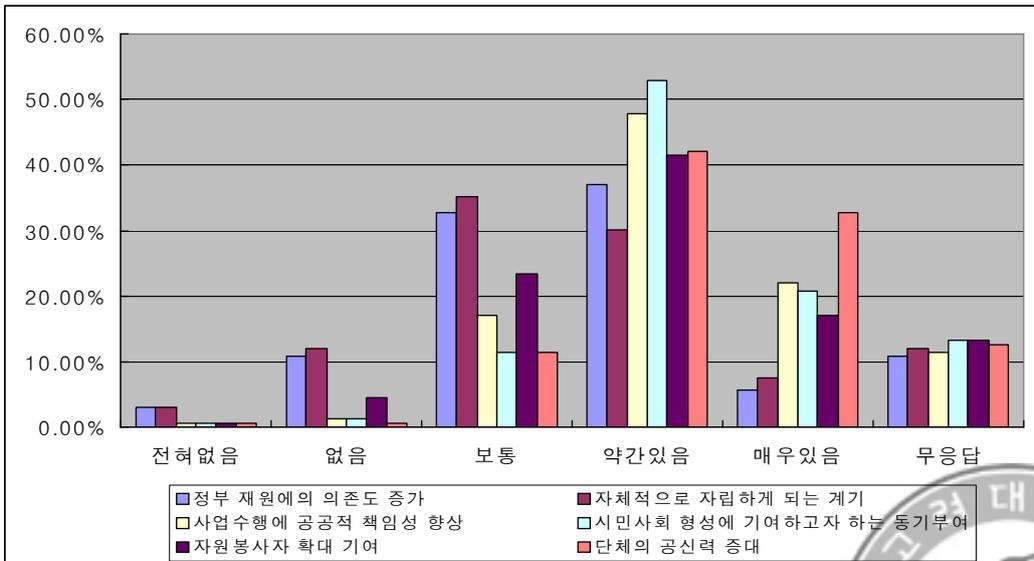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비영리단체들에게 단체의 공신력 증대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재원의 의존도 증가라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의 조정, 매칭 펀드 시스템 등 단체의 재정적 부담에 비례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20과 같다.



〈표 4-20〉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단체 영향력 평가 (설문지 14번)

문항	①영향력 전혀없음 (1점)	②영향력 없음 (2점)	①+②	③ 보통 (3점)	④ 많은 영향력 (4점)	⑤매우 많은 영향력 (5점)	④+⑤	무응답	평균
정부 재원에 의존도 증가	3.1 %	10.7%	13.8%	32.7%	37.1%	5.7%	42.8%	10.7%	3.35
자체적으로 자립하게 되는 계기	3.1%	11.9	15.1%	35.2%	30.2%	7.5%	37.7%	11.9%	3.31
사업수행에 공공적 책임성 향상	0.6%	1.3%	1.9%	17.0%	47.8%	22.0%	69.8%	11.3%	4.01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0.6%	1.3%	1.9%	11.3%	52.8%	20.8%	73.6%	13.2%	4.06
자원봉사자 확대 기여	0.6%	4.4%	5.0%	23.3%	41.5%	17.0%	58.5%	13.2%	3.80
단체 의력 증대	0.6%	0.6%	1.3%	11.3%	42.1%	32.7%	74.8%	12.6%	4.21

*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정도는 평균 3.5점이상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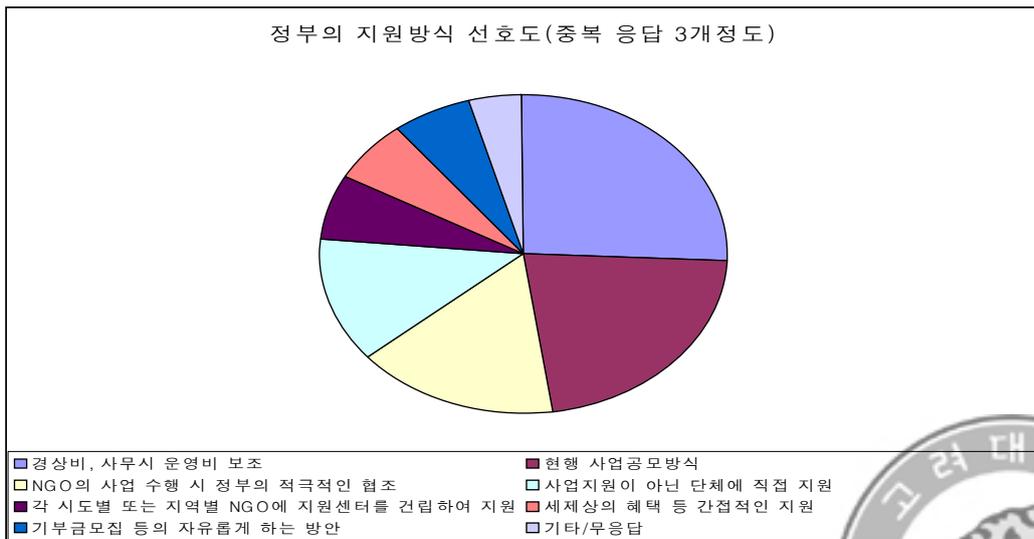
바. 정부지원 방식 선호도

정부의 단체 지원 방법 중 선호도(3가지)에 대해서는 경상비, 사무실 운영비 보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67.3%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업공모 방식의 경우는 56.6%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NGO의 사업 수행 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는 42.8%가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외에는 사업지원이 아닌 단체에 직접 지원은 33.3%, 각 시도별 또는 지역별 NGO에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원은 17.0%, 세제상의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은 17.0%, 기부금모집 등의 자유롭게 하는 방안은 16.4%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상비와 사무실 운영비 보조의 경우 그 수요가 많은 만큼 향후 정부에서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방식 개선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표 4-21〉 정부의 지원방식 선호도(중복 응답 3개정도) (설문지 16번)

경상비, 사무실 운영비 보조	현행 사업공모 방식	NGO의 사업 수행 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사업지원이 아닌 단체에 직접 지원	각 시도별 또는 지역별 NGO에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원	세제상의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	기부금모집 등의 자유롭게 하는 방안	기타/무응답
67.3 %	56.6%	42.8%	33.3%	17.0%	17.0%	16.4%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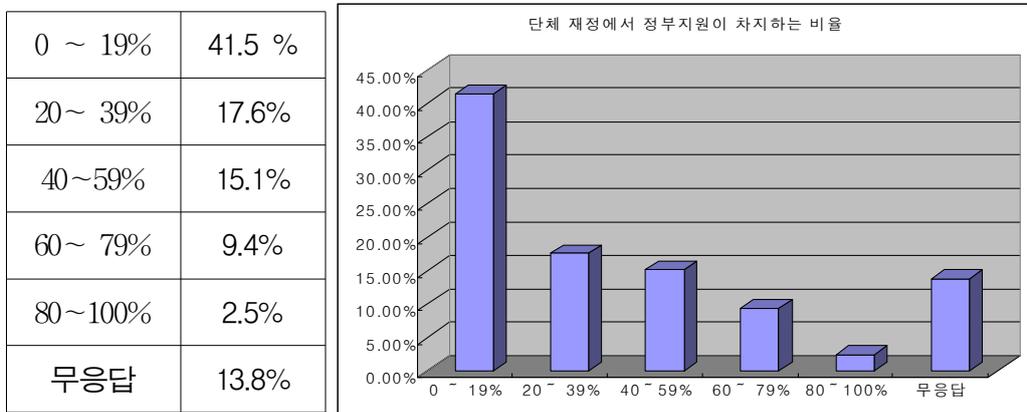
사. 단체 재정 중 보조금 지원 비율

정부 지원이 단체 재정의 40% 미만인 단체가 전체의 59.1%로 과반을 넘어서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재정의 80% 이상인 단체도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비교는 표 4-22와 같다.

이는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제약이 많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체의 재원을 다원화하고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4-22〉 단체 재정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설문지 1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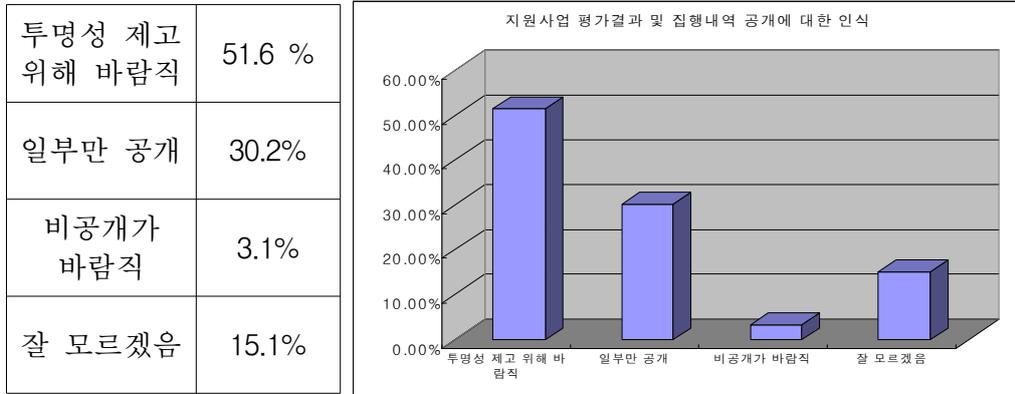
아.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인식

지원사업의 평가결과 및 집행내역 공개에 대해 과반이 넘는 51.6%의 단체가 전면공개에 찬성하는 답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만 공개 30.2%, 비공개 3.1%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15.1%였다.

따라서 전면 공개를 통해 투명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 상호간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어 정책의 효과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공개할 있는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이 필요하고 지원 받는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집행한 사실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설문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23과 같다.



〈표 4-23〉 지원사업 평가결과 및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인식 (설문지 21번)



3. 지원결과 만족도 평가

가. 정부지원방식 만족도 여부

지원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의 평균⁵¹⁾은 3.18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고 보기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보통이라고 답한 단체가 52.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는 분야의 한정과 지원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많았고, 예산의 유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금 집행 후 까다로운 서류 작성에 대한 능력 한계가 있다”. “골고루 지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사용 범위와 집행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공익활동 및 성장에 제약이 많다”. “지정 위탁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비영리 단체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상비 지원이 부족하다”. “선정기준과 기회균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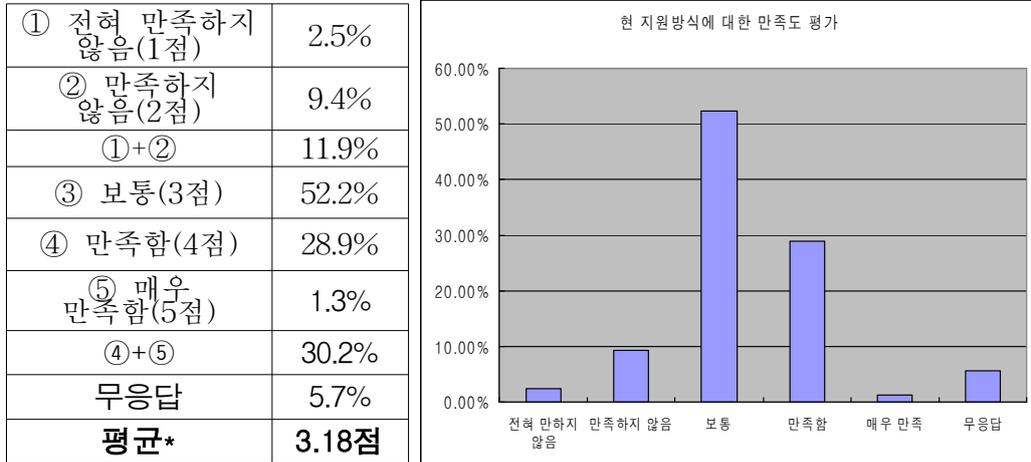
따라서 이를 고려해 향후 지원방식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불만족 요인의 해결이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이들 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1) 평균은 5점 척도에서 중간값이 3점, 최저값이 1점으로 정한 가운데 한국 갤럽 Norm에 따르면 3.5점이 넘으면 Positive하고 2.5점 이하는 Negative하다고 보았다.



고 본다. 현 지원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24와 같다.

〈표 4-24〉 현 지원방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 (설문지 1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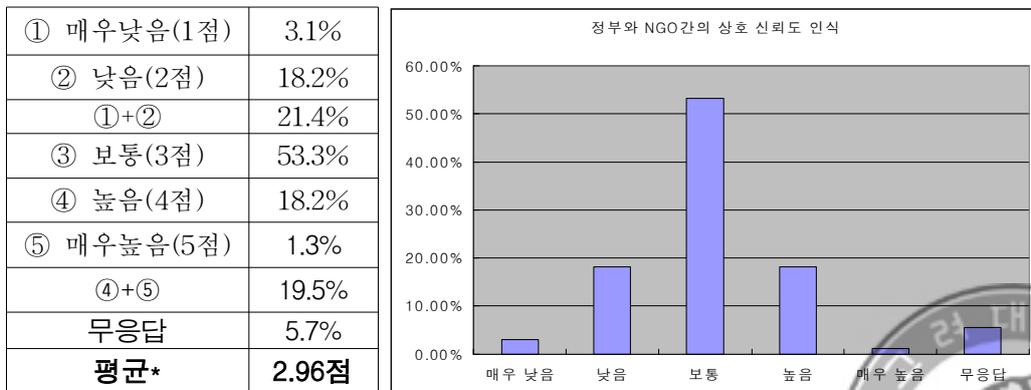


* 만족하다고 보는 정도는 평균 3.5점이상 되어야 함

나. 정부와 NGO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상호신뢰도에 대해서 낮다고 응답이 21.4%, 보통 53.3%, 신뢰도가 높다는 19.5%가 나타난 가운데 평균척도는 2.96점으로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정부정책의 효과성 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4-25〉 정부와 NGO간의 상호 신뢰도 인식 (설문지 12번)



* 높음정도는 평균 3.5점이상 되어야 함



다. 사업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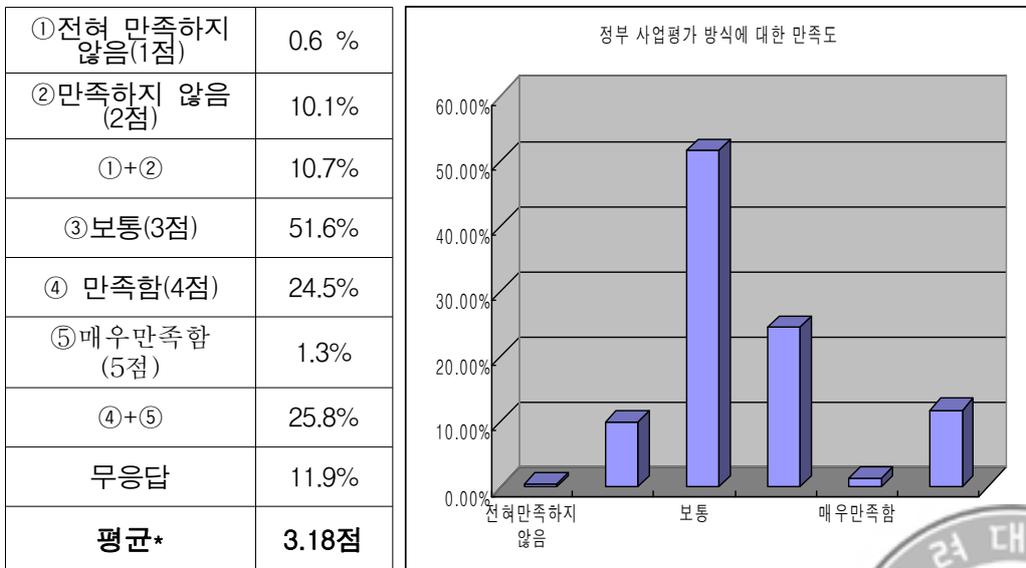
지원사업의 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평가 방식에 대한 지원 단체들의 만족 한다는 비율은 25.8%이고 만족하지 않는다 10.7%이며, 그저그러하다는 보통이 51.6%로 나타난 가운데 평균척도는 3.18점으로 만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리하면 표 4-26과 같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의 사업평가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부정적인 대답을 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즉, 불만족의 이유로는 불필요한 준비 서류가 많다. 평가 지표의 지나친 계량화와 수치화, 기회의 불평등, 1년 단위의 근시안적 평가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의 개발과 중기 단위 평가의 도입, 기회의 평등한 제공을 위한 절차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상의 제약과 정부 업무 처리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단체들의 양해를 구함과 동시에 꾸준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

〈표 4-26〉 정부 사업평가 방식에 대한 만족도 여부 (설문지 15번)



* 만족하다고 보는 정도는 평균 3.5점이상되어야 함



라. 의사소통 개선 필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 업무담당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이 32.1%로 부정적인 답변의 14.5%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보통이라고 답변은 40.4%인 가운데 평균적도는 3.22점으로 의사소통이 대체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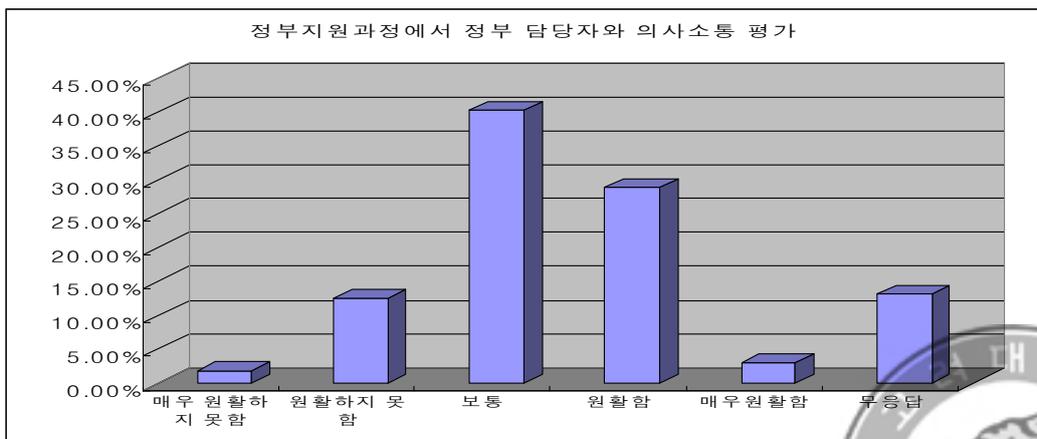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낀 단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편함을 느낀 단체들을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행정인력이 적기 때문에 많은 지원 단체들을 직접적으로 민원처리 등 상대할 수 있는 쌍방 의사 소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수시 정보 및 평소 자주 질문하는 사항 등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게재 하거나 회계교육 등 워크숍을 통해 의사소통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4-27〉 정부지원 과정에서 정부 담당자와 의사소통 평가(설문지 18번)

①매우 원활하 지못함 (1점)	②원활 하지 못함 (2점)	①+②	③ 보통 (3점)	④ 원활함 (4점)	⑤매우 원활함 (5점)	④+⑤	무응답	평균
1.9 %	12.6%	14.5%	40.3%	28.9%	3.1%	32.1%	13.2%	3.22

* 원활하다고 보는 정도는 평균 3.5점이상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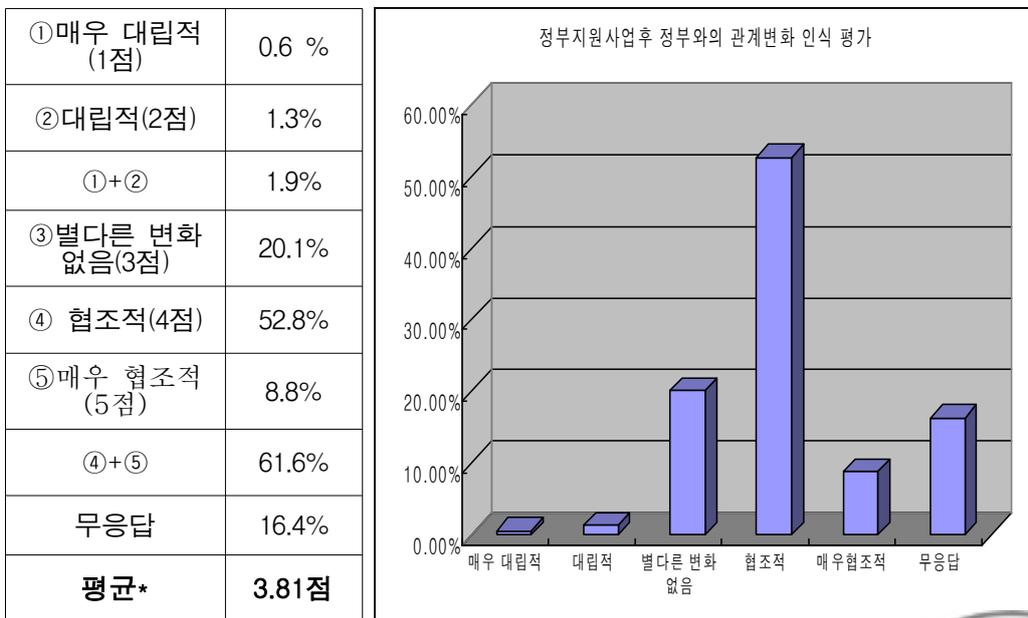
마. 지원 후 정부와 관계변화 여부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후 정부와의 관계변화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협조적 또는 매우 협조적이라고 답한 단체가 전체의 61.6%이고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20.1%, 협조적이지 아니다가 1.9%인 가운데 평균척도가 3.81점으로 대체적으로 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 개선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명목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들을 포섭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공익의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협조적인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지원 후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답변한 단체가 1.9%로 낮게 나타났지만 무응답이 16.4%인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28과 같다.

〈표 4-28〉 정부지원사업 후 정부와의 관계변화 인식 평가(설문지 19번)



* 협조적이라고 보는 정도는 평균 3.5점 이상되어야 함



바. 지원사업의 사회발전 공헌도 여부

정부의 지원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나라 시민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지 6개 분야에 대한 질문 응답결과, 시민사회 발전에 장기적 파급효과 3.81점, 지원금액 대비 사업성과에 기여도 3.76점, 자원봉사자 발굴 확대 3.69,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의 충실성 3.67점, 시민들의 참여 활발해짐 3.61점,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 기여 3.49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사회발전에 장기적 파급효과가 가장 높으면서 평균척도 중간을 상회하여 공헌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분야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우선 복지, 문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및 서비스 제공의 충실성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이 52.28%이고 보통 29.6%, 공헌도가 없다는 3.1%인 가운데 평균척도가 3.67점으로 공헌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갈등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도는 긍정적 답변이 45.3%이고 보통 33.3%, 공헌도가 없다 8.2%인 가운데 평균척도는 3.49점으로 공헌도가 있지만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짐의 공헌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45.3%이고 보통 38.4%, 공헌도가 없다 1.9%인 가운데 평균척도는 3.61점으로 공헌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발전(질서의식함양 등)에 장기적 파급효과는 긍정적 답변이 56.0%이고, 보통 28.9%, 공헌도가 없다 1.3%인 가운데 평균척도는 3.81점으로 공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발굴 확대는 긍정적 답변이 50.9%이고, 보통 32.1%, 공헌도가 없다 2.5%이며 평균척도는 3.69점으로 공헌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²⁾

지원금액 대비 사업성과의 기여도는 긍정적 답변이 57.2%이고 보통 25.2%, 공헌도가 없다 3.1%인 가운데 평균척도는 3.76점으로 공헌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적으로 무응답은 최저 13.2%이고 최고 15.1%로 평균정도가 14%범위에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4-29와 같다.

52) 재정지원에 대한 단체 역량도 설문과 유사한 가운데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자 확대 기여는 영향력이 있다 58.5%, 보통이다 23.3%, 영향력이 없다 5.0%, 무응답 13.2%로 나타난 가운데 평균 3.80점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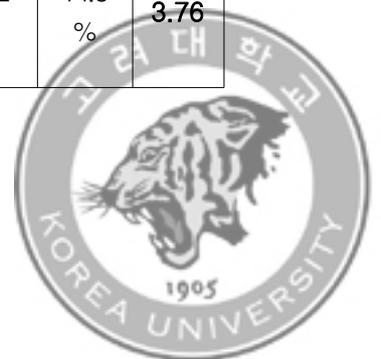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시민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정도에 대하여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 대해 그 정도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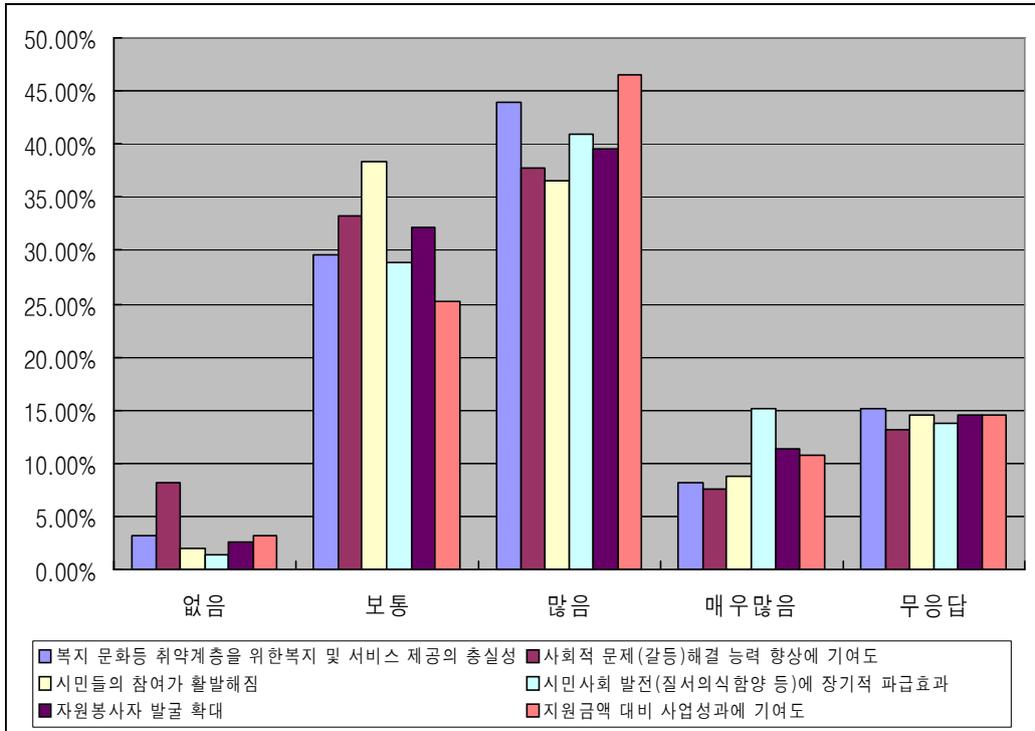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 해결 능력 향상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 사회 갈등 해결능력 향상에 대한 정책의 실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4-29〉 정부지원사업의 시민사회 발전 공헌도 평가(설문지 20번)

문항	①전혀 없음 (1점)	② 없음 (2점)	①+②	③ 보통 (3점)	④ 많음 (4점)	⑤매우 많음 (5점)	④+⑤	무응 답	평균
복지 등 계층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의 충실성	0 %	3.1%	3.1 %	29.6 %	44.0 %	8.2%	52.2 %	15.1 %	3.67
사회적 문제(갈등 등)해결 능력향 상에 기 여도	1.9%	6.3	8.2 %	33.3 %	37.7 %	7.5%	45.3 %	13.2 %	3.49
시민들 의 참여 가 활발 해짐	0%	1.9%	1.9 %	38.4 %	36.5 %	8.8%	45.3 %	14.5 %	3.61
시민사 회 발전 (질서 의식 함양 등)에 장기적 파급 효과	0%	1.3%	1.3 %	28.9 %	40.9 %	15.1 %	56.0 %	13.8 %	3.81
자원 봉사자 발굴 확대	0.6%	1.9%	2.5 %	32.1 %	39.6 %	11.3 %	50.9 %	14.5 %	3.69
지원 금액 대비 사업성 과에 기여 도	0%	3.1%	3.1 %	25.2 %	46.5 %	10.7 %	57.2 %	14.5 %	3.76

* 많다(높다)고 보는 정도는 평균 3.5점 이상되어야 함





사. 성과 평가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정도에 대해 설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시민사회 발전에 장기적 파급효과가 5점 척도에서 3.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기여도 3.94점, 사업 후 성과물의 활용 가능성 3.85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짐 3.80점, 서비스 제공의 충실성 3.77점 순으로 모두 성과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³⁾

5개 분야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서비스 제공의 충실성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이 54.7%이고 보통이다 24.5%, 성과가 없다 1.3%를 보인 가운데 평균적

53) '정부 지원사업의 시민사회 발전 공헌도'(표4 -29)에서의 응답결과, 시민사회 발전에 장기적 파급효과 3.81점, 복지서비스 제공의 충실성 3.67점, 시민들의 참여 활발해짐 3.61점,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 기여 3.49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하였다.



도가 3.77점으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대한 기여도는 긍정적 답변이 62.3%이고 보통이다 18.2%, 부정적 1.3%인 가운데 평균척도가 3.94점으로 성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⁵⁵⁾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짐은 긍정적 답변이 55.3%이고 보통 23.9%, 부정적 1.3%인 가운데 평균척도는 3.80점으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⁶⁾

시민사회 발전에 장기적 파급효과는 긍정적 답변이 61.0%이고 보통 18.9%, 부정적 1.9%로 나타난 가운데 평균척도가 3.95점으로 성과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사업 후 성과물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59.1%이고 보통 20.8%, 부정적 1.9%를 보인 가운데 평균척도가 3.85점으로 성과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체적인 성과정도에 대해서 무응답은 최저 18.2%에서 최고 19.5%가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30과 같다.

따라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4) 앞의 표 4-29에서의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서비스 제공의 충실성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 52.28%, 보통 29.6%, 공헌도가 없다 3.1%, 평균척도는 3.67점으로 공헌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55) 앞의 표 4-29에서의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긍정적 답변이 45.3%이고 보통 33.3%, 공헌도가 없다 8.2%인 가운데 평균척도는 3.49점으로 공헌도가 있지만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매년 지원범위의 편차에 따른 보통에 대한 비율에서 오차가 나타났을뿐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56) 앞의 표 4-29에서의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긍정적 답변이 45.3%이고 보통 38.4%, 공헌도가 없다 1.9%, 평균척도는 3.61점으로 공헌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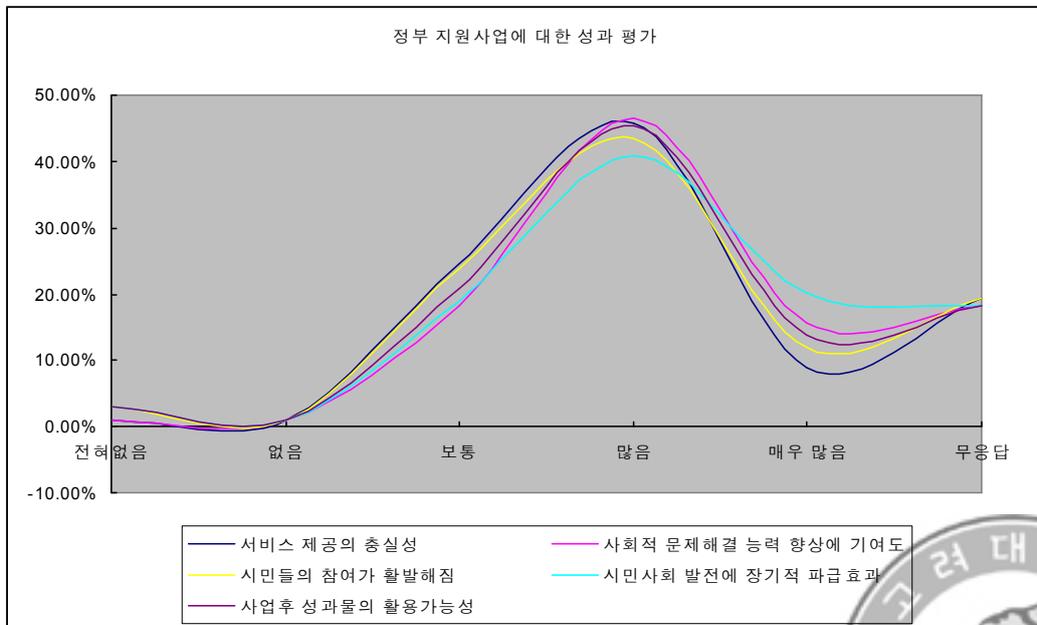
57) 앞의 표 4-29에서의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긍정적 답변이 56.0%이고, 보통 28.9%, 공헌도가 없다 1.3%, 평균척도는 3.81점으로 공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표 4-30〉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설문지 22번)

문항	①전혀 없음 (1점)	②없 음(2 점)	①+ ②	③보통 (3점)	④많 음 (4점)	⑤매우 많 음(5 점)	④+⑤	무응 답	평균
서비스 제공의 충실성	0.6%	0.6%	1.3%	24.5%	45.9%	8.8%	54.7%	19.5%	3.77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도	0%	1.3%	1.3%	18.2%	46.5%	15.7%	62.3%	18.2%	3.94
시민들의 참여활발해짐	1.3%	0%	1.3%	23.9%	43.4%	11.9%	55.3%	19.5%	3.80
시민사회 발전에 장기적 파급효과	1.3%	0.6%	1.9%	18.9%	40.9%	20.1%	61.0%	18.2%	3.95
사업 후 성과물의 활용가능성	1.3%	0.6%	1.9%	20.8%	45.3%	13.8%	59.1%	18.2%	3.85

* 많다(높다)고 보는 정도는 평균 3.5점이상되어야 함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과 합의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운영과정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면서 지원현황 그리고 주변에서의 지적사항을 동시에 알아본 가운데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개선하거나 고려할 점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과 연구범위를 제시하였다. 제2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 사항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와 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배경과 지원개요를 밝히고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제도를 알아보고, 행안부 주관으로 지원한 시행 초기부터 2012년까지 사업선정 결과를 시기 및 연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2005년도 이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외부에서의 지적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함께 살펴보았다.

제4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설문지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에게 배포한 후 회수된 응답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제3장에서 외부 지적사항들과 제4장에서의 설문결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방안을 제언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취지는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강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서비스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단체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등은 민간단체의 활동영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단체들은 정부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에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활동 영역이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특히 사회복지와 봉사활동을 비롯한 공익활동을 주영역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증가하면서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 형성은 앞으로 매우 필요하므로 함



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단체들의 효율성의 원천인 자발성과 유연성, 민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정기적 또는 수시 만남을 통한 논의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상반적이거나 대립적인 관계에서는 공공재의 효율적인 생산, 분배의 지속성,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공익활동 사업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일부지원은 첫째, 직접지원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원의 목적과 절차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규정된 법적 근거를 갖추어 추진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2010년 감사원 결과에서도 다른 부처에서의 지원에 있어 선정과정 등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행안부는 그러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둘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과정을 통한 신청과 외부 인사들로 위촉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사업선정을 추진하고, 선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차기 사업선정 시 평가결과의 반영 등 일련의 운영절차가 공개적이며 공정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셋째, 제도적 강점을 바탕으로 등록단체 수가 점차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점과 지원사업이 공익서비스 창출과 시민사회의 발전의 기반 마련 등 많은 기여를 해 온 점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몇 가지들이 개선되거나 보완하여 운영해 나간다면 국제무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경쟁력 있고 질적인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 있어 설문결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먼저, 정부(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이다.

1.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1개 사업 당 적정한 지원규모는 5천만 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1억 원 이상, 3~4천 만원, 8~10천만 원 순이었다.
2.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자부담에 대한 부담률은 2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67.9%가 응답한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9.1%가 현행유지를 선호하였다.



4. 정부의 단체 지원 방법 중 선호도(다수)에 대해서는 경상비, 사무실 운영비 보조(67.3%), 현행 사업공모방식(56.6%), NGO의 사업 수행 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42.8%), 사업지원이 아닌 단체에 직접 지원(33.3%), 각 시도별 또는 지역별 NGO에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원(17.0%), 세제상의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17.0%), 기부금모집 등의 자유롭게 하는 방안(16.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상비와 사무실 운영비 보조의 경우 그 수요가 많은 만큼 향후 정부에서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방식 개선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볼 수 있다.

5. 정부 지원이 단체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인 단체가 전체의 59.1%로 과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원사업의 평가결과 및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는 과반이 넘는 51.6%가 전면 공개에 찬성하였고, 일부만 공개 30.2%, 비공개 3.1% 순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은 만족도에 대한 것으로 평균점수가 5점 척도에서 중간값이 3점, 최저값이 1점으로 정한 가운데 한국 갤럽 Norm에 따르면 3.5점이 넘으면 Positive하고 2.5점 이하는 Negative하다고 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원단체의 재정 자립 필요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4.34점, 사무실 실비임대 4.16점, 자원봉사 확충 4.05점, 민간기업체 지원금 4.03점, 세금감면 3.95점, 개인의 기부금 3.90점, 우편요금 감면 3.60점, 직원파견 2.92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체의 재정자립 요소에 대한 필요도는 전반적으로 직원 파견을 제외하고는 단체에서의 자구력도 필요하고 정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재정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2.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단체의 공신력이 가장 높은 4.21점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 4.06점, 사업수행에 공공적 책임성 향상 4.01점, 자원봉사자 확대 기여 3.80점 순 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지원단체의 공신력 증대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정부의 지원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의 평균은 3.18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고 보기엔 다소 낮았다. 이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는 지원분야의 한정과 지원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많았고, 예산 집행의 경직성이 있어 유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주요 불만족 요인이었다.



4.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상호간 신뢰도에 대해서는 평균척도 2.96점으로 보통점수보다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원사업의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평가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척도 3.18점으로 나타나 만족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었다.

6.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 업무담당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평균척도 3.22점으로 의사소통이 대체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후 정부와의 관계변화에 대해서는 평균척도 3.81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체적으로 협조적인 것으로 보였다.

8. 정부의 지원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나라 시민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발전에 장기적 파급효과 3.81점, 지원금액 대비 사업성과 기여도 3.76점, 자원봉사자 발굴 확대 3.69,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의 충실성 3.67점, 시민들의 참여 활발해짐 3.61점,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 기여 3.49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시민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정도가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 대해 그 정도가 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9.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정도는 시민사회 발전에 장기적 파급효과 3.95점,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 향상 기여도 3.94점, 사업 후 성과물의 활용가능성 3.85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짐 3.80점, 서비스 제공의 충실성 3.77점 순으로 모두 성과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어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예산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2절 정책제언

정부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시민단체가 Project를 통해 공익서비스를 창출하고 전달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지원과정에서는 특정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단체가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내실있는 사업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단체의 역량 제고와 자생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난 2000년 1월 12일 국회에서는 NGO에 대한 정부지원을 더욱 뒷받침



해 주고자 시민단체가 청원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참고하여 의원입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사업부터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위촉·운영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3년째 해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뒤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문과 그간의 지적된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및 전담부처 지정 운영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의원입법으로 제정(2000.1.12)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공모방식으로 공익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는 반면, 각 부처에서는 부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별법⁵⁸⁾에 의하거나 일부 지침에 따라 관련 단체에 대한 경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과 각 부처(또는 시도)의 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선정 전·후 사업신청 내용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같이 국가예산이 중복 지원되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간 사전에 검증 방법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단체들이 고유활동 특성상 어느 한 개 부처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가운데 중첩·복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행과 같은 다수 부처의 추진되는 유사 사업을 일원화하여 1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관장하고 있는 등 다른

58)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통일부, 농림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에서 별도 지원하고 있고 최근(2011년)에는 특임장관실에서도 지원하고 있음 (표 2-6, 2010년 기준 참고).



부처에 비해 경험이 많고 지방의 업무도 총괄 지원·협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안부의 조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NGO 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원체계의 일원화로 관리 감독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선, 중앙부처간의 NGO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간 이해관계를 줄여 나가면서 시민단체 국고지원의 연관성이 높은 부분에 한해서는 점차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평가는 2005년부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의 시각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평가 예산이 적절하는 면이 있어 평가에 참여하려는 입찰 기관이 소수인 가운데 평가기관이 매년 교체되어 평가를 받는 단체에서도 혼란이 있고, 평가기관 또한 권한이 미약하여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따라서 평가 예산규모를 늘리고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당초 사업취지와 계획에 부합한 지, 집행지침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평가된 결과가 최소한 2~3년간 적용되어 미흡한 단체는 사업선정이 되지 않도록 패널티를 엄격하게 부여하는 동시에 탁월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일정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반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 평가인력이 투입되어 현장확인 평가를 통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등록 후 일정기간(5년후) 경과한 다음 재등록 경신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되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활동이 중지 또는 해산이 되면 자발적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등 공익을 저해한 재판결과가 없으면 등록을 취소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법에 등록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말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등록된 이후 관리 단계에서 부적격 단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단체가 등



록이 된 후 부적절한 행위가 나타난 단체에 대해서는 말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행할 수 있는 관계자도 충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기간(5년이상)이 도과된 단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재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전문성 또는 신뢰성이 있는 정책평가 연구기관 또는 민간주도로 발족된 중립단체가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이 된 지 5년이 경과된 단체는 의무적으로 재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등록단체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4) 단체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NGO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조항의 개정이 주된 내용이 되고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법인세법시행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일본에서의 경우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일변도의 공익성 테스트 등의 도입을 배제하고, 현재 NGO의 요구대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적 자원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을 통한 효율적인 재배치와 이를 통한 기부문화의 확산으로 다양한 NGO가 더 한층 건설해 지는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NGO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일본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에 준하는 감세조치나, 면세사업자에 준하는 면세혜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시민단체의 육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5) 재정적 지원 확대

대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이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곳은 매우 드물다. 특히 시민사회의 기반이 취약하고, 시민의 참여의식도 낮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이 있는 가운데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약 받으면서 정부에 의해 유도되거나 유착되는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정부에 의한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NGO 지원을 단순히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NGO에 대한 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이 필요하다. 즉 법적 제도적 지위에 대한 합의를 통한 정부의 지원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단체 등록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그간의 공익서비스 활동실적 등을 감안해 볼 때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역할은 더욱 클 것이다. 앞으로 다수 단체가 정부 보조금 지원 혜택을 보면서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예산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6) 단체의 기부를 위한 퍼센트법 마련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민간단체에서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국고보조금 확보가 쉽지 않음에 따라 시민단체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년 공익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소득세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및 민간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민간단체를 지정 시 규모가 크거나 건강한 민간단체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 소규모 민간단체 반발과 빈익빈 부익부 우려 부작용도 고려하여 퍼센트법⁵⁹⁾ 제도에 대한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7) 교육 지원 및 상호간 네트워킹화 지원

민간독립재단과 지역의 NGO지원센터는 NGO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조직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을 비롯한 해외연수 및 인력개발 지원 및 NGO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사회의 저변을 확대해 가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NGO간 혹은 NGO-정부, NGO-기업간의 네트워크 공간 지원하고,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각종 조사 및 통계제공을 통한 NGO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한 활동일 것이다.

8) 지원사업 컨소시엄 및 계속사업 인정

현재 행안부의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이 개별단체에 대해 1년 단위 단년도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4건, 2006년 7건, 2007년 6

59) 연말정산시 납부할 소득세의 1% 한도내에서 납세자 개인이 지정하는 민간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임.



건을 3년 기간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을 일부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략적인 분야이거나 우수한 프로그램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몇 개 단체에게 실효성 있는 컨소시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원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우수사업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계속사업을 인정하여 주는 동시에 매년 평가에서 일정수준의 평가결과가 미달할 때에는 중단 조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9) 보조금에 대한 단체에서의 일정 자부담 비율 적용 강화

현재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펀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행안부에서의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 자부담률이 매년 일정하지 않은 가운데 점차 축소되거나 제로화 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있으나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보조금에 대한 책임성과 목적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비율을 정해 부담하여야 한다. 부담이 곤란한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부담률에 대해서는 사업정산 시 엄격히 확인하여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한 환수와 익년도 사업선정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본다(설문조사 결과 표 4-17에서, 단체의 자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응답결과 10%정도, 20%정도 순으로 나타났음. 바람직한 부담률은 20% 정도로 보면 적정).

10) 지원사업의 실제적인 사업기간 확대 운영

현재 제도 운영상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까지 제출하고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거나 등록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1월중에 사업공고하고 2개월간에 걸쳐 3월말까지 추진하고 있다. 4월중에는 사업 심의·선정을 하고, 5월중 1차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사업기간이 7개월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소요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사업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개정하여 사업기간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동법 제7



조 ④항의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를 1월 전에 공고토록 개정이 필요하다. 사업계획서 제출기한도 당겨 조정하기 위해 동법 제8조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1개월을 당겨 2월 말까지 제출토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1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중 소규모 단체까지 확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자율적, 자발적 등록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는 100명 이상의 되어야 가능하다. 반면 일본의 제도는 모든 NPO들에게 등록을 강제하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점과 대규모 민간단체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구성원수를 다소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등록요건 중 100인 이상 회원수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은 유지하고, 시·도는 회원 수를 하향 조정(60~70인 정도)할 필요가 있고, 추후 활동규모가 늘어나 회원수가 100이상일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2)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를 개별부처령에서 하나의 행정기관에 통합하게 하거나 관청간의 유기적인 협의체 운영 필요

현재 민법 32조와 부령(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각 해당기관별 처리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의 불편한 점이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제도를 참고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기관에 통합하게 하거나, 주무관청간의 유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행정부 산하 모든 기관의 통일된 기준의 제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관련 외국의 법인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법인을 설립한 후 세무당국(IRS)에 신고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영국은 이원제로 운영하며 Charity Commision에서 공익여부 판정하고 세무관련은 세무당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영국과 유사하게 공익인정 등 위원회에서 관리하며 NPO법인에 대하여는 미국제도와 유사하게 국세청이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공익법인 개정 이전 각 주무관청의 담당관으로 구성되는 공익법인



감독사무연락협의회를 만들어 행정부로서의 통일된 공익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무관청별로 각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비영리 법인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기관에 통합하게 하거나 관청간의 유기적인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 지원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화 구축을 통해 집행과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적정하게 운영 및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조금 지원 체계적 정보관리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보조금 부적정 집행시 익년도 부터 3년간의 사업선정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특정사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복수사업 신청단체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1개 사업만 인정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단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간 다소 소홀히 해왔던 보조금 집행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발견된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조치를 엄격히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도약해야 할 전환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건강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웅(2000), “협력체제(Partnership)와 효과적인 국정운영”,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 논문
- 김동춘·김수현외(2000), “NGO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아르케
- 김선혁(2006), 시민사회단체의 운영실태 분석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준기(2006), “정부와 NGO”, 박영사
- 김준기(1998), “비영리민간단체의 생성과 일반적 행태 : 주인-대리인이론 관점
에서,” 행정논총, 36(1)
- 박상필(2006), “NGO와 현대사회”, 서울: 아르케
- 박치성·하혜영·한승준(2011), 정부의 공익사업 재정지원에 따른 정부-비영
리단체간 관계 분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목적 및 기준을 중
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0(1): 67~91.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윤형섭·김영래·이완범.(2003),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박영사
-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2004), “한국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
- 한국NPO공동회의(2010), 2010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제2편
- 한국NPO공동회의(2011), 2011 민간단체 지원사업 백서, 2011.11 발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2000~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 한국행정학회(2000), “정부와 NGO”,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성림문화
- 행정안전부(2010), “20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 행정안전부(2011), “201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집행지침”
- 행정안전부(2012), “20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2012), “20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설명회”
- 행정안전부(201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12.3.31 기준)
- 행정자치부(2005), “’99~’04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전국적 단위
평가 연구용역”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s.go.kr>(비영리민간단체)
- 네이버 검색창, <http://www.ne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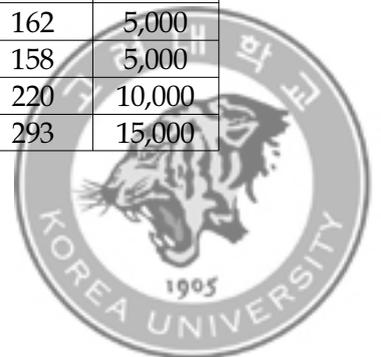


《부록》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행정안전부)

(단위 : 개/백만원)

구 분		신청현황			선정현황		
연도	주 체	단체 수	사업 수	금 액	단체 수	사업 수	금 액
1999	계	2,340	3,206	1,682	1,640	1,838	15,000
	중앙기관(등록)	316	433	916	123	140	7,500
	시·도	2,024	2,773	766	1,517	1,698	7,500
2000	계	2,232	2,683	939	1,491	1,612	15,000
	중앙기관(등록)	340	432	609	151	195	7,500
	시·도	1,892	2,251	330	1,340	1,417	7,500
2001	계	2,277	2,607	675	1,688	1,790	15,000
	중앙기관(등록)	268	412	390	166	216	7,500
	시·도	2,009	2,195	285	1,522	1,574	7,500
2002	계	2,250	2,539	577	1,804	1,890	15,000
	중앙기관(등록)	266	393	312	175	237	7,500
	시·도	1,984	2,146	265	1,629	1,653	7,500
2003	계	2,316	2,557	580	1,741	1,806	15,000
	중앙기관(등록)	305	474	344	178	237	7,500
	시·도	2,011	2,083	236	1,563	1,569	7,500
2004	계	2,216	2,432	500	1,413	1,442	10,000
	중앙기관(등록)	282	434	277	126	154	5,000
	시·도	1,934	1,998	223	1,287	1,288	5,000
2005	계	2,225	2,429	516	1,430	1,458	10,000
	중앙기관(등록)	305	492	290	130	158	5,000
	시·도	1,920	1,937	226	1,300	1,300	5,000
2006	계	2,156	2,335	466	1,313	1,335	10,000
	중앙기관(등록)	321	461	248	129	148	5,000
	시·도	1,835	1,874	218	1,184	1,187	5,000
2007	계	2,092	2,243	404	1,284	1,315	10,000
	중앙기관(등록)	269	371	218	129	155	5,000
	시·도	1,823	1,872	186	1,155	1,160	5,000
2008	계	2,141	2,167	472	1,150	1,166	10,000
	중앙기관(등록)	383	399	267	117	133	5,000
	시·도	1,758	1,768	205	1,033	1,033	5,000
2009	중앙기관(등록)	272	362	201	159	162	5,000
2010	중앙기관(등록)	293	346	218	153	158	5,000
2011	중앙기관(등록)	357	388	213	220	220	10,000
2012	중앙기관(등록)	419	450	348	293	293	15,000



《설문조사》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우선 평소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찾아서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전개해 옴으로써 따뜻한 사회와 민주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임진년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2000년도에 제정되어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강한 비영리민간단체 육성·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들이 없지 않아 이를 좀 더 낫은 방향으로 개선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단체 또는 귀하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및 고견을 담고 싶어 설문을 요청하오니 잠시 시간을 내시어 작성해 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서는 익명으로 실시되고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은 보호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귀 단체의 건승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 설문 작성을 마치신 후에 직접 제출이 어려우실 때 회신해 주실 이메일 주소는 ✉ l9r99@hanmail.net 또는 l9r9@korea.kr 입니다.
팩스전송은 02-2100-3881번 입니다.

2012년 1 월 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이상락

※ 연락처 : 02-2100-1754, 3878



설문지 기입 요령

1. 이 설문지의 내용은 상기의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2. 평소에 생각하신 의견에 가장 가까운 문항 것을 택해서 “√ 또는 ○” 표로 답하거나, ()안에 기입해 주십시오.
3. 각 문항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타 또는 여백” 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단체의 일반현황 】

1. 귀 단체의 활동분야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당 등록기관을 표시해 주시고, 이외는 기타란에 부처명을 기재 바랍니다)

- ① 교육과학기술부 ② 외교통상부 ③ 통일부 ④ 국방부 ⑤ 행정안전부 ⑥ 문화체육관광부 ⑦ 농림수산식품부 ⑧ 보건복지부 ⑨ 환경부 ⑩ 고용노동부 ⑪ 여성가족부 ⑫ 국토해양부 ⑬ 산림청 ⑭ 소방방재청 ⑮ 방송통신위원회 ⑯ 국가보훈처 ⑰ 기타

2. 귀 단체의 설립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사단법인 ② 재단법인 ③ 비법인(임의 단체) ④ 기타(잘 모르겠음)

3. 귀 단체의 설립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1980년대 ② 1990년대 ③ 2000년 ④ 2001~2004년 ⑤ 2005년 ⑥ 2006년 ⑦ 2007년 ⑧ 2008년 ⑨ 2009년 ⑩ 2010년 ⑪ 2011년 ⑫ 기타()

4. 귀 단체의 현재(2012년 1월) 회원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100명 이하 ② 200명 이하 ③ 300명 이하 ④ 400명 이하 ⑤ 500명 이하 ⑥ 500~1,000명 ⑦ 1,000~2,000명 ⑧ 2,000~3,000명 ⑨ 3,000명 이상

4-1. 귀 단체의 회원 중 사무실에 상근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없음 ② 1~2명 ③ 3~4명 ④ 5~6명 ⑤ 7~8명 ⑥ 9~10명 ⑦ 10명이상

5. 귀 단체의 재정운영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① 회원회비 ② 회원회비+수익사업 ③ 회원회비+정부지원금 ④ 회원회비+정부지원금+기업후원금 ⑤ 회원회비+정부지원금+기업후원금+단체후원금 ⑥ 기타()



5-1. 현재 귀 단체의 1인당 연회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

-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10만원 ③ 10만원~20만원
- ④ 20만원~30만원 ⑤ 30만원 이상

6. 귀 단체는 설립 동기는 어떻게 출발 하였습니까 ?

- ① 사회적 이슈에서 출발 ② 단순 친목모임 ③ 중앙소속 지역조직
- ④ 다른 단체에서 분리 ⑤ 기타()

7.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정도 되는지요?

- ① 신청한적 없음 ② 신청했으나 없음 ③ 1회 ④ 2회 ⑤ 3회
- ⑥ 4회 ⑦ 5회 ⑧ 6회이상

【 보조금을 신청하였거나 받은적이 있으면 답 해주세요 】

8. 매년초에 공모과정을 거쳐 지원단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1개사업당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4천만원 ② 5천만원 ③ 6천만원 ④ 7천만원
- ⑤ 8~10천만원 ⑥ 1억이상

9. 정부 보조금 지원시 단체의 자부담은 어느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10%정도 ② 20% ③ 30% ④ 40% ⑤ 50%
- ⑥ 60~90% ⑦ 100%

10. 지원사업 결정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국회추천3, 단체 추천 12)에서 하고 있음. 앞으로 개선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대로 유지 ② 국회위주 추천 ③ 시민단체 위주 추천
- ④ 정부가 직접 선정 관리



11. 현재 정부(행정안전부)의 지원방식에 대하여 만족 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11-1. 만족하지 않으시면(위①, ②번) 그 이유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12.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NGO)간의 상호신뢰 관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13. 단체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음 8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구 분	가장 필요	필요	보통	현실성이 적음	현실성이 매우 적음
1) 개인의 기부금	①	②	③	④	⑤
2) 민간기업체 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3) 정부의 국고보조금	①	②	③	④	⑤
4) 우편요금 감면	①	②	③	④	⑤
5) 세금 감면·감세	①	②	③	④	⑤
6) 직원 과건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①	②	③	④	⑤
7) 사무실 실비임대	①	②	③	④	⑤
8) 자원봉사자 확충	①	②	③	④	⑤



14.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귀 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영향력 전혀 없음	영향력 없음	보 통	많은 영향력	매우 많은 영향력
1) 정부 재원에의 의존도 증가	①	②	③	④	⑤
2) 자체적으로 자립하게 되는 계기	①	②	③	④	⑤
3) 사업수행에 공공적 책임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4)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①	②	③	④	⑤
5) 자원봉사자 확대 기여	①	②	③	④	⑤
6) 단체의 공신력 증대	①	②	③	④	⑤

15. 현재 정부(행정안전부)의 사업평가방식에 대하여 만족 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15-1. 만족하지 않으시면 그 이유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16. 단체 지원에 대한 다음 방법 중에서 귀 단체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상위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현재와 같이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원(현행 사업공모방식)
② 각 시도별 또는 지역별 NGO에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원
③ 경상비(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 보조
④ 사업지원이 아닌 단체에 직접 지원
⑤ 세제상의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
⑥ 기부금모집 등의 자유롭게 하는 방안
⑦ NGO의 사업 수행 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⑧ 기타의견 ()



17. 귀 단체의 재정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정부(행정안전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0 ~ 19% ② 20 ~ 39% ③ 40 ~ 59% ④ 60 ~ 79%
 ⑤ 80 ~ 100%
18. 귀 단체는 정부 지원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업무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떠했다고 평가하십니까?(담당부서와의 파트너십 구축 수준)
 ① 매우 원활하지 못함 ② 원활하지 못함 ③ 보통 ④ 원활함
 ⑤ 매우 원활함
19. 귀 단체는 정부 지원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후 귀 단체와 해당 정부간의 관계변화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대립적으로 변화였다 ② 대립적으로 변화였다
 ③ 별다른 변화 없다 ④ 협조적으로 변화였다 ⑤ 매우 협조적으로 변화였다
20. 정부(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나라 시민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없음	없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1) 복지, 문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및 서비스 제공의 충실성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 문제(갈등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도	①	②	③	④	⑤
3)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짐	①	②	③	④	⑤
4) 시민사회 발전(질서의식함양 등)에 장기적 파급효과	①	②	③	④	⑤
5) 자원봉사자 발굴 확대	①	②	③	④	⑤
6) 지원금액 대비 사업성과에 기여도	①	②	③	④	⑤



21. 지원사업 평가결과와 집행내역에 대해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투명성 제고 위해 바람직 ② 일부만 공개
- ③ 비공개가 바람직 ④ 잘 모르겠음

22. 귀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전혀 없음	없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1) 서비스 제공의 충실성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도	①	②	③	④	⑤
3)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짐	①	②	③	④	⑤
4) 시민사회 발전에 장기적 파급효과	①	②	③	④	⑤
5) 사업 후 성과물의 활용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 이상으로 설문을 마칩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 또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In the current social environment where social structure is complicated and divers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le engaging in active roles, make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with their roles in creating and delivering public services in fields that th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do not reach.

In Korea, projects supporting non-profitable civil organizations began in 1999, and the Assistance for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ct was enacted in 2000, which has been driven every year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In such a course of work, issues have been raised about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selection of the subjects of the supportive projects and the course of fund execution.

With the MPAS's public services supporting the organizations registered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ts as its main concern, this study focuses on establishing a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upportive systems by grasping in detail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upportive systems for non-profitable civil organizations, the practical achievements of the registered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cognition of and reaction to the supportive systems. In particular, I try to help the reader more easi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is paper by making and presenting tables as far as possible based on the results from a questionnaire survey that had been distributed to and returned by non-profitable civil organizations.

First, chapter 1 discusses the purpose, methods, and range of this study. Chapter 2, as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NGO supports,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non-profitable civil organizations and supportive systems for them. Chapter 3 compares the supportive systems with those administered in developed countries, and concretely analyzes the results of the selection of projects and of their evaluation from the early period of the supportive services to 2012 under the MOPAS's control by dividing them on the basis of periods and years. Chapter 4 analyzes the responsive data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bout the NGO supporting programs returned after the distribution of them to the organizations registered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ts. Lastly, chapter 5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nd makes several proposals.

1. We should prevent the supportive funds from being doubly paid and designate and run a department in charge. In order to prevent some of the national budget from being squandered by double payment, it seems that it is more efficient and more helpful for reducing financial wastes for one department to integrated and take care of the projects performed respectively by several departments and offices.

2. The evaluation of the supportive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s the number of supported organizations is increasing, we need to apply the results from general evaluations in next year program execution by strengthening on-site checking evaluation and mid-work evaluation with expert personnel involved.

3.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say five years) collapses, already registered organizations should be required to be re-registered. A supplementary action should be taken because there is no systematic means to eliminate improper organizations in the stage of management after registration.



4. Healthy organizations should be given tax benefits. We need to extend tax reductions parallel to those for middle-sized enterprises or tax exemptions parallel to non-tax paying businesses for supporting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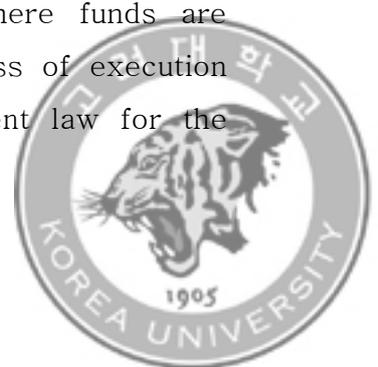
5. Financial supports should be extended. The size of the budget should be increased for proper supports for a certain number of organizations and substantial program drive as the number of registered organizations increases every year, their contributions including their achievements in public services turns out to be high, and their roles are great.

6. The consortium of supportive programs and continuous projects should be acknowledged. Excellent large scale programs should be allowed to be driven by several organizations, and some of the programs need to be acknowledged as continuous on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7. A certain ratio of beneficiary-charge against the supportive funds needs to be applied to the organizations in question. It is desirable to put a 20% of the amount on them in order to increase their self-help and encourage them to have responsibility and purposive mind.

8. In order to lengthen the periods of the programs substantially, we should reduce the involved procedures by taking relevant actions like shortening the 2 month period of program notification to 1 month period, and extend the periods of the programs.

9. In addition, we need to obviate cases where funds are improperly operated or paid by monitoring the process of execution real time in a system via the enactment of a percent law for the



donation by organizations, educational supports and networking, the construction of computational systems for the purpose of the strengthening of the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funds, to make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information of supporting funds and the use credit cards specialized for the funds obligatory, and to exclude those organizations with improper fund execution from the selection of programs for 3 years from the next year.

Thus, at this turning point where the programs supporting non-profitable civil organizations should leap forward, we should proceed to extend supports for developing them sou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y focusing more heart and soul on supplementing and improving the problems that have been raised so far.

Also, because the roles of NGO's are going to be greater for public activities in future,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itself, though trivial, to the interest in and discussion of the government's supportive policies for NGO's with more active discussion of the government's supportive policies for maximizing such effects.

